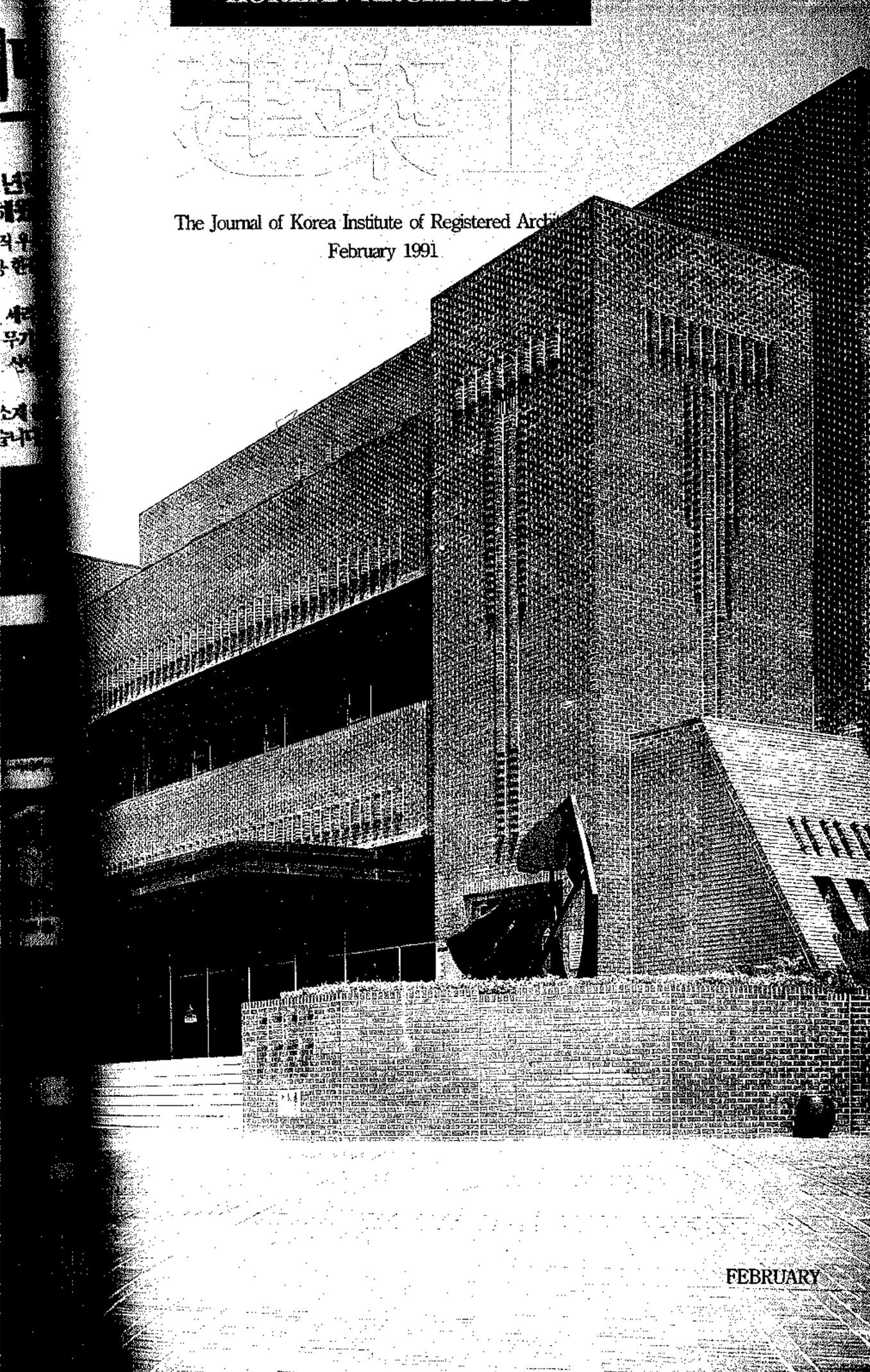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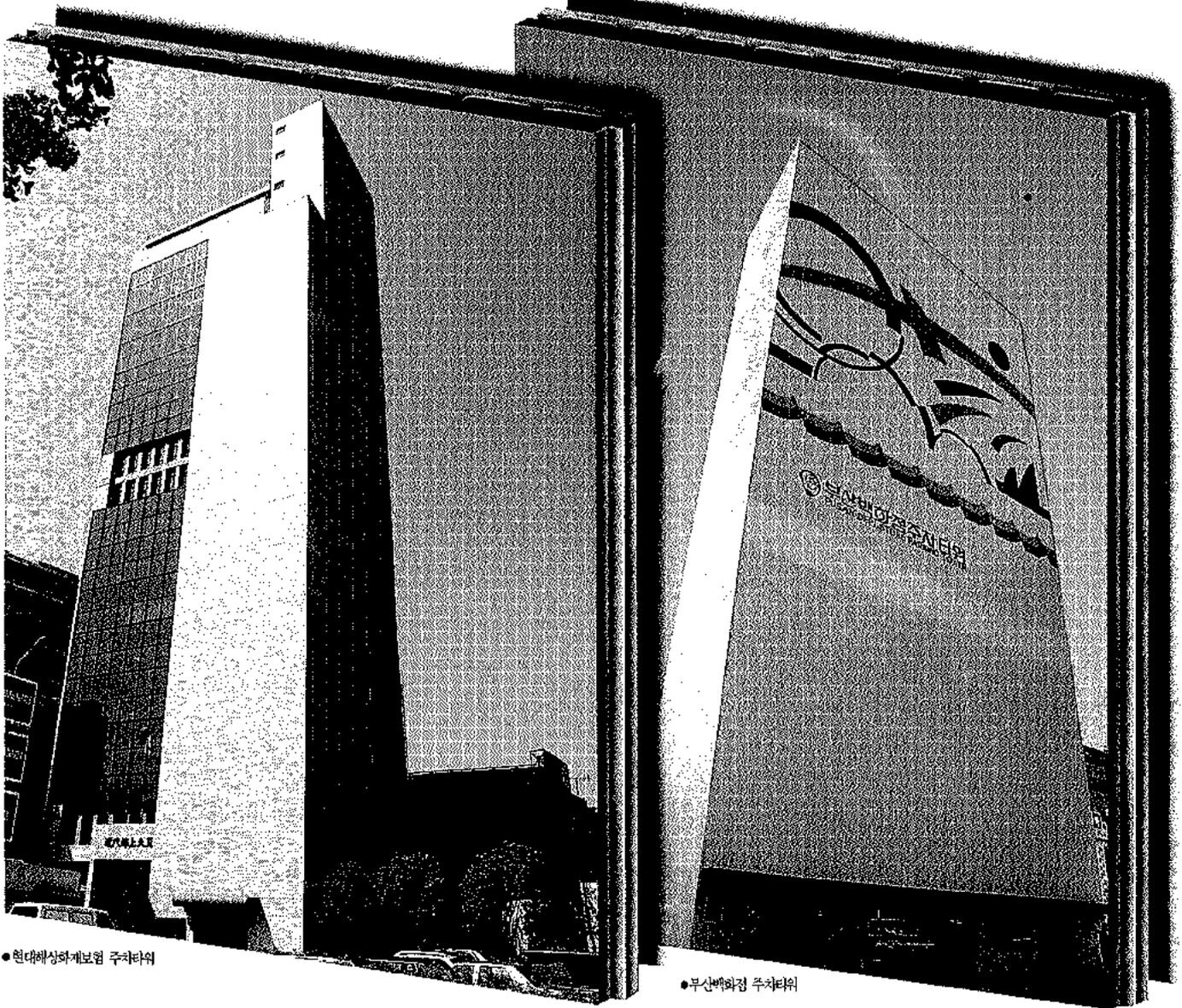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UR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February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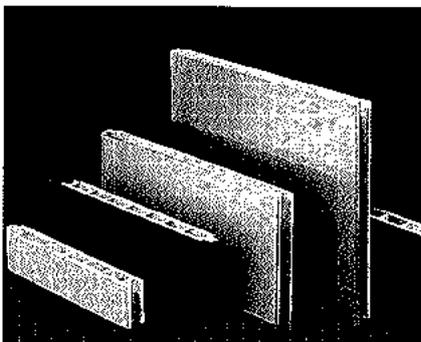
FEBRUARY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분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르번의 차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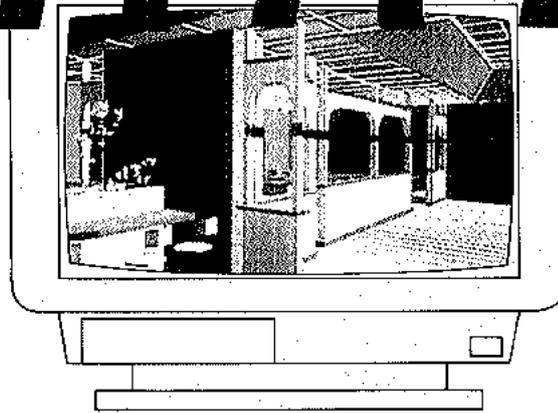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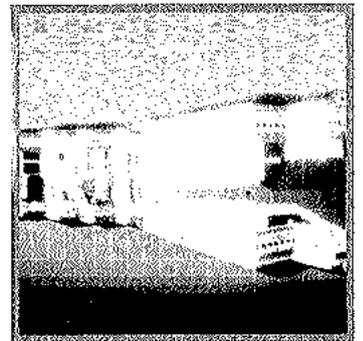
건축전용 CAD

A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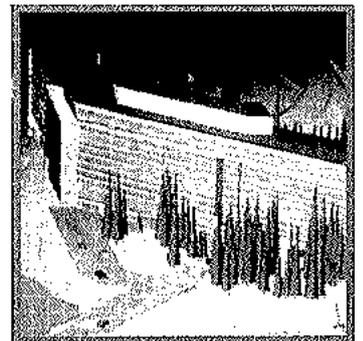
ARRIS



ARRIS 는
미국 SIGMA DESIGN 사에서
개발한 가장 막강한
건축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입니다.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 는
1988년 ARRIS 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ARRIS 만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ARRIS 전문 회사입니다.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 의
기술 수준은 ARRIS 개발사인
미국 SIGMA DESIGN 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SIGMA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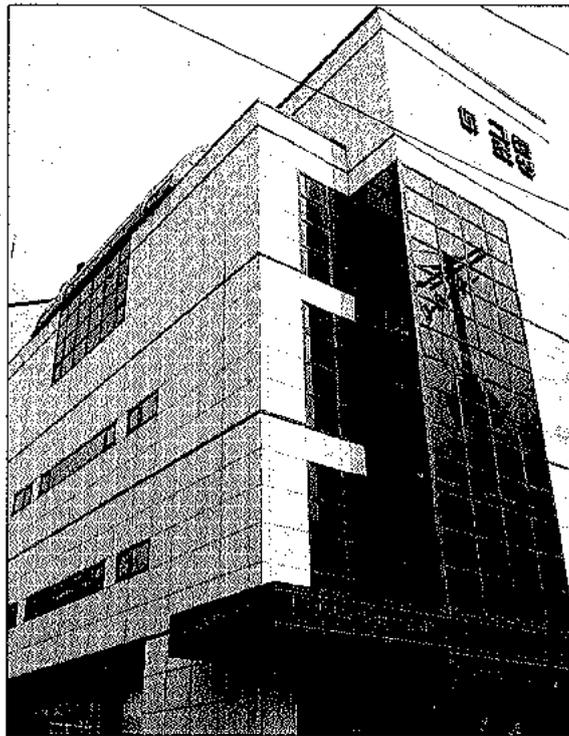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5-25 (방배빌딩 5층)
TEL : 536-4057/9 FAX : 599-4030

SIGMA DESIGN KOREA, INC.

기능과 디자인, 품격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 이견창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그룹조영사옥 ●설계: 이정희, 손헌재(그림 조현)
●시공제품: 이견창호 ISKOTHERM TURN & TILT WINDOW

●제주 신라리조트 ●설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제품: 이견창호 ROYAL 110 LIFT SLIDING DOOR

LT WINDOW

이견창호의 기능과 품격이 최고의 생활공간을 만듭니다.

디자인·소재에서 / 이견창호는 형태와 크기, 색상, 소재 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택의 거실, 욕실, 침실, 온실은 물론 사무실, 호텔 등 각종 오피스빌딩의 공간 특성에 맞게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방음·단열에서 / 이견창호는 컴퓨터로 정밀 설계되고 특수유리와 밀폐성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음성능이 뛰어나며 우수한 단열효과로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환기·개폐에서 / 이견창호는 특수 기어 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럽으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하므로 환기가 편리합니다.

안전·수명에서 / 고강도 소재와 특수 유리, 특수 배수시스템에 의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시공에서 / 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작업이 간단하며 건식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처리로 정기적인 보수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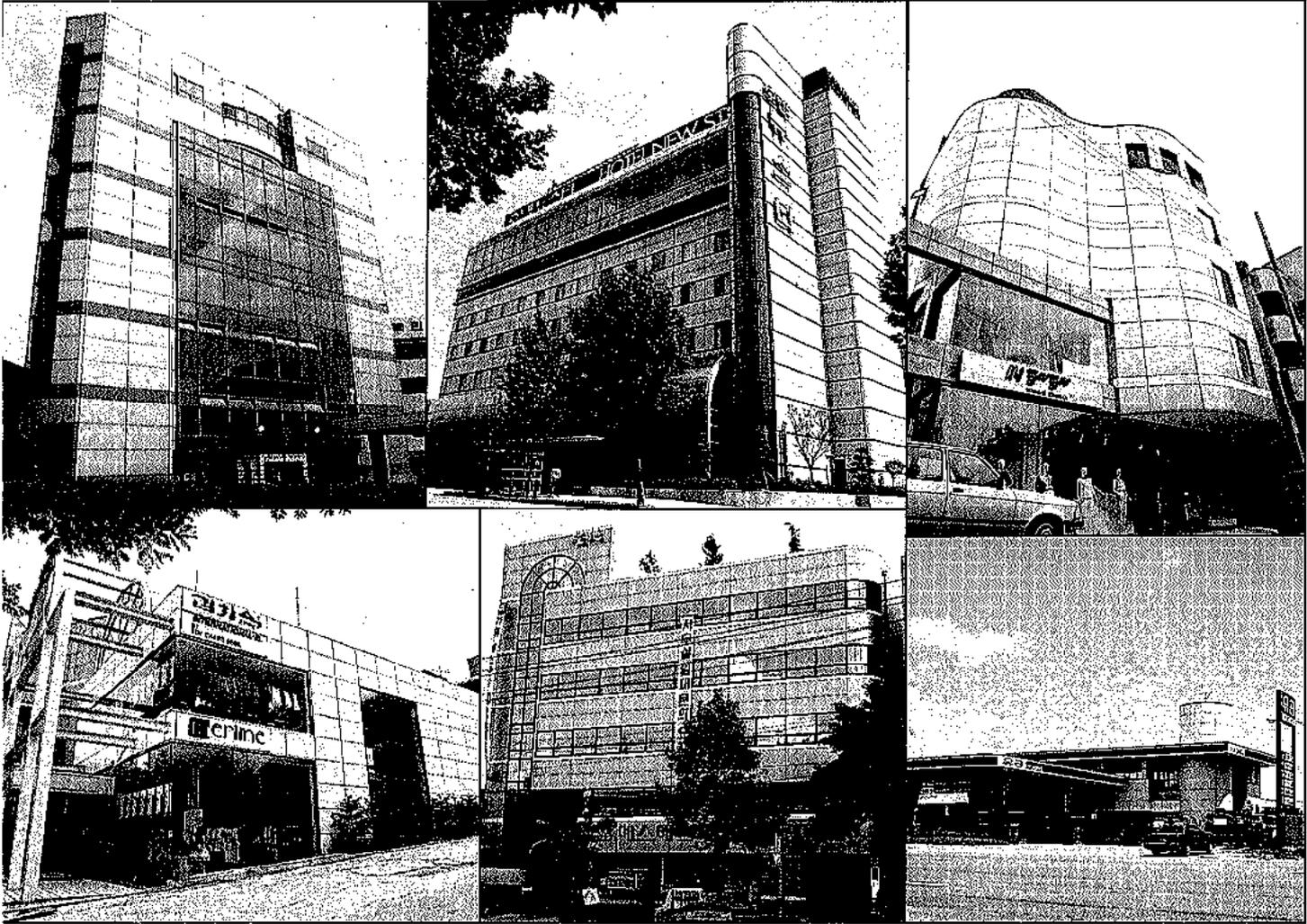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 이견자연 개발주식회사 · EAGON FOREST PRODUCT INC.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흥성의 꿈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아키텍스

— ARCHITECTS(아키텍스) /

아키텍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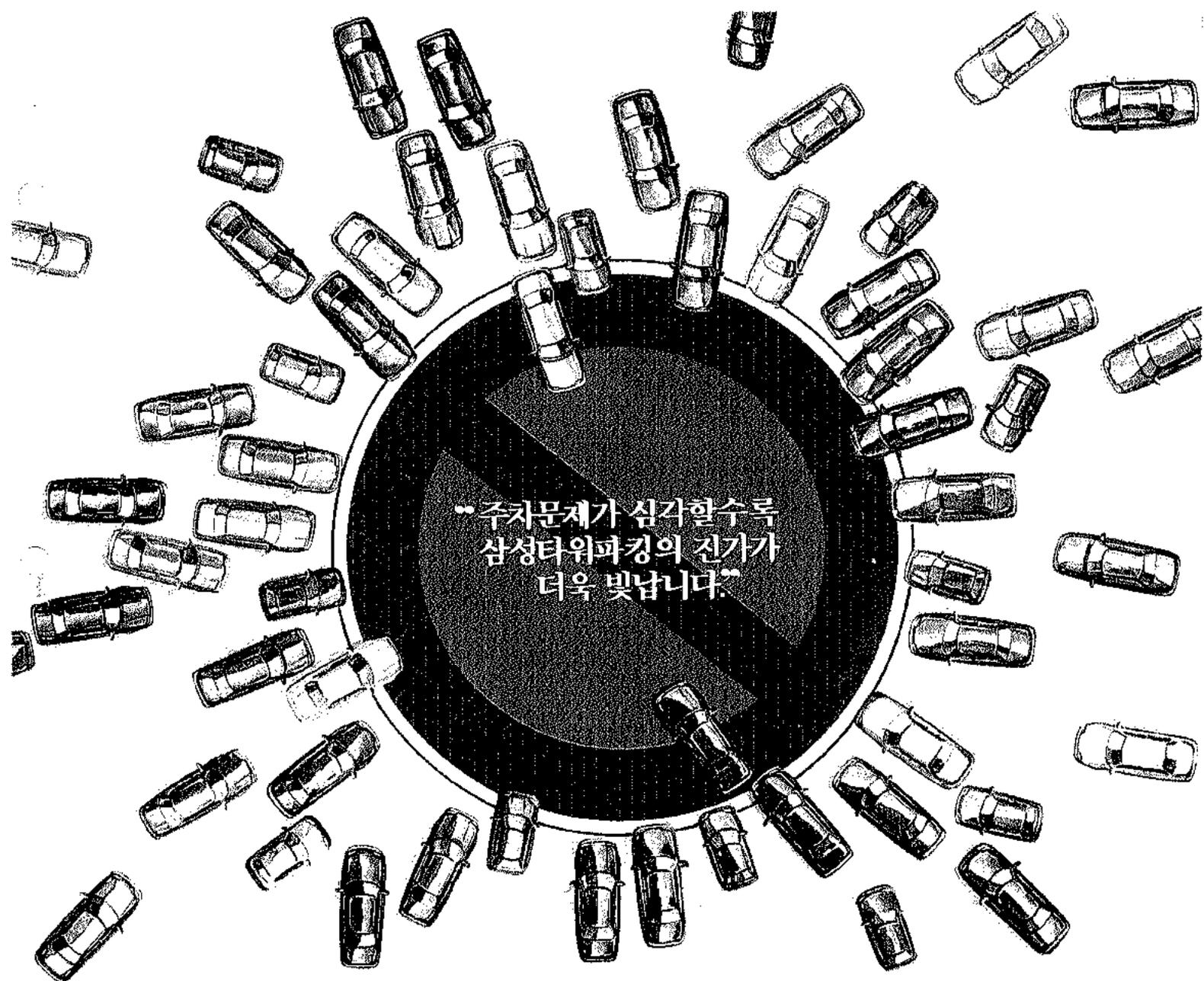
알루미늄판, 아연도철판, 동철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질 두께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줌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처짐의 효과를 낼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흥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흥화회관 1층 TEL. (02) 562-1264, 568-3474~6, FAX. (02) 566-0856





“주차문제가 심각할수록
삼성타워파킹의 진가가
더욱 빛납니다.”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2~3 FAX: (055)1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042)253-3988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수직순환방식 : 대형제안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 (Cage)를 메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턴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를 주차



486출발

486 Turnkey system configuration

- 썬파워 486
 - i80486-25MHz
 - MAIN MEMORY: 8MB
 - 5.25" FDD
 - 200MB HDD
 - 14" MONITOR
 - PC-MOUSE
- DISPLAY
 - NEC XL 20" Color Monitor
 - 1024 × 768 × 256
 - COBRA-PLUS-3BI-HS with VMI
- ARRIS
 - BD & D + AD & D + M & D + 한글
- 3rd Party
- Xenix & DOS

썬파워 486은 i80486을 탑재한
현존하는 최고의 PC입니다.

Land Mark Test시 112MHz의 속도를 나타내며
Co-Processor가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386 System
보다 3배~5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RRIS의 특징

-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 SEQUENCE로 지원
- XENIX O/S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한계극복
- 화면 MENU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등 완벽한 3-D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 등으로 완벽한 음영 CHECK기능 보유 (일조권)
- 건축 자료의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누수 방지
- 2D, 3D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등 SYMBOL지원
- 1,600만 칼라제공 및 신속한 칼라변화
-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확보

2,300만원 off → 1,895만원

OPTION

- H/W
 - Memory
 - 3.5Inch FDD
 - 5.25Inch FDD
- PLOTTER
 - F-920ER(Ao, Roll)
 - F-920E(Ao)
 - iP-530EL(Ao)
 - iP-530E(Ai)
 - iP-210(Ai)
- DISPLAY
 - 2A(800 × 600, 14")
 - 3D(1024 × 768, 14")
 - 4D(1024 × 768, 16")
 - 5D(1280 × 1024, 20")
- TABLE
 - TB-8830

3rd Party의 특징

국내 유명건축사무소인 (주)우밀건축 (주)정림건축의 협조로 그동안 설계 사무소에서 질실하게 필요하던 Detail Library, 한글단복선체 및 구조일람표 절근 보, 슬라이브 기둥, 철골접합 등을 함께 공급하여 건축설계사무소의 CAD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Detail Library

일반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실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 등 총 450개

- 한글 단 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매우기 기능, 공간채우기 기능 등 구조일람표 절근 보, 슬라이브와 철골접합상세 등

F-920ER은 연필사용이 가능한 MUTOH PLOTTER의 최신기종으로 Ao Size의 낱장 사용은 물론 Roll Type의 연속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김도면이나 여러장의 도면을 쉽게 Plotting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시험회부설 CAD교육 연구소에서 교육을 이수하 신분들께는 시스템구매시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OPEN 대구지사”

대구·경북지역의 고객지원을 위해 서동 AI 사업부에서는 '91. 2. 2 서동 AI 사업부 대구지사를 개설합니다.



License 확인사항
X와 DOS구매시에는 License 여부를 확인
시오. 불법 copy는 바이러스 감염
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보호를 받으실
니다.

에서 공급하는 3rd Party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처에 프로그램등록이 되어 있고
무단복제시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거 처벌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OPEN
'90. 12. 3

■ 대한건축시험회부설 CAD 교육연구소

장소: 대한건축시험회 1층
운영: 서동 AI사업부 교육팀
문의: 521-7296, 581-5711

■ 교육과정 및 일정

- 실무과정, 연구과정, 경영자 과정의 3단계로 각과정 1주일 완성입니다.



Page 교육안내 참조

■ TURN-KEY SYSTEM 의 특징

HARD WARE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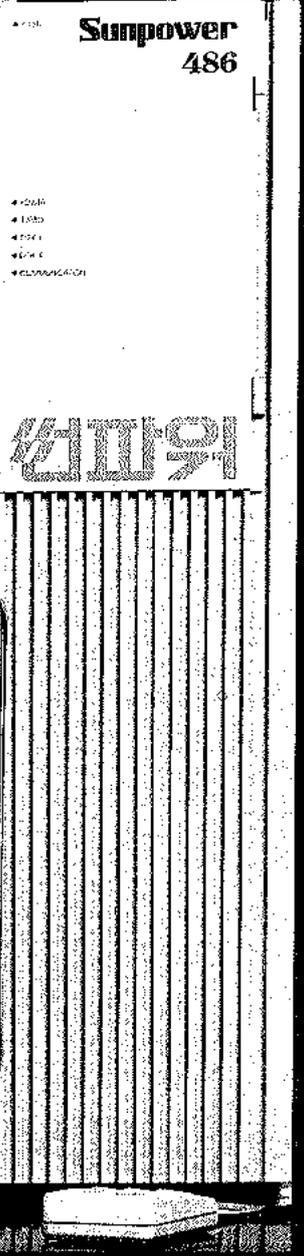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서동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엄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 기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그래픽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범 DRAFT전용의 2D-시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효율성·다양한 기술개발등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 지원분야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범 DRAFT 전용 S/W, AutoCAD, VERSACAD, MICROCAD, Micro Station D/A(Design Analysis), 구조, 기계, 전기등의 각종 계산용 S/W +기회설계 W/P(Word Processor) 각종 시방서, 보고서등 문서작성용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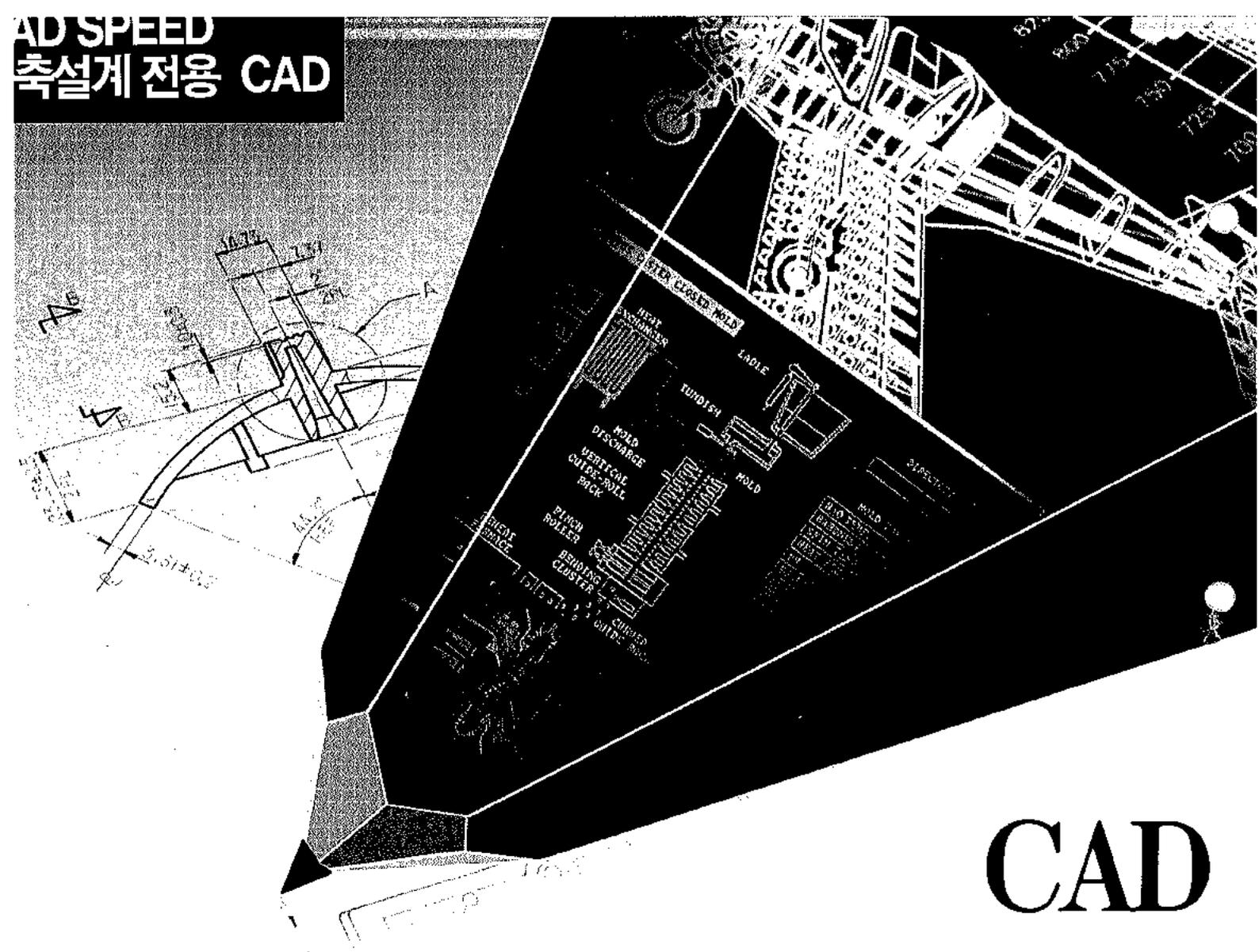
서동 AI사업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썬파워컴퓨터전시장
Tel: (02)5140-386 (代) Fax: (02)545-0296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 서울 • 교육장, 전시장, A/S 센터: 강남구 논현동 6-21 TEL: 514-0386
- 교육장: 대한건축시험회 1층
- 부산 • 교육장, 전시장, A/S 센터: 중구 대청동 32-1 삼일빌딩 대청캐피탈스 TEL: 464-6150
- 대구 • 교육장, 전시장, A/S 센터: 중구 봉인동 3가 273-17 TEL: 421-2806

CAD SPEED
건축설계 전용 CAD



CAD

귀하께서도 이미 디자이너

CAD SPEED는 AutoLISP을 이용한
 건축설계전용 CAD SOFTWARE 입니다.
 AutoCAD를 사용하시는 건축설계자께서는
 ₩600,000만 더 투자하십시오.

이제 귀하는 건축설계를 위한 편리한 모든 기능을
 만끽하시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주요기능
 편리한 EDIT, 모서리 처리, 창 또는 출입문의
 자동 설계 삽입 등.

첨단기술의 정밀화

Jepcom

제일 第一 精密

■ CAD 사업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B/D 801호
 대표전화: 783-9503, FAX: 783-9504
 ■ 공장: 경남 창원시 내동 456-8
 대표전화: 82-4131-5131 FAX: 84-7141

■ 대리점: 서울·부곡 782-1888, 시스텍 675-4701, 위켄 588-0386, 대구·신일 956-9570, 캐드비전 421-5549, 캐드콤 53-4153, 부산·MIS 807-1301, 화일 644-3151, 광주·대화 223-0006, 대전·국제 254-1269

CAD 교육안내

AutoCAD Rel.11

대한건축사협회가 설립 운영하는 CAD 교육연구소에서는 기존ARRIS 교육과는 별도로 미국 AUTODESK사에서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범용 CAD SYSTEM, AutoCAD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신설된 AutoCAD 교육에서는 지난 11월 미국에서 발표된 최신 Version인 Rel.11을 서통 AI 사업부의 협조로 교육하게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인원 : 매기별 20명 ● 장소 : 본협회 1층 CAD 교육연구소 ● 참가비 : 과정별 20만원
- 기간 및 시간 : ARRIS, AutoCAD 각각 매기별 1주일단위 (56시간)

■ 교육과정

- 실무과정 : COMPUTER 또는 CAD에 사용경험이 적은분들 대상으로 컴퓨터개론에서 부터 CAD의 기초 및 응용까지 교육하는 실무과정입니다.
- 경영지과정 : CAD SYSTEM의 기본적인 조직과 함께 운영의 특성,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 설계사무소 소장 및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하는 경영자 과정입니다.
- 연구과정 : CAD이용경험 (6개월 이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Arris의 경우 Xenix 및 ADD (Architectural Drafting & Documentation), M&R (Modeling & Rendering)에 교육의 비중을 높였으며 AutoCAD의 경우 AutoSOLID, AutoSHADE는 물론 AutoLISP까지 교육되는 CAD의 이용차원을 한단계 높은 고급과정입니다.

■ 교육신청방법

- 기한 : 매주 수요일 (수강까지 前週수요일)
- 장소 : 본협회 총무부
- 방법 : 아래의 교육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비와 함께 내방접수 또는 우편이나 FAX (586-8823)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협회구좌 (제일은행 429-20-166612, 예금주: 대한건축사협회 출납원)로 송금후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

■ 교육의 특징

- 1인 1대 실습위주의 교육
국내 CAD 교육센터중 최대의 장비보유로 1인 1대의 실습위주교육이므로 단기간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보장합니다.
- 경험많은 전문강사진 운영
서통 AI사업부의 전문강사진으로 건축과 전산을 전공한 해당분야의 유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완벽한 책임교육
교육이수후 당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여야만 수료증이 발급되며 불합격자에게는 합격시까지 무상교육이 계속되므로 교육의 책임을 다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협회 총무부 또는 CAD 교육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21-7296)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근무처주소		
직위	참가일정	CAD 기	CAD사용기간 개월

대한건축사협회

차례/1991년 2월호 통권 제262호

會員作品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故 金壽根	15
	창덕여자고등학교/黃一仁	18
	고려대(서창캠퍼스) 도서관/金昶一+崔泰容	22
	SKIP-UP/金仁喆	26
	남창빌딩/崔東奎	29
나의 스케치	자연을 담은 것은.../金基雄	32
일하며생각하며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協會를 기대하며/金宇成	34
寄 語	현행 고층아파트 구조설계 문제가 심각하다/李昌男	36
研 究	불가리아의 건축물들/趙仁淑	40
	한국의 전통건축 朝鮮時代의 建築/張慶浩	47
	도쿄의 商공간/金文德	56
	를랑 사무네의 빌뇌브다스크 소재 현대미술관/朴賢燦	76
	歐洲의 建築/崔昌奎	80
설계경기	공공건축사 당선안경경기	67
	당선작/삼정건축案	68
	우수작/가전건축案	72
	우수작/건원건축案	74
자 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84
	1990년 12월분 도서신고현황	94
協會消息		96
新入會員		98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弘報·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編纂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 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珪/洗文精版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h, Chun-Ski/Kang, Chul-Koo/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0612(519)

Printer: Jeon, Yun-Kyu(Kwangmoon Print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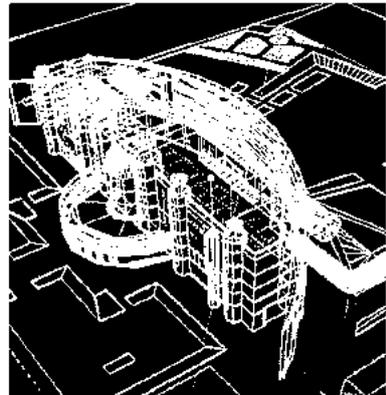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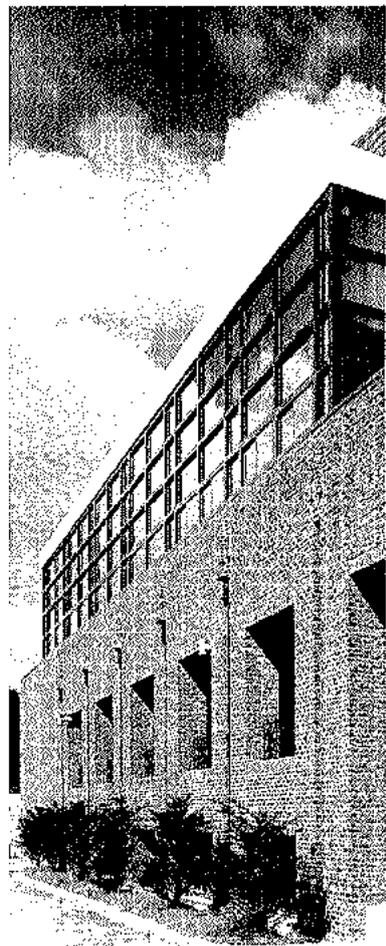
建 築 士

표지: 고 金壽根作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

CONTENTS Vol.262, FEBRUARY 1991

WORKS	<i>Art Complex in Kumi/ Kim, Soo-Guen</i>	15
	<i>Changduk Girls' High School/ Hwang, Il-In</i>	18
	<i>Library in Sochang Campus, Korea Univ.</i>	
	<i>/ Kim, Chang-Il & Choi, Tai-Yong</i>	22
	<i>Skip-Up/ Kim, In-Chul</i>	26
	<i>Namchang Building/ Choi, Dong-Kyu</i>	29
SKETCH	<i>A Similar in Nature.../ Kim, Ki-Woong</i>	32
ESSAY	<i>Desirable Phase of KIRA Administration / Kim, Woo-Seong</i>	34
ISSUE	<i>The Ruling High Storied Apartment Structure Design Will be Intensified Issue/ Lee, Chang-Nam</i>	36
REPORT	<i>Town & Architecture in Bulgaria/ Cho, In-Souk</i>	40
	<i>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Chang, Kyung-Ho</i>	47
	<i>Commercial Space in Tokyo/ Kim, Moon-Duck</i>	56
	<i>Roland Simount's Museum of Mordern Art of the North/ Park, Hyun-Chan</i>	76
	<i>Travels of East Europe/ Choi, Chang-Kyu</i>	80
COMPETITION/ Korean City Hall		67
MATERIALS		84
KIRA NEWS		96
NEWLY ADMITTED MEMBER		98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감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61-5715~8 · 서대문분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광역분소/광역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일동101-7, 923-6313 · 종로분소/종로구정동201-1, 738-5416 · 마포분소/마포구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소/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1049-70, 992-8076 ·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중랑구면목동166-46, 436-0587 · 성북분소/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소/구로구구로동3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부산대파트)(051)246-6284~7 ■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서구서문동3711-8, (053)753-8860~5 ■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지부/대전시중구대흥동437-1, (042)254-2441 ■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7-6129~31 · 적양분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8, (031)42-6490, 7072 · 안양분소/안양시인양동523-5, (034)49-2688 · 부천분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소/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3-5445 · 의정부분소/의정부시외정부동182, (035)112-1082 · 송탄분소/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 고양분소/고양군연남읍주교리38블럭16롯데, (034)163-8902 ·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소/이천시이천읍중앙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안산시고잔동536-1, (0345)180-9130 ■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 (037)42-3257 ·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11(039)12-2262 · 속초분소/속초시동명동466-33, (0392)33-5081 ·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풍1리960-12, (0372)143-2695 ■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673-1, (044)847-3082 · 제천분소/제천시외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소/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133-3502 ■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15)32-2853 ·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중앙리703-1, (0463)2-2271 · 대전분소/대전시대전동197-10, (042)34-3367 ■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568-116(전원빌딩5층), (052)187-6007 ·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1, (063)152-3796 · 군산분소/군산시선왕동35-4, (0634)445-4059 ·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 (067)31-1000 ■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선화관)(062)364-7567, 33-9944 · 목포분소/목포시대안1동1, (0631)43-3348 ·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11(066)13-2457 · 여수분소/여수시관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128번지, (053)425-4904 ·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43-22, (0562)44-6029 ·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42-2(056)13-3638 ·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 양동분소/양주시서호동157-4, (0571)54-5703 · 김천분소/김천시평화동280-1, (0547)12-2541 · 영주분소/영주시후천2동642-52, (0572)33-7504 · 김천분소/김천시중앙동280-3, (0581)12-2706 · 상주분소/상주시남성동36-23, (0582)12-4306 ■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46-4530~1 ·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장동585-6, (0552)74-8836 · 진주분소/진주시번성동7-20, (0591)41-6403 · 충무분소/충무시서호동163-18, (0557)43-3577 ·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4B-10L, (0525)2-6114 · 밀양분소/밀양시삼유동184-108, (0527)53-2110 ·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12-7090 ·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84-3050 · 거제분소/거제군신원읍고령리139-2, (0558)1635-3432 · 삼천포분소/삼천포시동금동91-6(0593)33-9779 ■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239-6, (064)32-7777

'91 韓國建築展

접수 마감 임박!

우리나라 建築界 발전의 디딤돌로서 새로운 建築文化의 産室이 될 '91 韓國建築展의 作品 募集 마감 時限이 오는 20일로 臨迫했습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었던 建築士作品巡廻展과 新人·學生建築設計公募展의 미흡했던 점을 補完, 統合하여 全 建築界의 상대한 祝祭로 發展 昇華시킬 본 '91 韓國建築展은 韓國 建築의 오늘을 直視할 수 있는 建築士作品部門과 우리 建築의 未來를 짚어질 新人 및 學生部門으로 각각 나누어 작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부상과 상장이 수여될 入賞作들을 오는 3월 26일부터 「藝術의 殿堂」에서 실시될 서울지역전시를 필두로 全國 주요도시에서 巡廻 展示될 예정입니다. 世界 속의 韓國의 建築을 지향하는 많은 建築人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내용

- ▶ 建築士部門 : '88~'91년 2월중 준공된 개업중인 건축사의 작품
- ▷ 新人 部門 : 대지면적 3,000평의 복합용도건축물
- ▷ 學生 部門 : 대학 및 전문대 건축전공 재학생의 작품
- ▶ 자세한 공모내용은 本誌 1월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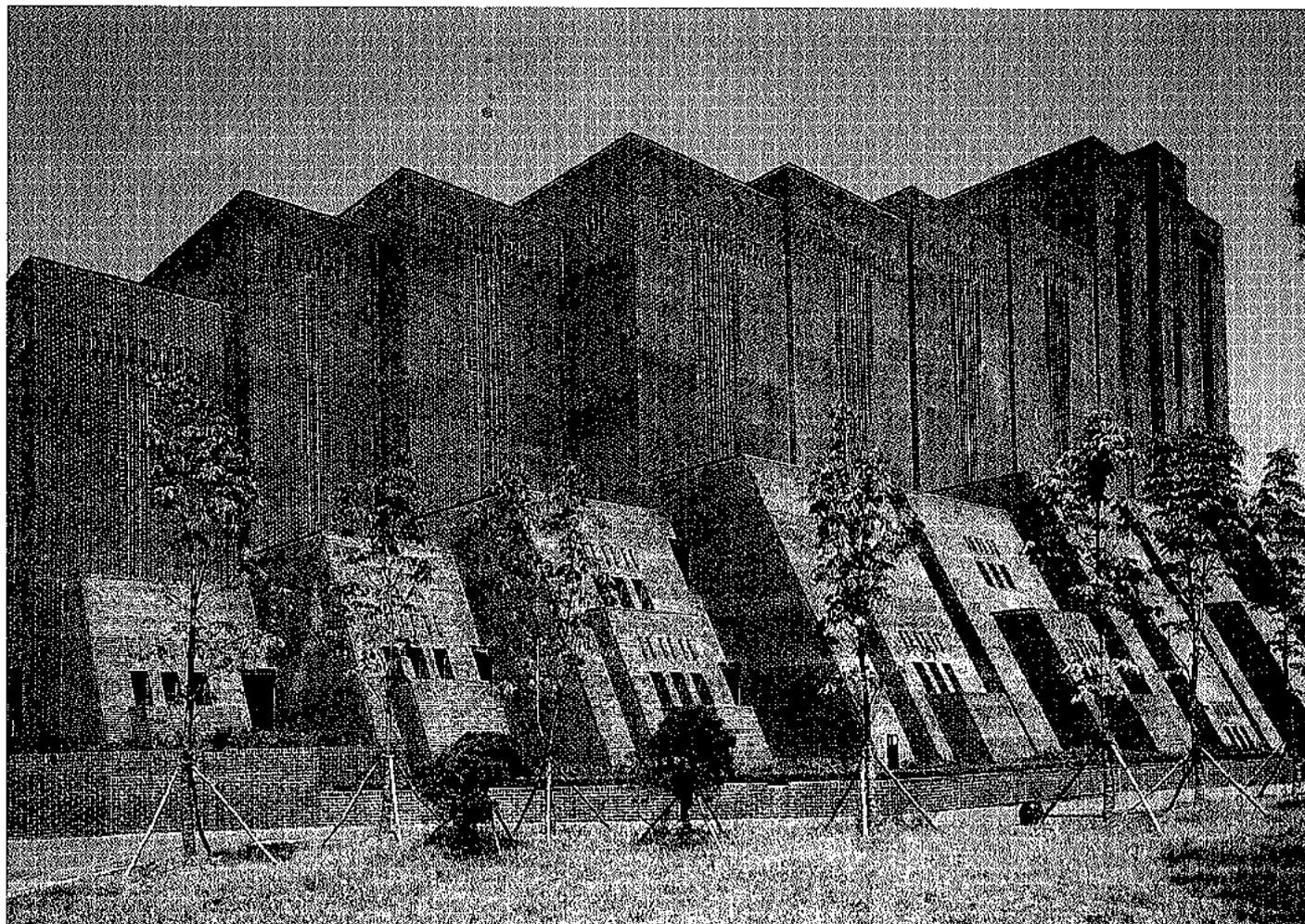
☞ 작품마감 : 1991년 2월 20일

☞ 수상작 발표 : 「建築士」誌 3월호 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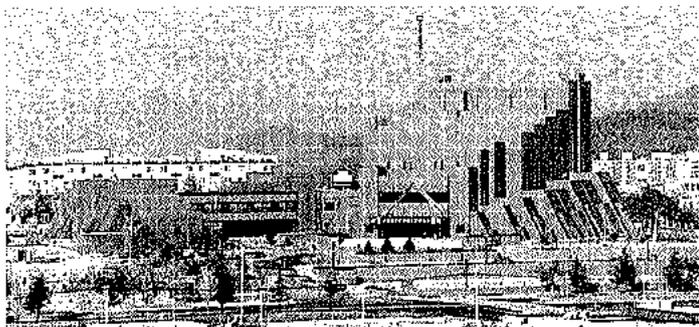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581-5711~4)로 문의 바랍니다.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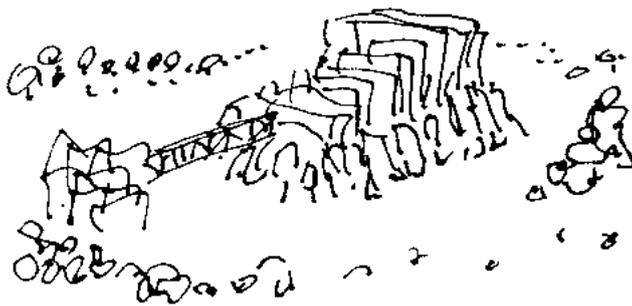
Arts Complex in Kumi



대지위치/경북 구미시 송정동
 대지면적/20,587.0㎡
 건축면적/5,061.3㎡
 연면적/10,430.9㎡
 건폐율/24.5%
 용적률/3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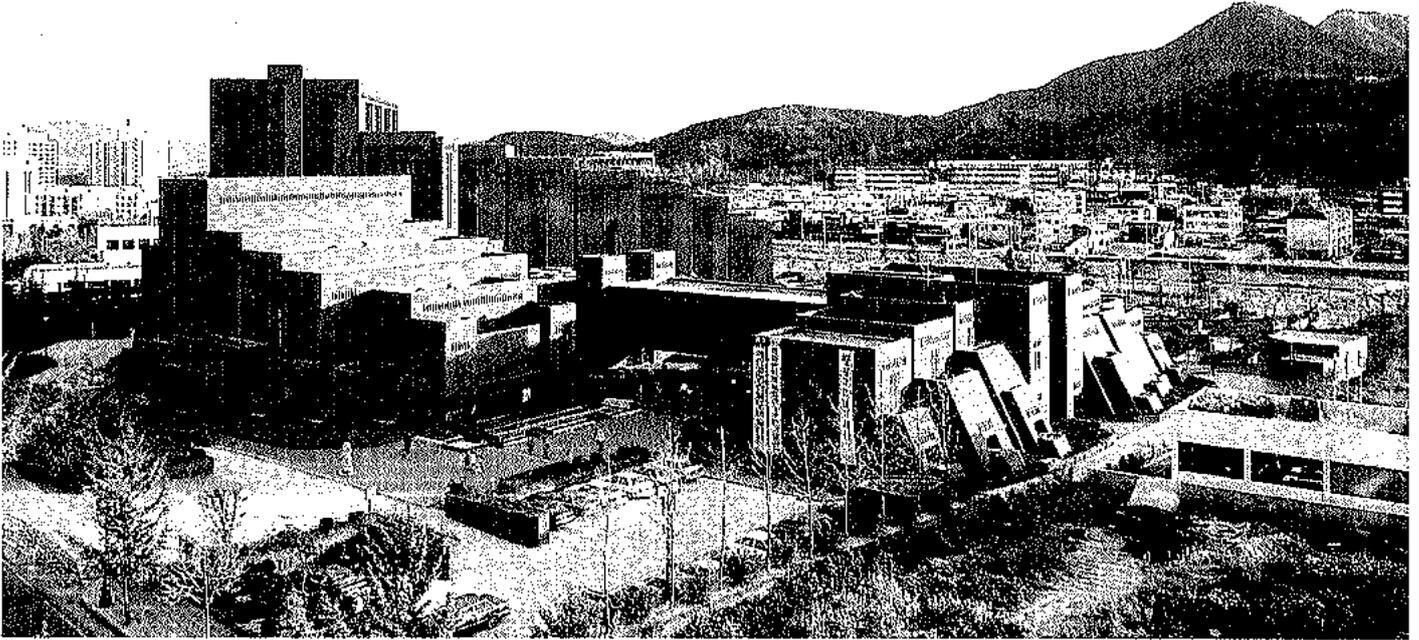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붉은벽돌치장살기
 주요시설/대공연장(1,354석),
 소공연장(386석),
 전시관리동,
 야외공연장 및 야외전시장



(사진 : 임정희)

故 金壽根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oc-Gu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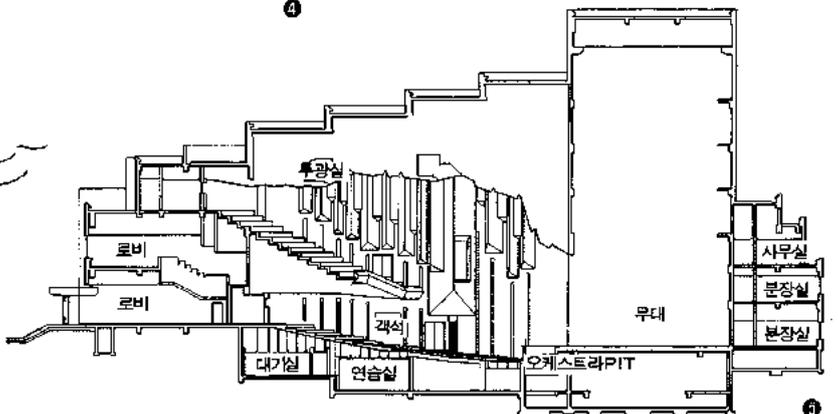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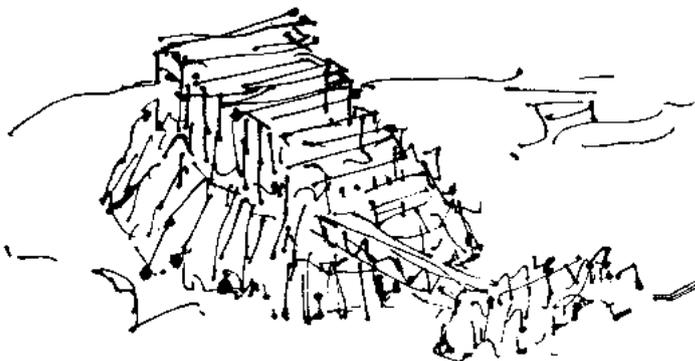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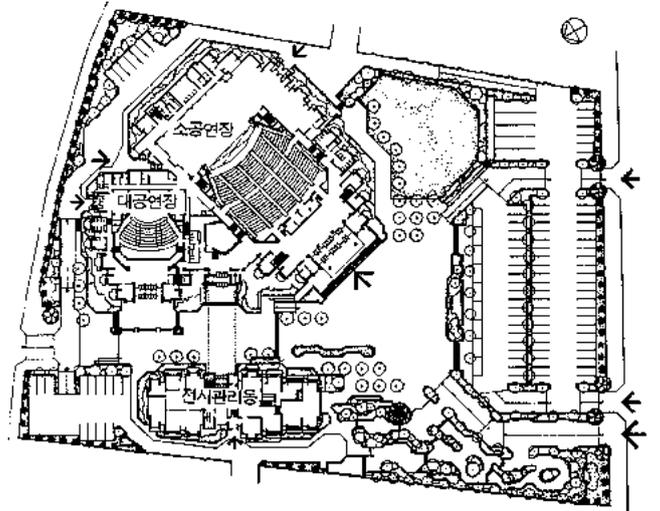
- ① 대공연장 남동측 외벽상세
- ② 원경
- ③ 전경
- ④ 무대측에서 본 대공연장 내부
- ⑤ 주단면도
- ⑥ 로비 휴게시설
- ⑦ 배치 및 1층명면도
- ⑧ 주진입로에서 본 공연장 및 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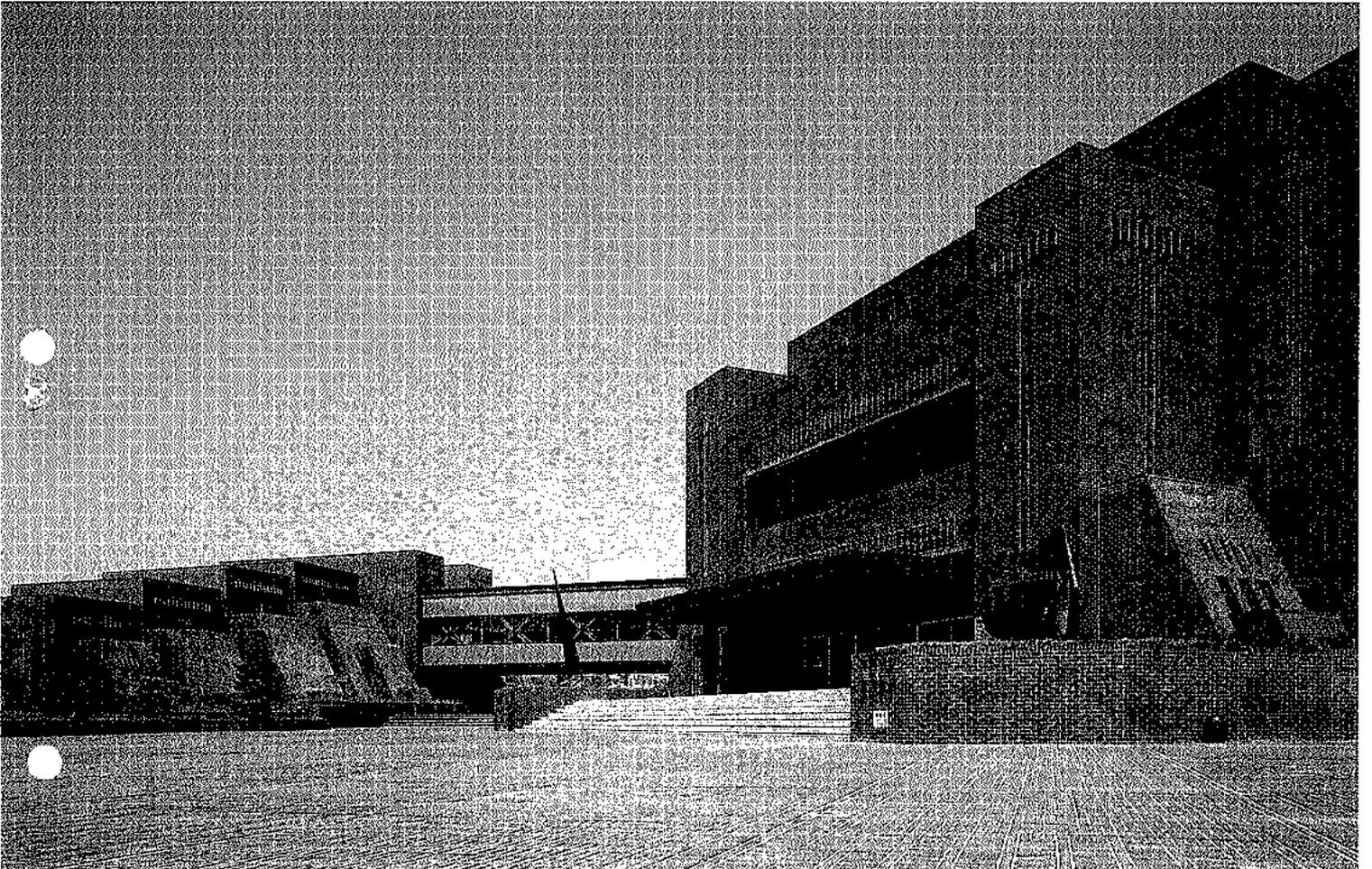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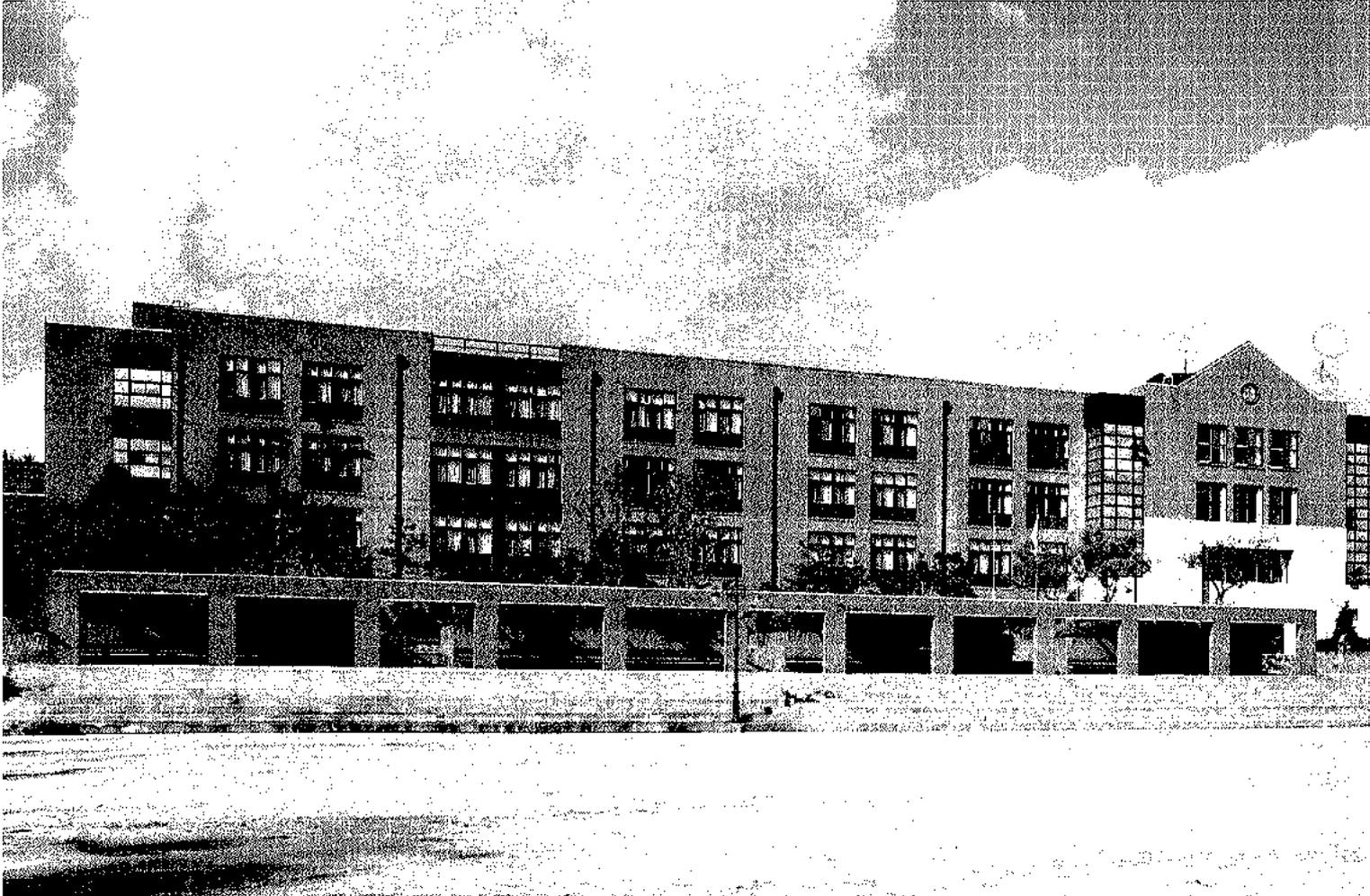
7



8

창덕여자고등학교

Changduk Girls' High School



대지위치/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9

대지면적/27,965㎡

건축면적/6,043㎡

연면적/18,633㎡

건폐율/21%

용적률/64%

규모/교사동-지하 1층, 지상 4층

체육관-지하 1층, 지상 3층

생활관-지하 1층, 지상 2층

경비실-지상 1층

구조/교사동·생활관-철근콘크리트조

체육관-철근콘크리트조+트러스조

외부마감/붉은벽돌(체육관 지붕은 동판)

■ 설계소요

서울의 인구분산을 위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서울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산계획에 따라, 강북에서 강남의 88올림픽선수촌·기자촌 단지로 이전하게 된 창덕여고는 부지가 올림픽선수촌·기자촌으로 연결되는 서쪽을 제외한 3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에워싸인 지역이다.

건물의 배치는 '口'자 형태로 교실군 뒤에 체육관 겸 강당이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고, 별동으로 생활관이 야산에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으로 위치해 있다. '口'자형 교실군 전면 3m아래 지반에 운동장이 형성되어 있고, 운동장과 교실군 사이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교실과 운동장 사이의 완충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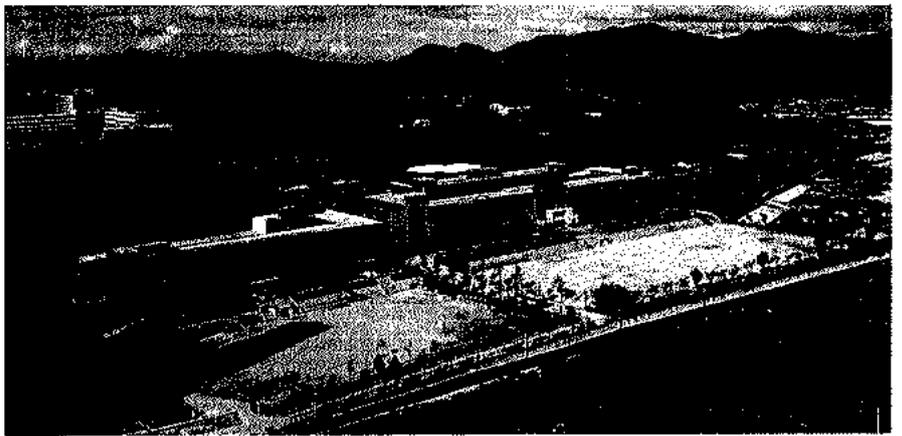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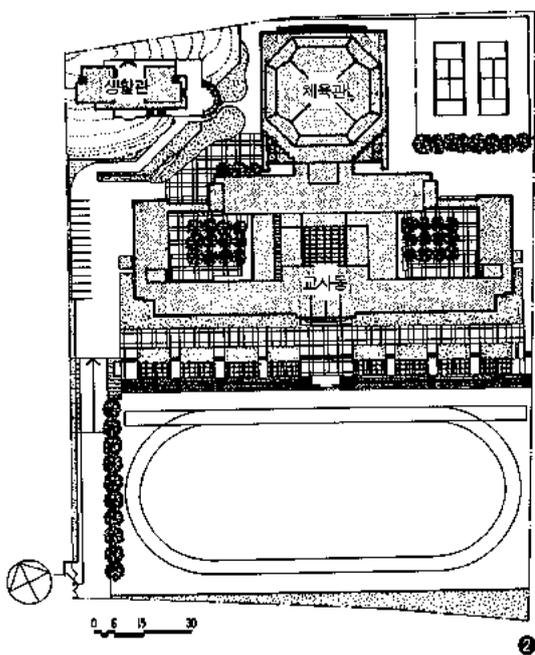
교실군은 자연적인 채광·일조 등 경제적인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배치한 일반교실동(36학급+교무실)과, 양측면·후면에 특별활동을 위한 특별교실동이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口'자를 형성케 하였다. 그리고 그 중앙부에 커다란 아트리움을 형성하여 이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일반교실·특별교실·식당·도서관, 나아가서 체육관 겸 강당 등 모든 시설을 연계시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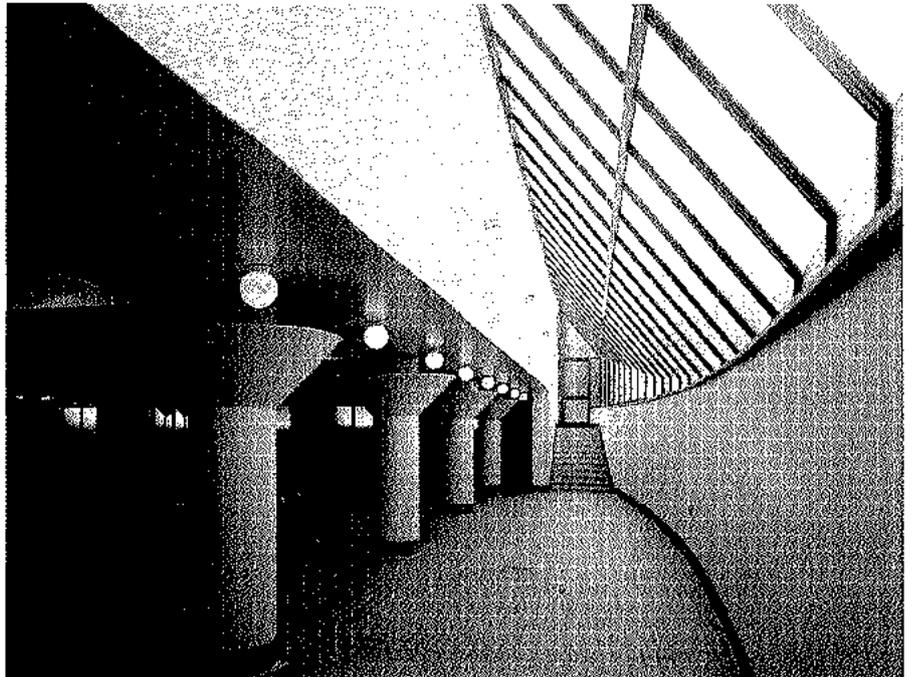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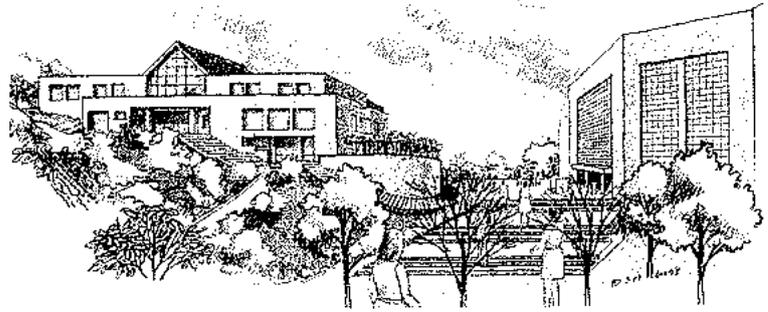
체육관 겸 강당은 1층 하부에 15m×25m 규모의 풀장과 무용실·탁구실 등이, 그 상부층에 체육관 겸 강당이 있으며 관람석은 스탠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동의 생활관은 지하층에 60명 수용의 식당, 1층의 예법실, 2층의 침실·거실로 구성되어 단기간의 숙박생활을 통하여 예법생활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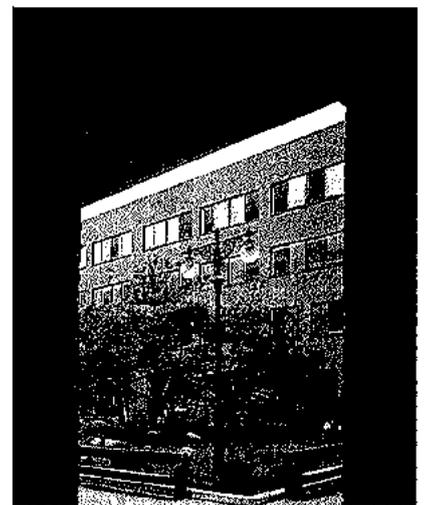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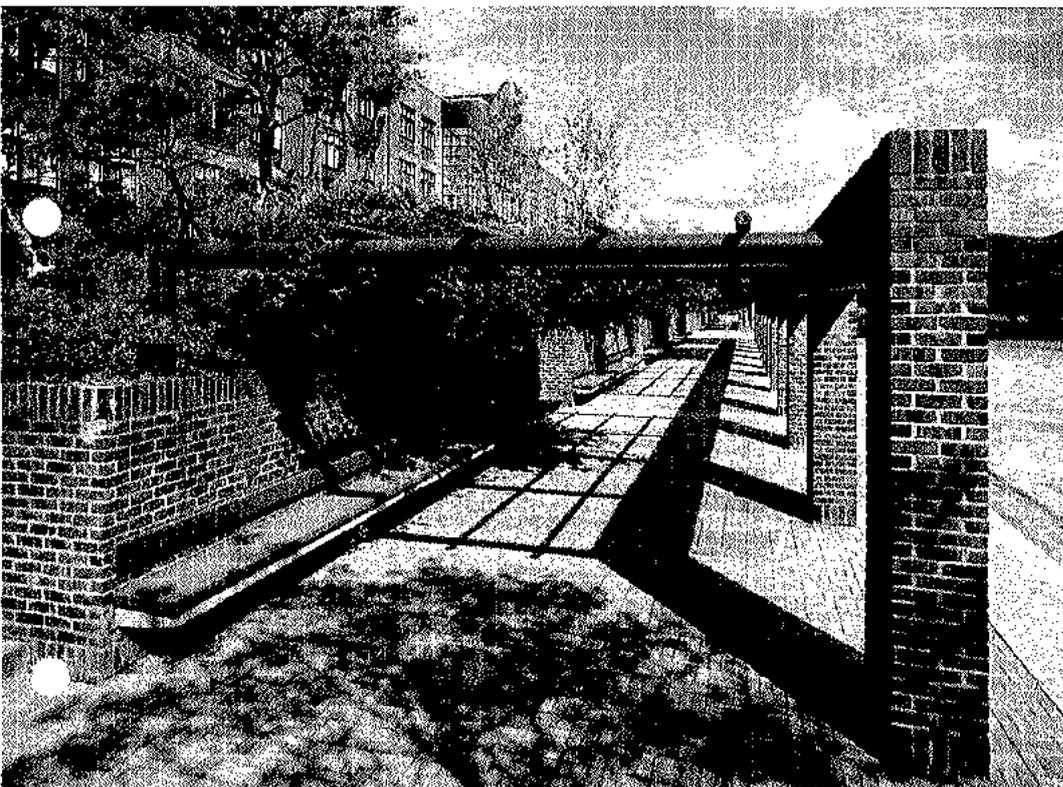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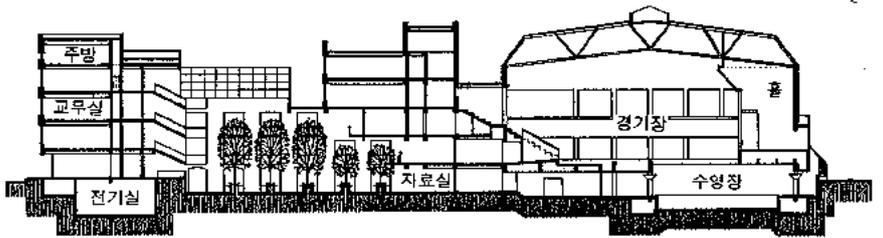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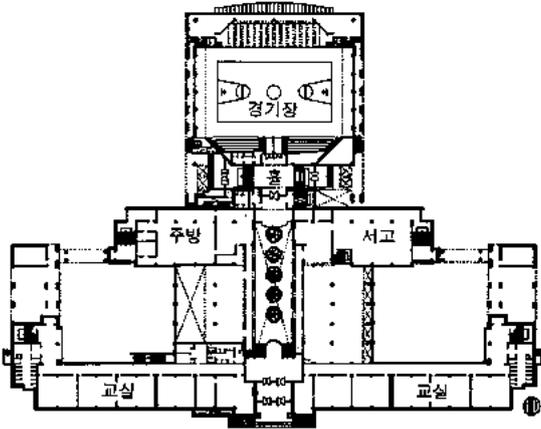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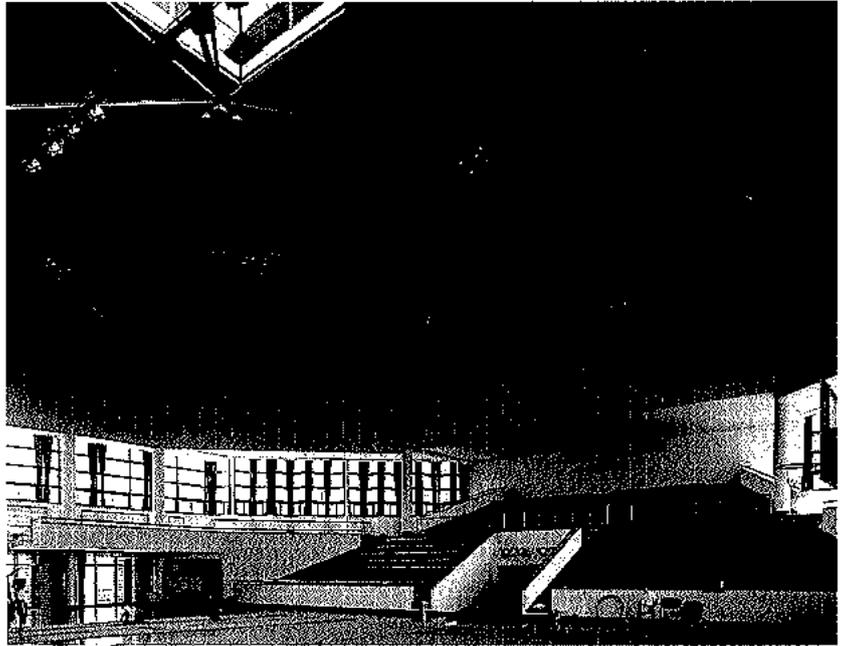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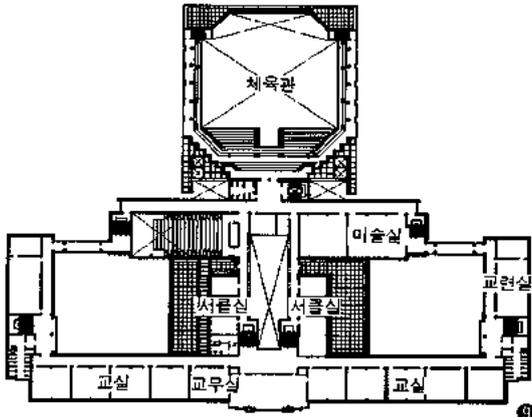
黃一仁/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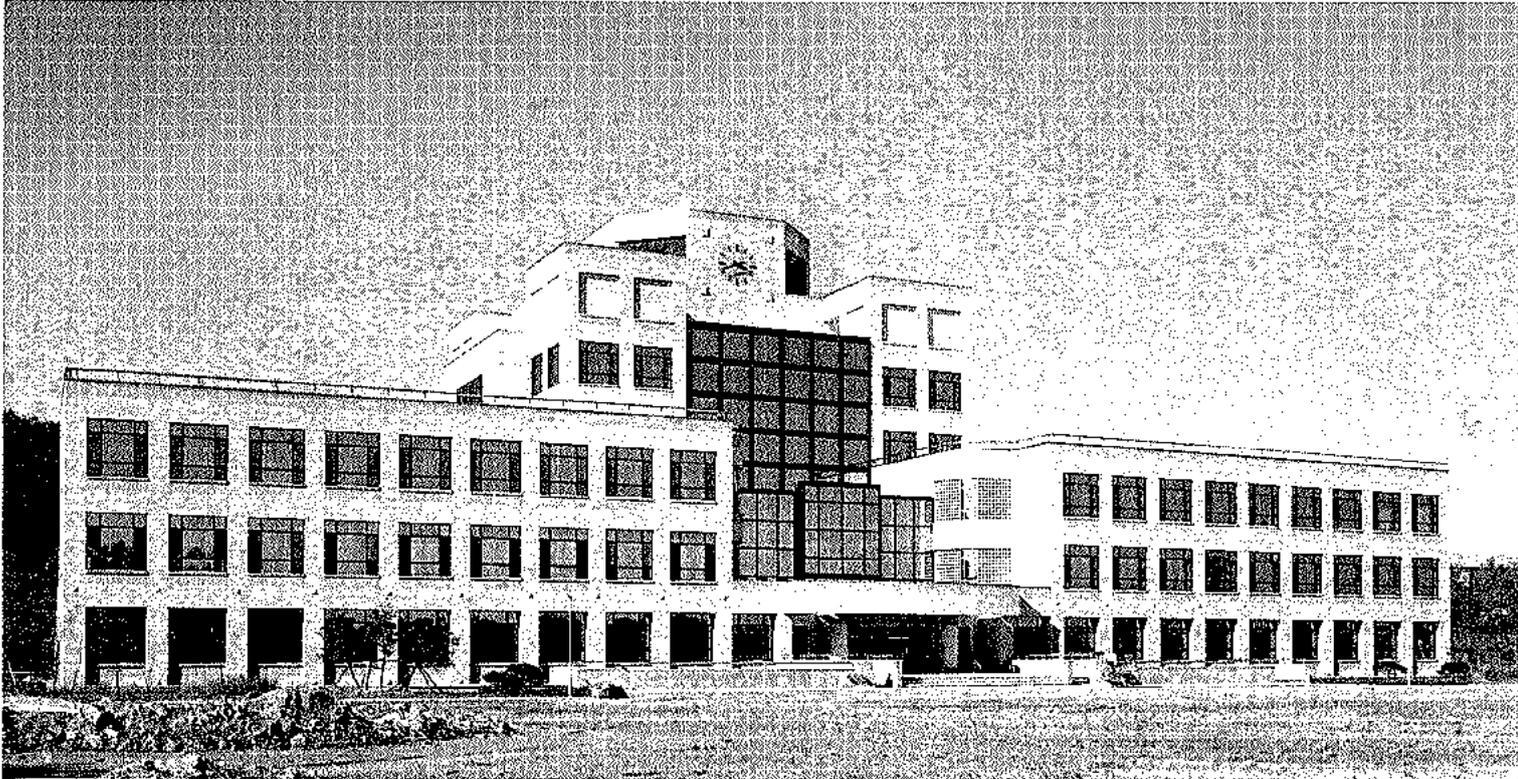


- ① 교사동 전경
- ② 배치도
- ③ 체육관 전면 외벽상세
- ④ 전체원경
- ⑤ 교사동 중앙 아트리움
- ⑥ 생활관 전경
- ⑦ 생활관 및 체육관 연결부 스케치
- ⑧ 수영장 후면 롱 라이트
- ⑨ 2층평면도
- ⑩ 1층평면도
- ⑪ 체육관 내부
- ⑫ 종단면도
- ⑬ 교사동 전면 파고라 상세
- ⑭ 피로티에서 본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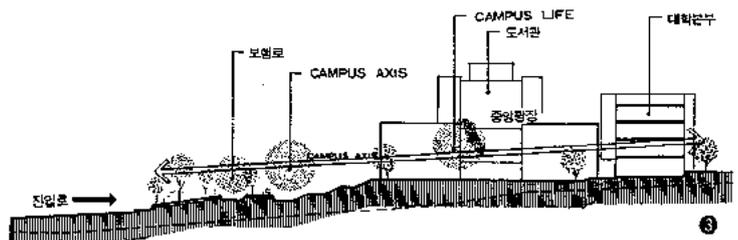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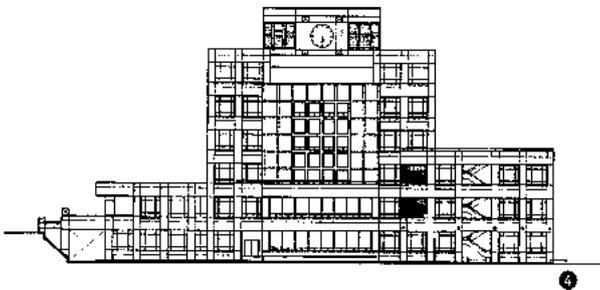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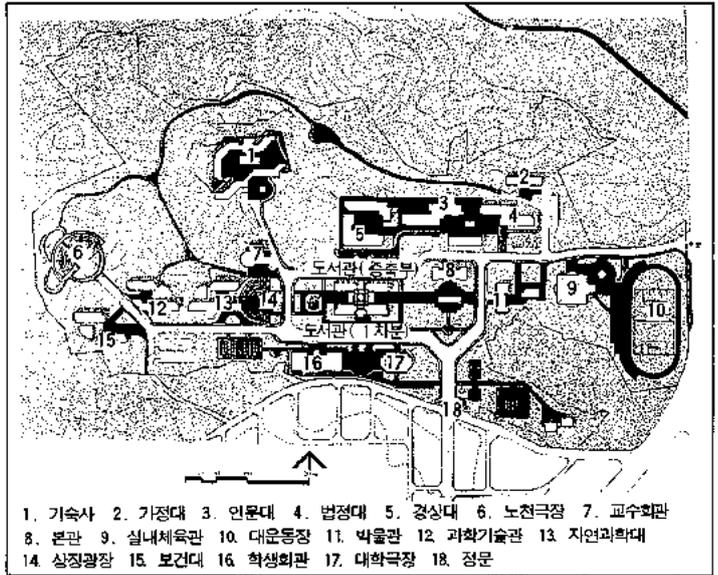


고려대 (서창캠퍼스)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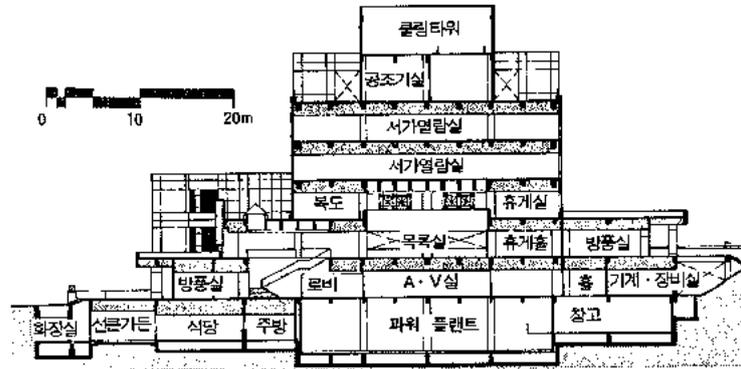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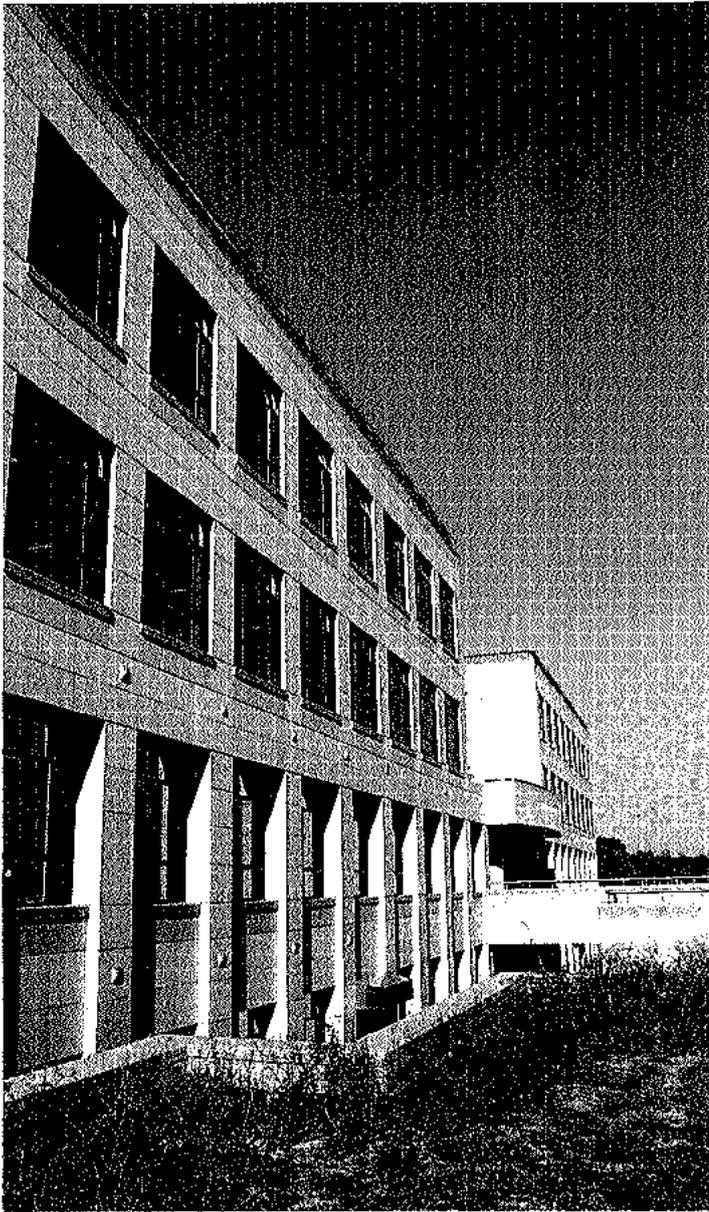
Library in Sochang Campus, Korea Univ.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조치원 서창동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내
지역·지구/자연녹지, 교육연구지구
건축면적/2,843.2m²(1차분),
4,065m²(2차분 포함)
연면적/11,801.48m²(1차분)
15,351.94m²(2차분 포함)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벽재료/THK30 화강석 물갈기
버너구이(포천석+상주석)
창호재료/THK24 복층반사 및 투명유리
+THK100 알루미늄



金禎一+崔泰容/(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Il & Choi, Tai-Yong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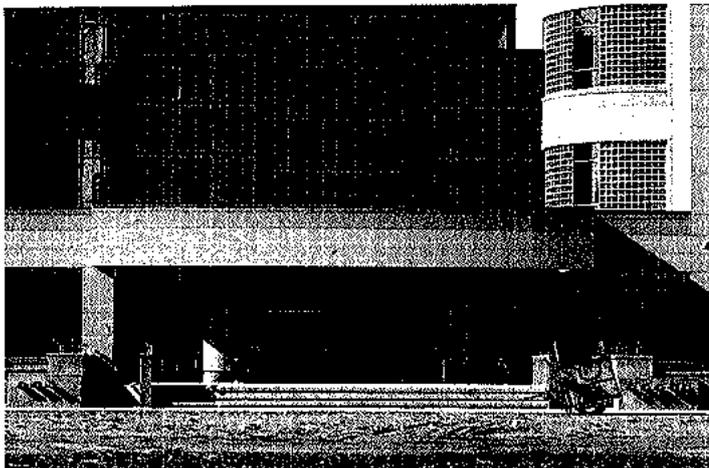
본 도서관은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캠퍼스의 핵에 해당되며 이곳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과 교육연구시설·학생회관·강당 등 지원시설 및 체육시설·주거시설이 주위에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서캠퍼스의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보관과 열람을 위한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마스터 플랜이 설정한 캠퍼스의 성장단계 및 환경질서의 실현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서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서 상징성을 높이고 본교 캠퍼스와 조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건축주의 강한 희망사항이었으며 설계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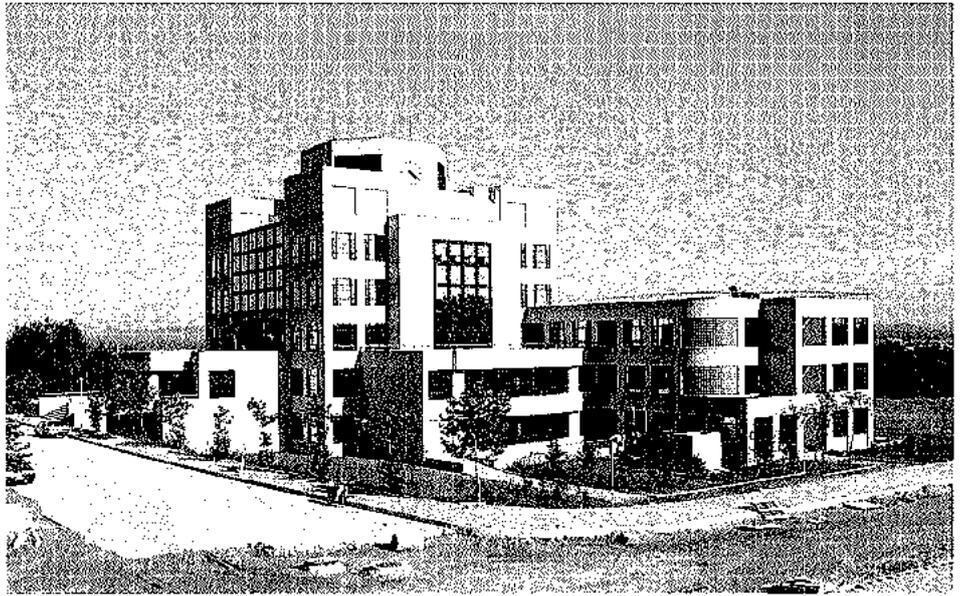
본교와의 연계성, 즉 고려대학교 특유의 상징성을 찾기 위하여 본교 캠퍼스를 지배하는 고전건축의 의장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배치 및 매스계획에서부터 고전건축의 중심적 대칭적 질서를 취하여 중앙에 코어부분을 설정하여 탑상으로 솟아오르게 하고 캠퍼스측에 따라 좌우대칭으로 4개의 Wing을 평행배열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후면의 2개 Wing을 장차의 증축부분으로 배정함으로써 1차 단계에서도 조형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석조건축의 중후한 감을 살리면서도 세부적으로는 현대건축이 갖는 명쾌한 면과 선의 구성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석재를 사용하되 고전건축에서 보이는 장식된 두꺼운 내력벽체의 느낌보다는 라멘구조의 외피로서 직선적 격자(grid)가 느껴지도록 하고 창호에도 정(井)자 패턴의 일관된 사용으로 절제되고 단아한 입면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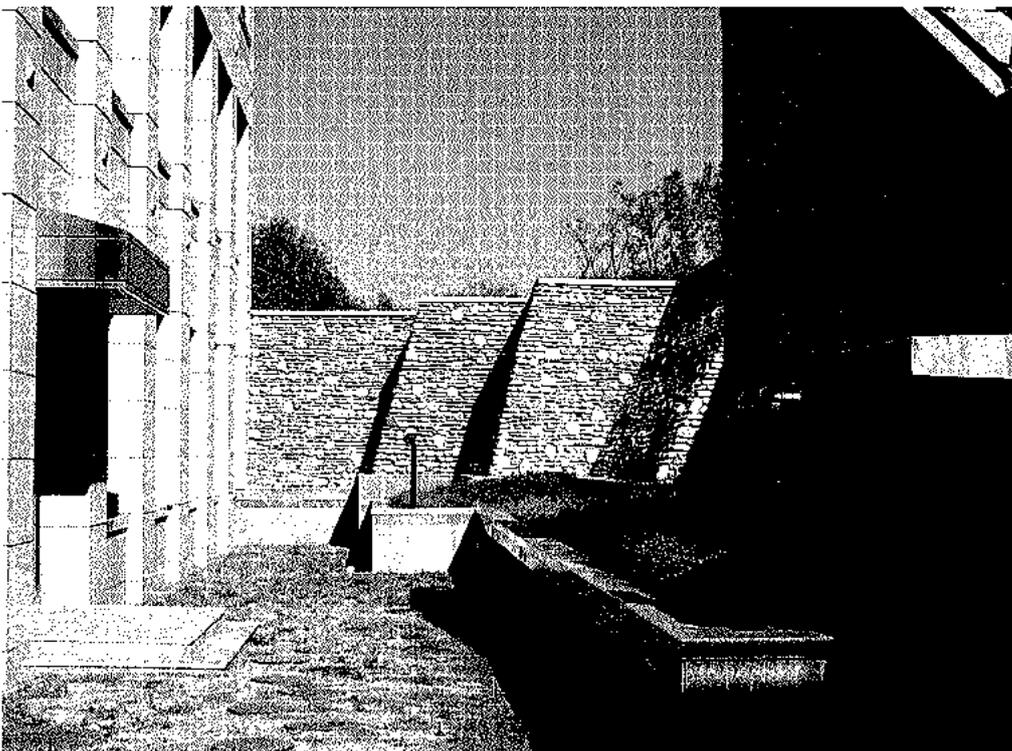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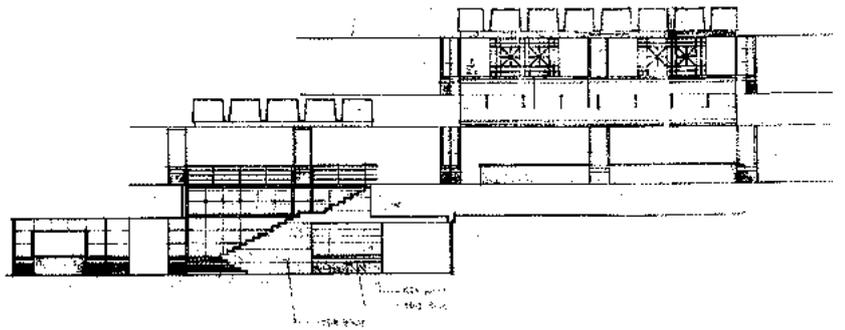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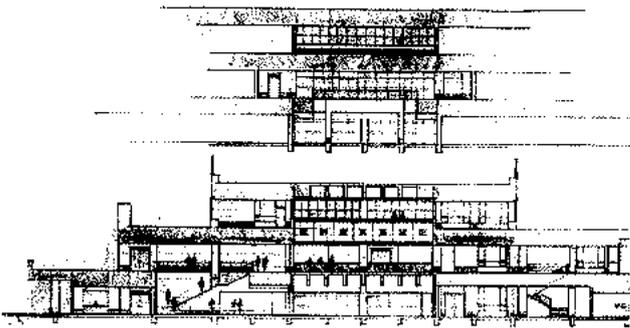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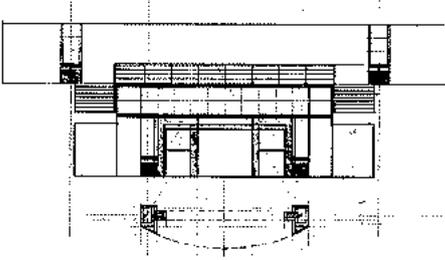
계획된 규모와 평면은 장기적 학사 발전계획에 맞추어 총 80만 권의 개가열람실과 자유열람실, 20만 권의 서고 및 관리부문의 수용을 목표로 하였으며, 서고 및 관리부문, 주요 서비스 및 출입동선 부문이 중앙의 탑상매스에 수용되고 자유열람실, 개가열람실들은 좌우의 Wing에 수용되도록 하였다.

도서관으로서의 진입은 전면의 진입로 및 학생회관, 대학극장 쪽으로부터와 후면의 단과대학군으로부터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대지의 레벨차에 의하여 1층 전면과 2층 후면에 각기 로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층간의 차이는 전면로비의 층고를 높이고 이곳에 후면로비가 증층으로 걸리도록 하여 하나의 개방된 공간으로 처리하고 시각적 연결을 꾀함으로써 공간이 단계적으로 연속되도록 하여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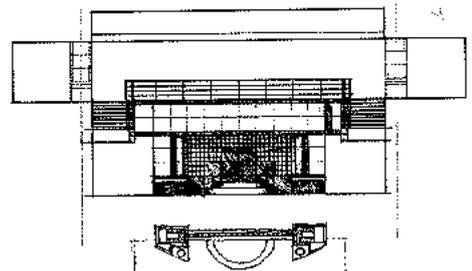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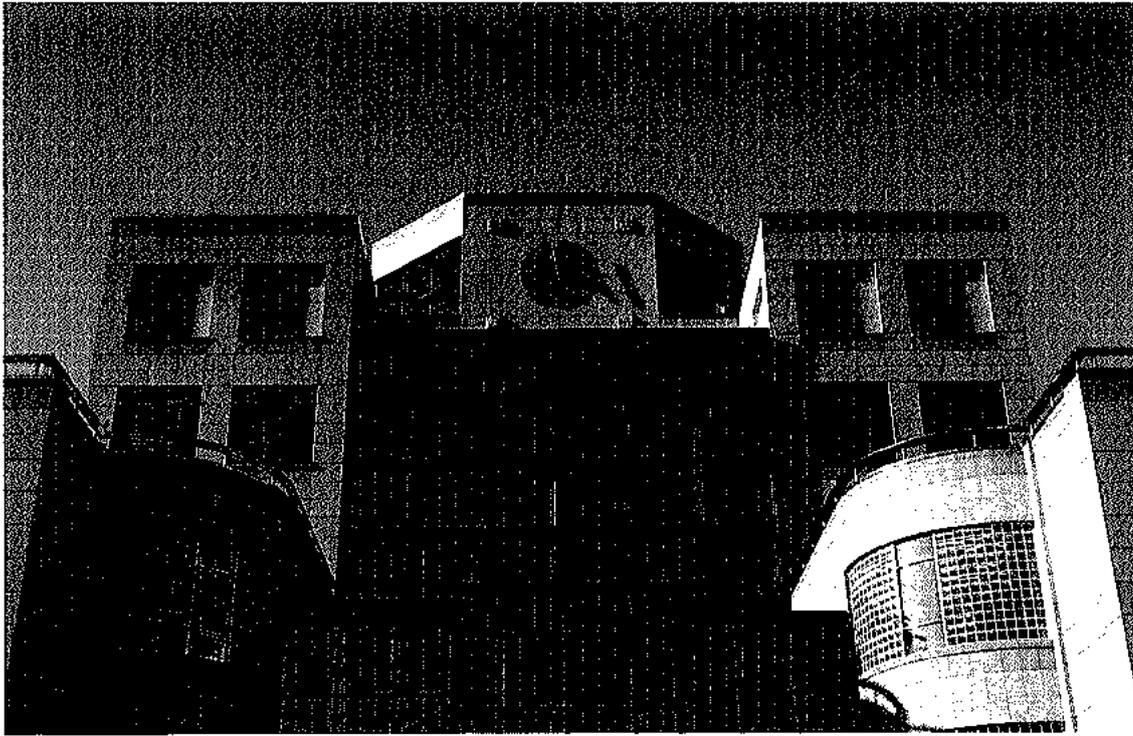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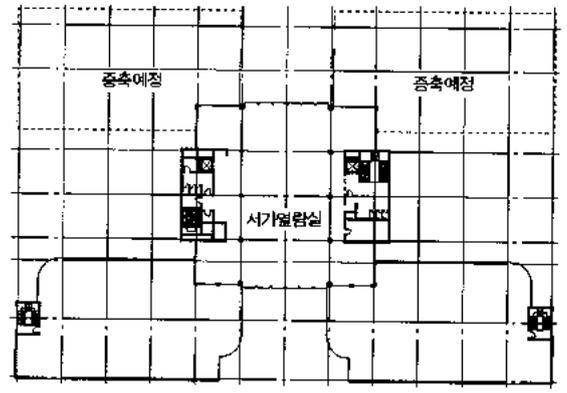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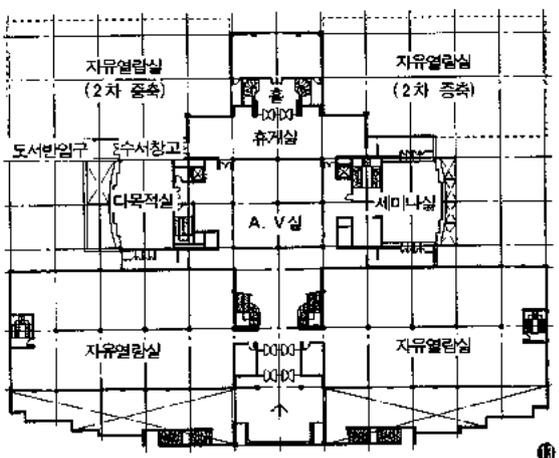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대학 마스터플랜
- ③ 진입공간구성 단면개념도
- ④ 서측입면도
- ⑤ 남측외벽 상세
- ⑥ 남측출입구 상세
- ⑦ 주단면도
- ⑧ 북서측 전경
- ⑨ 선관기단
- ⑩ 외벽 양각상세
- ⑪ 목록실 내부
- ⑫ 기준층평면도
- ⑬ 1층평면도
- ⑭ 2층로비

10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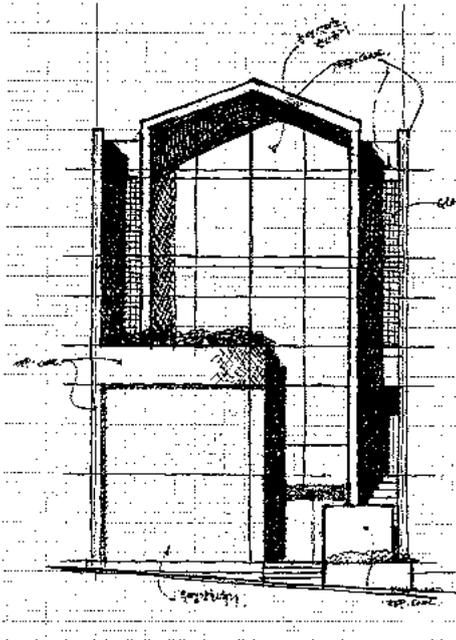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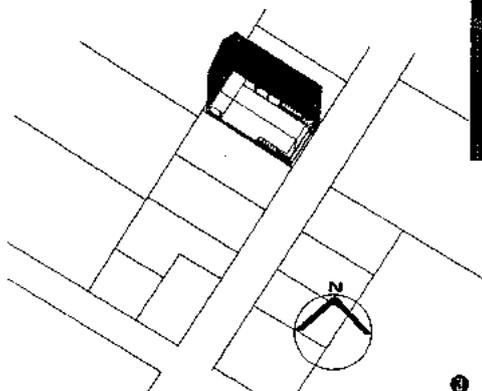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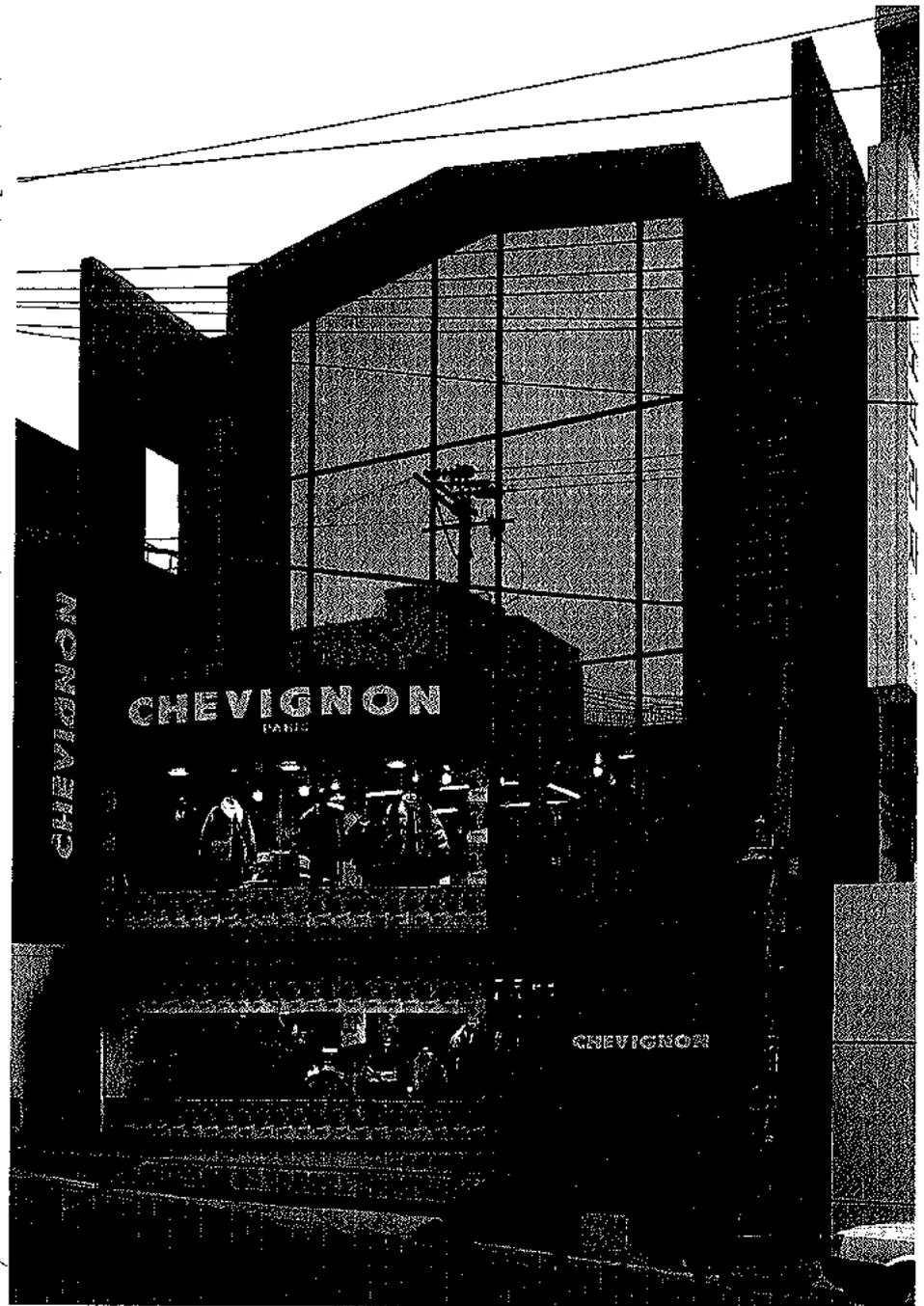
14

SKIP-UP



Skip-Up

대지위치/부산시 남구 남천동 7-11
지역·지구/일반상업지역, 방화, 주차정비지구
대지면적/198.6㎡
건축면적/157.2㎡
연면적/75.49㎡
건폐율/79.15%
용적률/294.68%
외부 마감/노출콘크리트
구조/콘크리트조(중공슬래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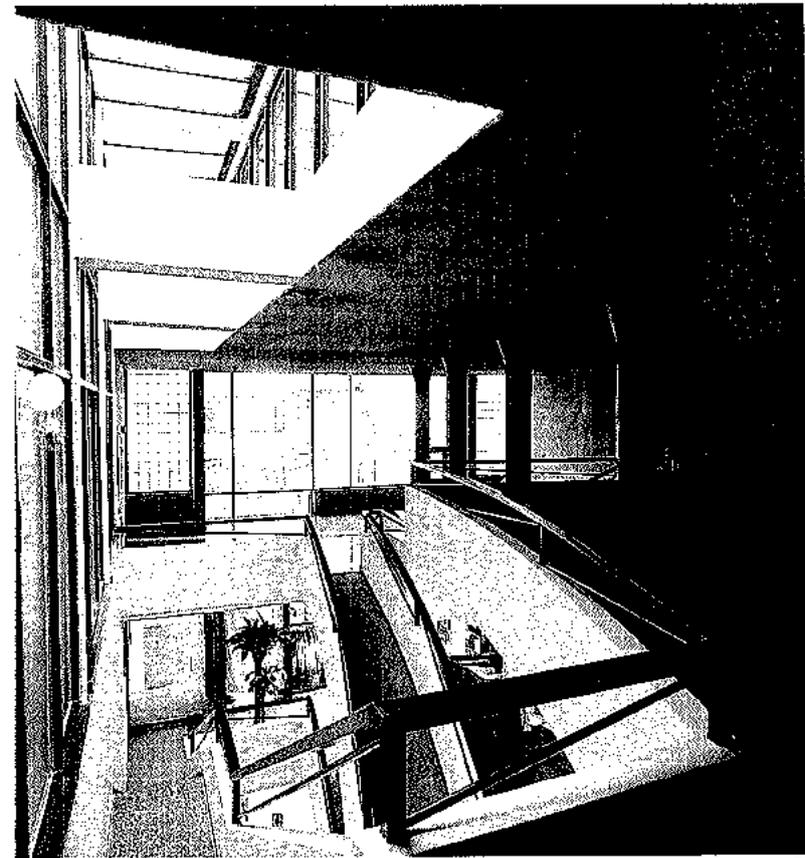
■ 설계소묘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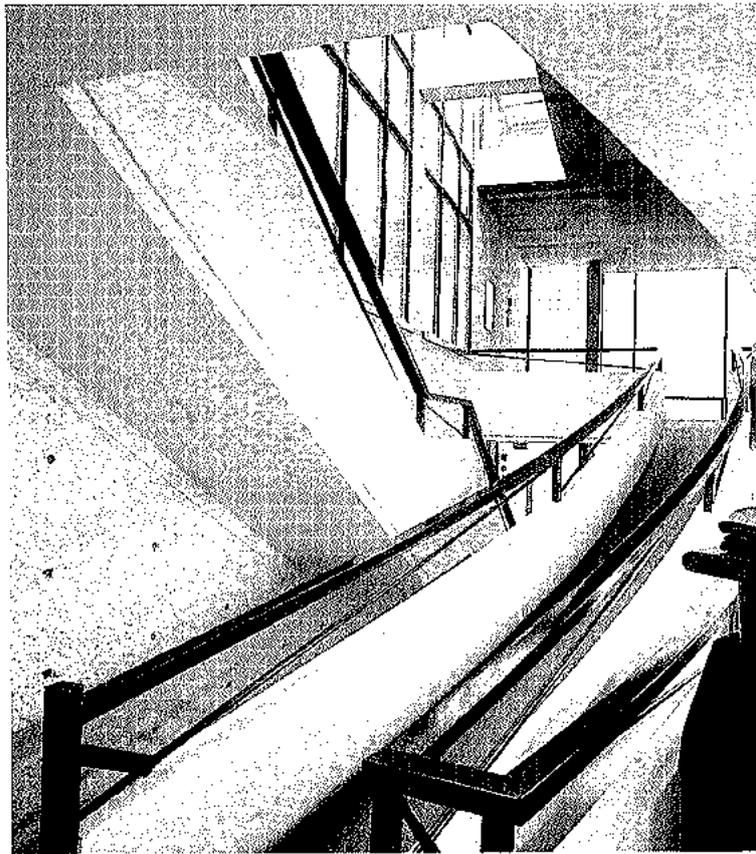
남천동의 폭 8m 골목길은 양측에 연속하고 있는 비슷비슷한 크기의 규모에 의해 도심속의 복도처럼 형성되어 있다.

대지의 폭 9.7m는 길이 20.47m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기 마련이다. 골목의 스케일에서 비롯되는 아기자기한 감각과 확대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요구의 충돌에 의해, 대지경계가 바짝 붙어선 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 다시 집을 세운다.

金仁赫/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재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4



5

HIGHT

대지의 구획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높이 12m 이하를 지키기 위해 폭지를 11.9m에 맞추고 내부의 공간 분할이 이뤄진다. 층고 2.7m는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보이드슬래브와 마감의 생략으로 가능한 최대의 치수를 만든다.

SPACE

내부 공간을 이홉 면의 높이를 달리하는 바닥으로 이루어진다. 전면과 후면으로 나뉘어진 레벨의 변화는 서로 엮물려 연결되어 있으므로 층의 개념보다는 높이의 개념에 가까운 구성을 하고 있다. 높이 사이의 차이를 연결하는 경사로의 계단은 꼬여진 상태가 되어 공간의 구획을 보호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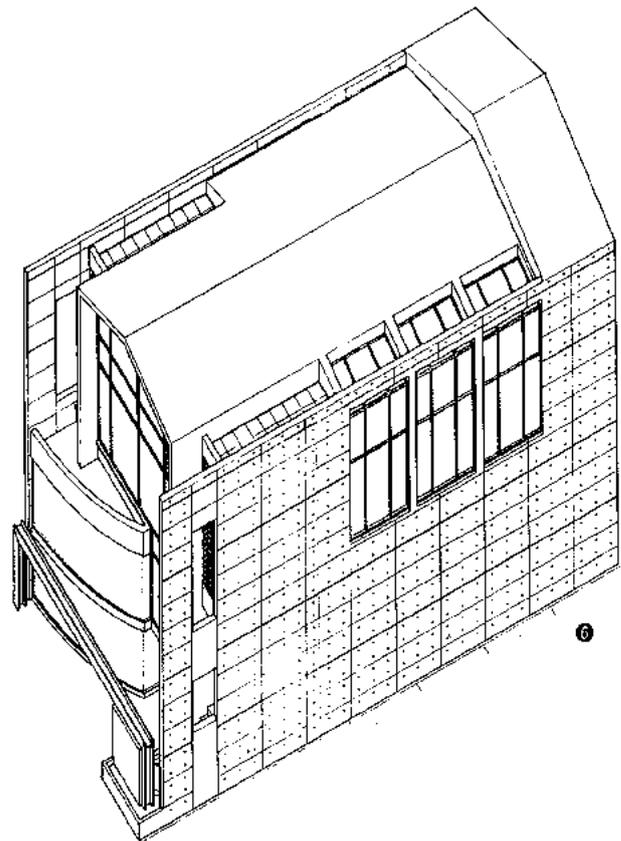
COLUMN

내부공간을 빗질러 나간 원형의 열주는 구조적 연결을 위한 구두를 갖게 되는데 양쪽벽이 이루는 소실점과 위치를 달리하는 또 하나의 소실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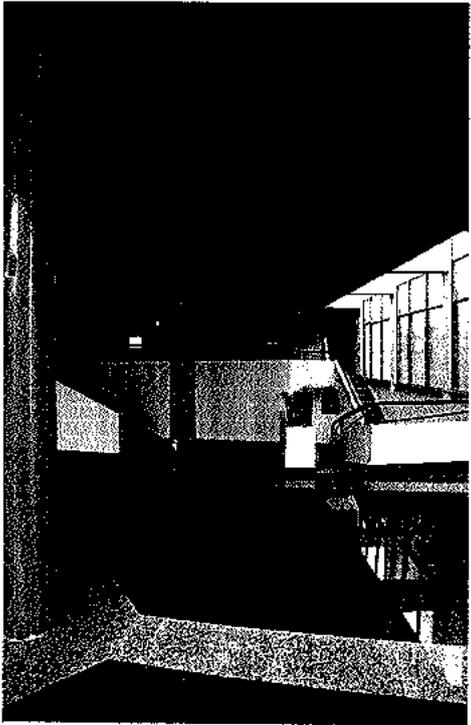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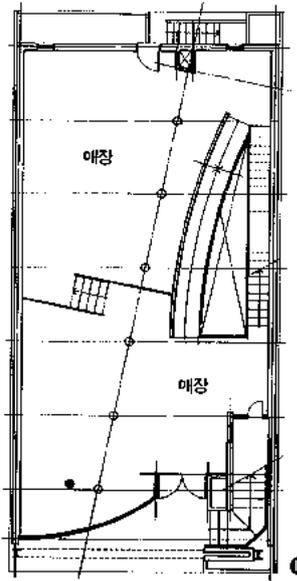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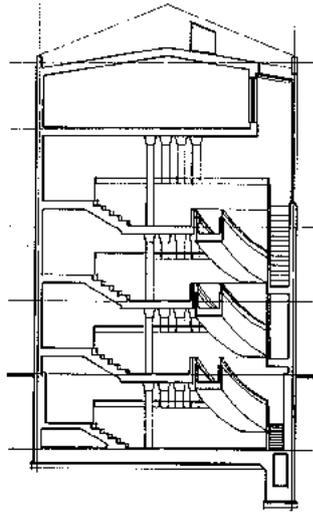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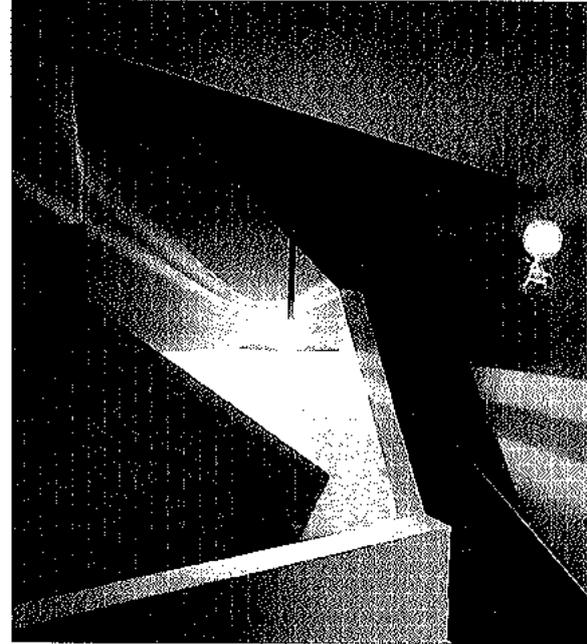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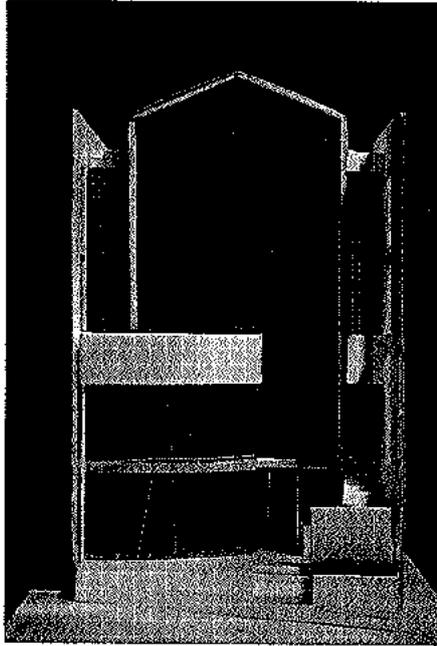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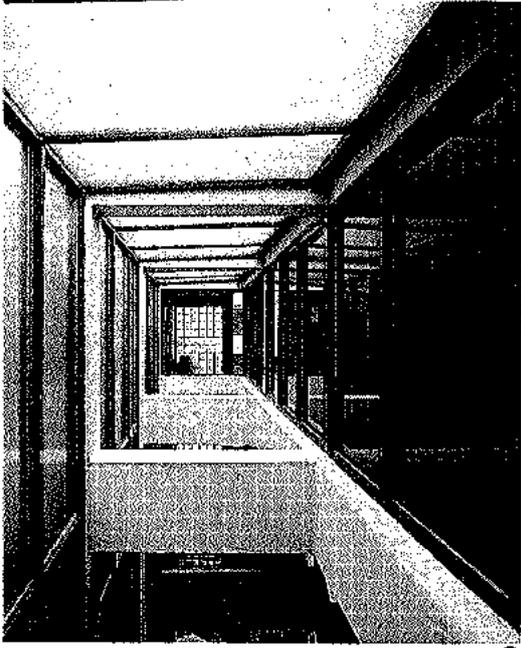
이중적인 원근법의 구성에 의해 공간의 깊이와 폭의 대비를 허물어 버리려는 시도는 구획된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것과 같다.

FINISH

노출 콘크리트의 처리가 미숙한 부분에 어차피 필요하게 된 마감은 결국 색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도막으로 이루어진 색의 효과는 중간색보다 원색의 자연스러움으로 처리된다. 공간의 정형적 형태에 빗그어진 기둥의 축선을 따라 바닥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그 방향성은 부딪의 인테리어에 대해 쾌탄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제안된다.



6



- ① 앞면스케치 ④ 램프
- ② 전경 ⑤ 배치도 ⑥ 엑소노메트릭
- ③ 3층 램프에서 본 매장 ⑦ 4층 램프상부

- ⑧ 3층내부 ⑩ 1층평면도
- ⑨ 스티디모형 ⑪ 3·4층 연결계단
- ⑫ 횡단면도 ⑬ 램프와 연결되는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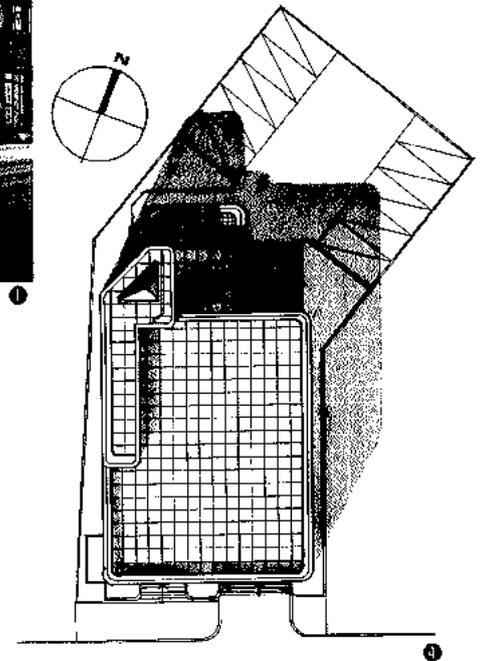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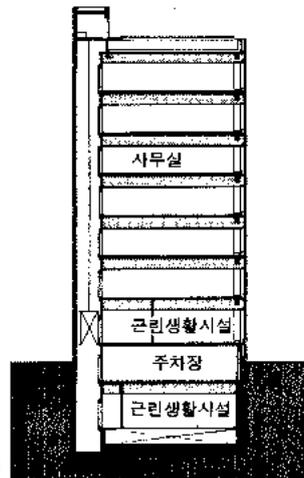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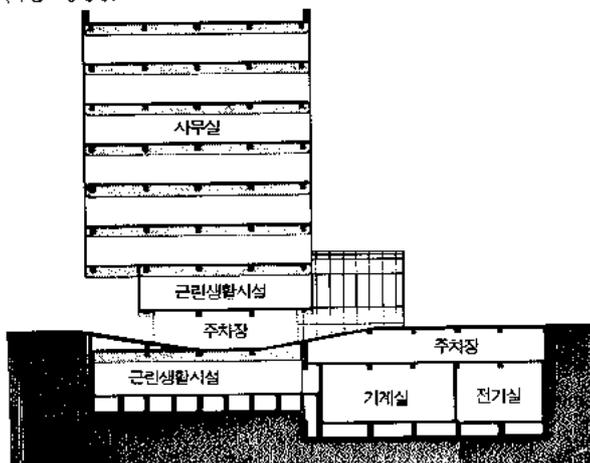


남창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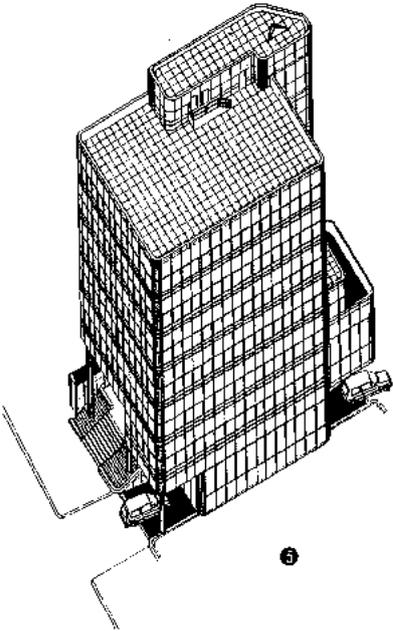
Namchang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8-16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821.10㎡
 건축면적/410.15㎡
 연면적/3,632.63㎡
 건폐율/49.9%
 용적률/293.9%
 주차대수/20대(옥외-10대, 옥내-10대)
 규모/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용도/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알루미늄셔트, 24mm 칼라복층유리

(사진: 정경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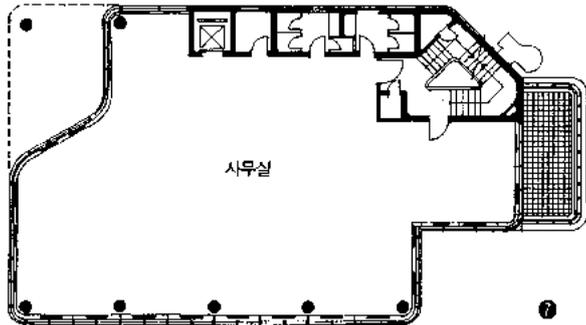
崔東奎/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Designed by Choi, Do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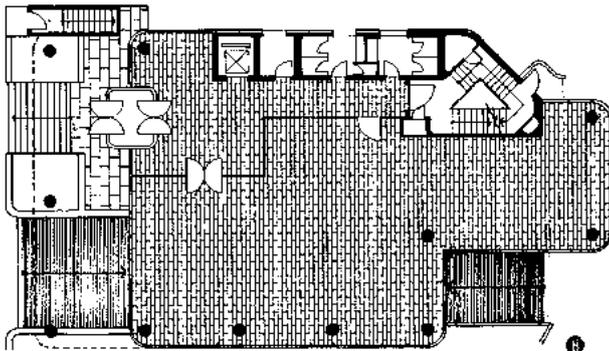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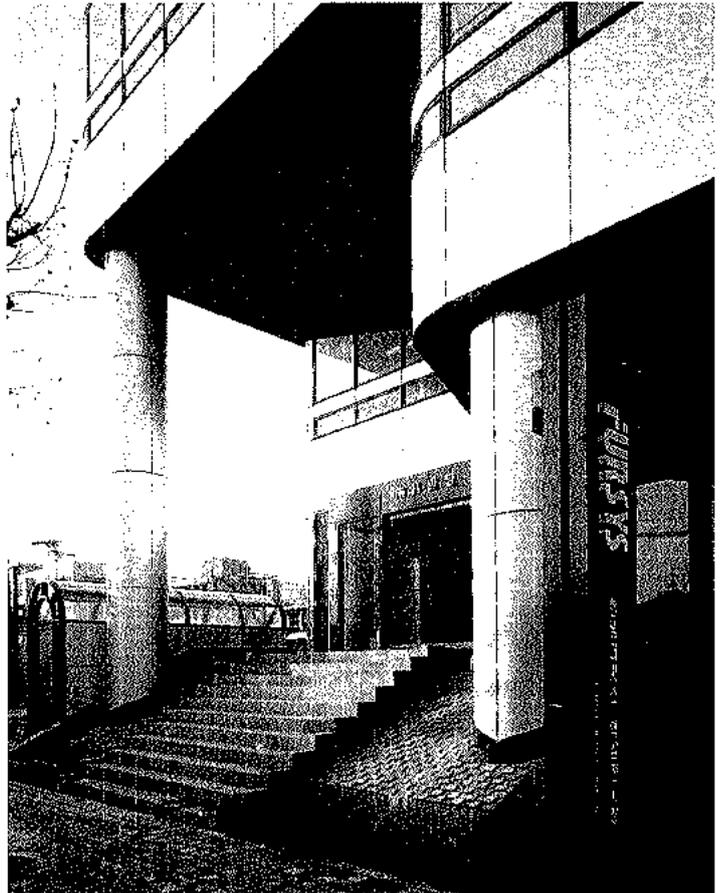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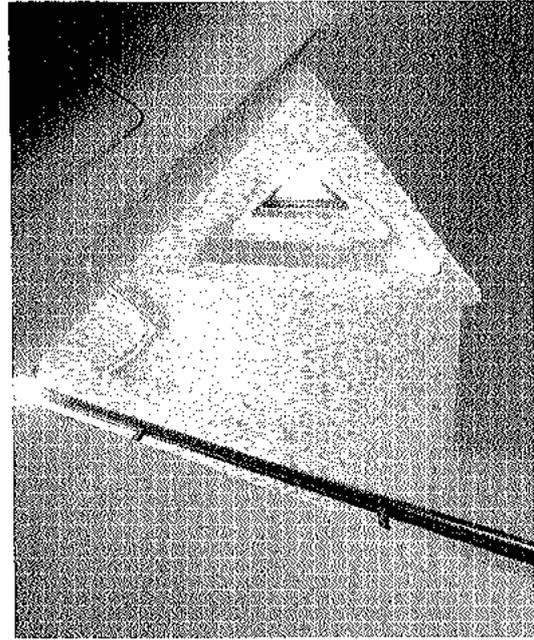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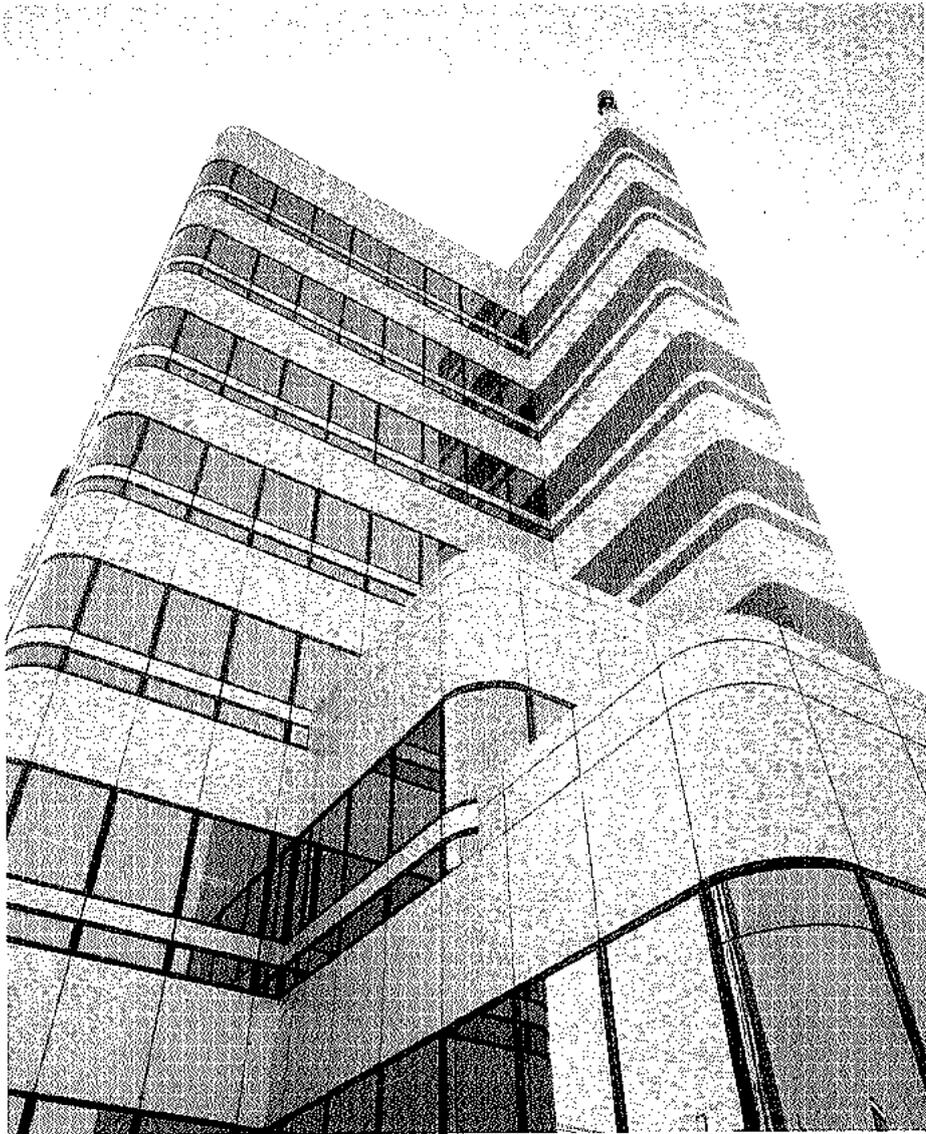


8



9

- ① 전경
- ② 종단면도
- ③ 횡단면도
- ④ 배치도
- ⑤ 엑소노메트릭
- ⑥ 로비에서 본 1층
- ⑦ 2층평면도
- ⑧ 1층평면도
- ⑨ 주출입구상세
- ⑩ 외벽상세
- ⑪ 1층로비
- ⑫ 계단실 상세



■ 설계소요

본 빌딩은 대지 구입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그 주변의 여러 대지마다 약식으로 배치계획(주로 주차계획 및 일조권 관계)을 하던 끝에, 구입가격과 배치계획에 별 이상이 없다는 판단하에 구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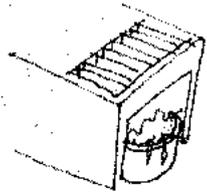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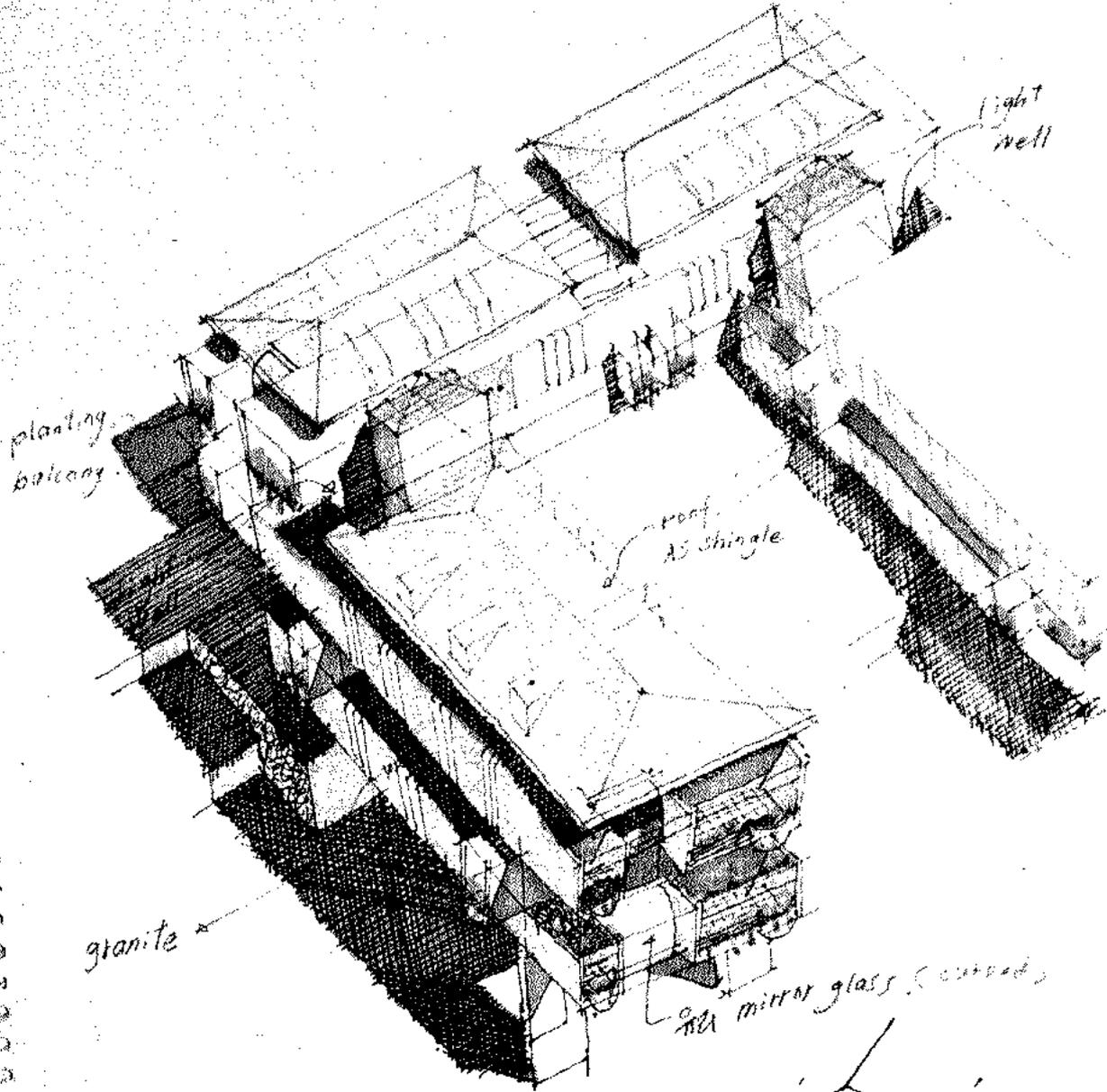
그리고 곧이어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건축주는 매년 멋진 건물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도 말이다. 사실은 멋있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또 예산상의 제약은 있게 마련이다. 혹은 예산 많이 안들이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재주 아니냐고, 말장난을 하는 건축주도 있고... 결국 견해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한 상식적인 건물이 되었다. 조금 특징이 있다고 하면 작은 규모지만 VSL 구조를 채택하여 장스판을 만든 것과, 대지 형태를 핑계하여 생긴 삼각형 형태의 계단실 상부에 천창을 뚫었는데 이 빛이 거의 10개층 높이를 뚫고 지하실 바닥까지 밝게 비추게 한 점일 것이다.

부분부분 재료선택의 칼자루를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해 섭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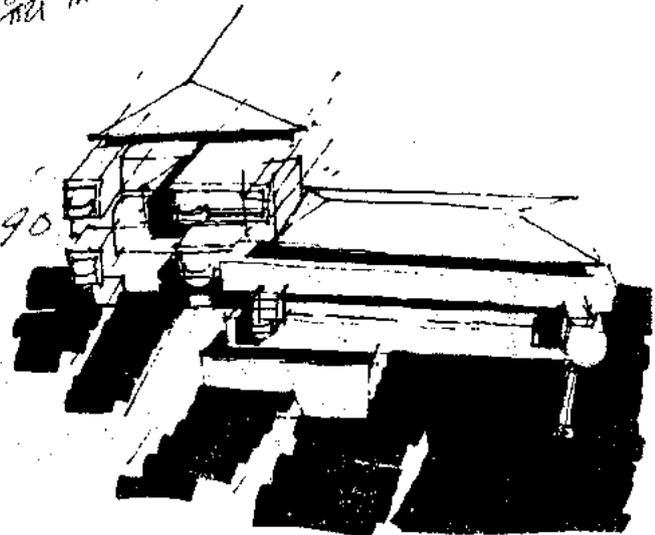
Handwritten scribbles at the top left of the page.

11. Mar. 90.



planting balcony

11. Mar.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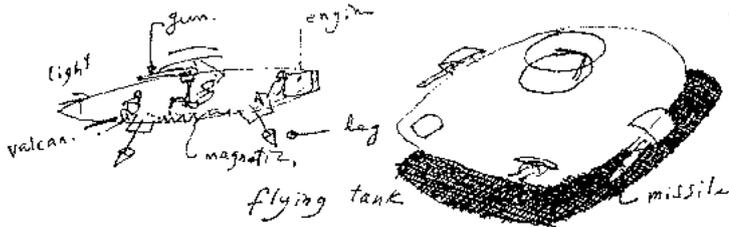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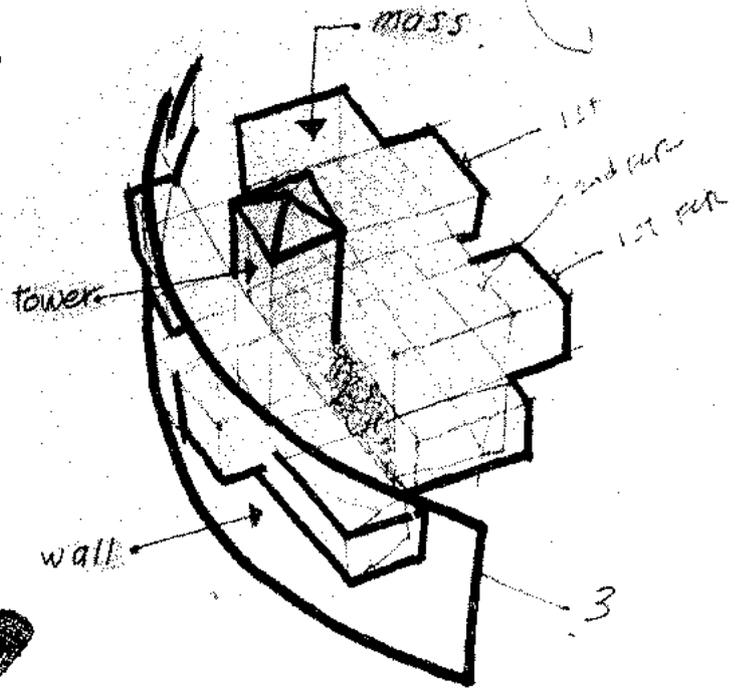


자연을 닮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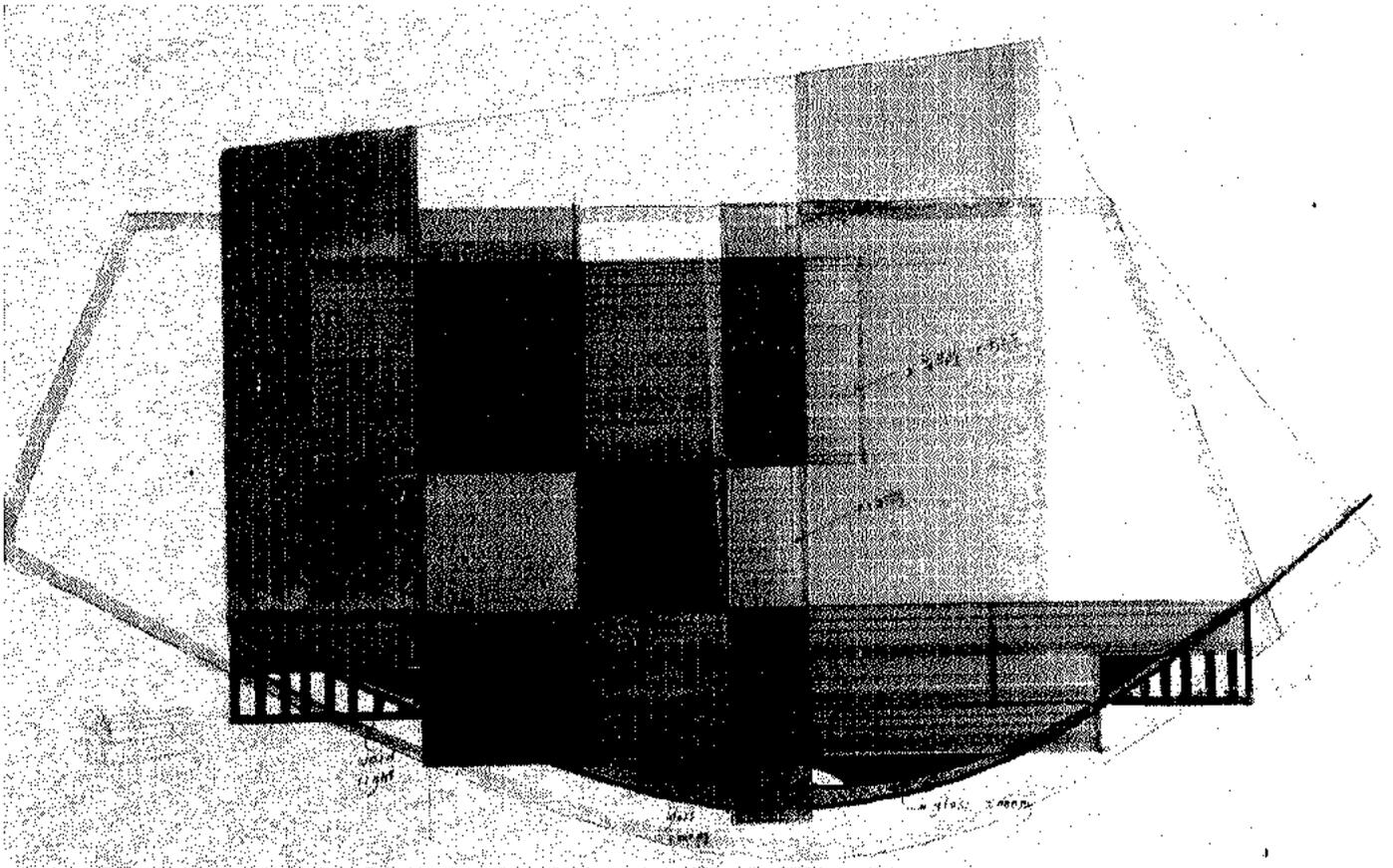
우리는 결국 자연속에서 산다. 대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며, 햇빛을 쬐이며, 자연이 준 식물을 먹고산다.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한다지만 결코 자연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연에 대항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자연에 맞서 우리를 지키는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죽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우리 삶이 부드럽게 되려면 자연에 따르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 승경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일부로 남고 자연과 하나가 된다.

여기 두개의 스kets치는 서로 다른 Project이지만 둘다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또 하나는 연립주택이다. 자연을 따르는 간절한 원망이 아쉬울 뿐이다.



金基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協會를 기대하며

金宇成

(주)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

협회란 여러가지 차원의 집단이 있겠는데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 회원들의 일차적 권익보호 활동이고, 다음 단계가 회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연구, 교육에 노력하는 발전적 단계가 건축사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의 증대라는 단계라 한다면, 현재의 우리 건축사협회는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건축사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나 성과가 있다고 보는 일들은 대부분이 건축사들의 기득권 보호, 건축사들의 밥벌이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데 주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예를들면 건축설계와 감리상에 건축사들이 책임을 될수록 적게지는 방향의 제도연구, 건축사들의 복지 및 노후대책을 위해 될수록 많이 걷어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논란과 시비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다.

주로 일차적인 욕구충족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 같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에 여유가 없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기적인 집단인지, 아니면 협회운영책임자들의 안목의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 확보나 나누어 갖는 활동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싶다. 예를들면 설계를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같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설계 Handbook, Wing Manual, 설계, 감리 Check List, 표준 서방서 및 작성기법, 工法의 비교평가, 건설자재 비교평가 같은 연구를 하여 각 회원들에게 공급, 교육한다면 모든 회원들의 설계의 Quality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각 회원들이 각자 해야되는 일을 공동으로 한다면 이보다 경제적인 일이 없을 것이며, 향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용역시장이 개방이 되더라도 설계능력을 향상시켜 놓는다면 우리 모두의 힘이 되지 않겠는가?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보가 얼마나 많고, 빠르고, 유익하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한다면 우리 회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각자 정보수집의 정력을 줄일 수 있고 좀더 많은 정력을 설계의 본업 즉, 창의적 작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설계의 수준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협회내에 자료실,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회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전산화하여 장기적으로 수집, 분석, 교육을 한다면 모든 회원들의 호응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협회의 활동에 기대하고 싶은 것은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 건축사들에 대한 일반사회인들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도 냉정히 돌아 볼 때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사들을 알기를 평당 몇 천원, 몇 만원하는 용역비를 받는 허기복덕방 정도로 아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많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축설계업이란 얼마만큼 건축법을 최대한 악용(?)하여 최대한의 건물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업종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건축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더욱 문제가 많은데 이럴 때는 허가과정에서 여러관공서를 거치고, 부수적으로 여러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로비를 잘해서 허가를 원하는 대로 최단시일에 받아내느냐가 건축사의 본업이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건축설계라는 것이 많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봐야 괜히

설계비를 조금 더 받으려고 꾸며대는 애기정도로까지
 비하되니 정말 문제인 것이다.

건축설계라는 업무가 제도권위에 도면과 시방서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야 하고 또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겠다고 선택하는 직업인데 막상
 사회에 진출해서는 많은 Project 들이 그런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보다는 건축 제반 인허가 행정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법서사와 같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관공서 인허가 담당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건축관계
 규정이 애매해서 담당공무원의 유권해석 또는
 규정적용에 의해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많은 경우에는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시에는 공표된 규정의 적용여부의 확인보다는
 심의자 각 개인의 주관적 평가 및 의견에 의해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사가 얼마나 잘
 설계내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유도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물론 건축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법규나 규정이 낙관적인 숫자나 논리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정리될 수가 없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옛 규정이 불합리해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하나의 규정을 고치다 보니, 다른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바빠 개정하다 보면
 서로 상이하고 불합리하고 애매한 규정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미관을 중요하게 보는
 규정과 교통, 주차장을 중요하게 보는 규정,
 일조권같이 이웃건물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규정, 소방관계를 보는 규정, 녹지확보를 중요하게
 보는 규정, 에너지관계를 중요시하는 규정,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 등등이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여러가지
 규정을 해석,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런 심의도 일정한 법칙과 합리적인 과정,
 충분한 검토, 설계자의 의견개진, 그리고 가능한한
 설계자의 창의력 존중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건축사가 작업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해주며, 책임을 지게 해야하는
 것이다. 규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는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한다면 그와같은 일을 되풀이하려는
 건축사가 과연 있겠는가?

이러한 제반 규정, 심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건축사 회원 개인들에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건축사협회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이를 홍보, 교육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과 같은 범규, 절차에 건축사들의 목을 조이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건축사들의 위상을
 높으려면 결국은 건축사들의 사회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일반 사회인들의 건축사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건축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자연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범규 절차와 같은 제반 설계여건도
 저절로 개선될 것이다.

건축사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의 폭을 넓히려면
 건축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가깝게는 도시설계, 도시계획에도
 관여해야 하고 도로, 교통계획에도 의견개진해야
 하고, 소방법, 재개발법, 주택사업 촉진법 등 제반
 관계규정 제정절차에 참여하고 건축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대책,
 주택정책, 도시인구정책, 환경정책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건축사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건축사로서의 좋은 정책과 안을 내놓아 각
 관계분야에 기여하고 중요한 정책결정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권익보호 방법이 있겠는가?

이러한 일들은 건축사 개개인이 할 수 없으므로
 협회에서 각 회원들의 능력을 규합하여 각 분야별로
 힘을 모으도록 Coordinate 를 정해준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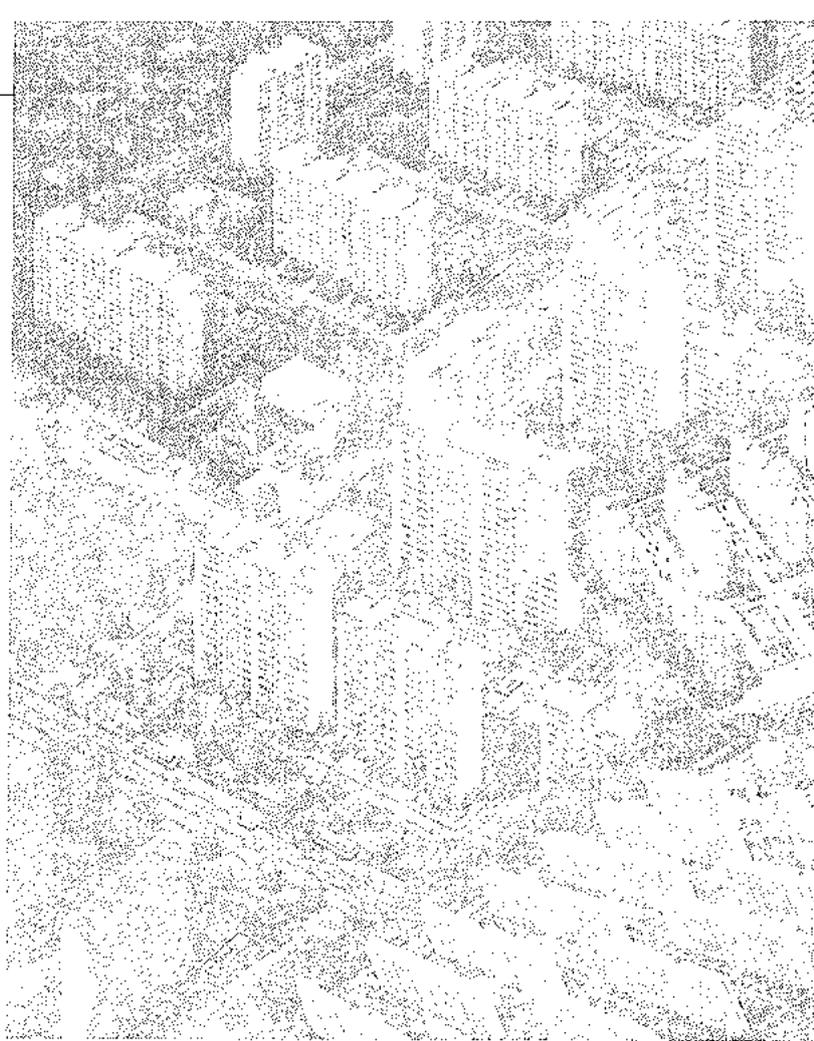
현재 건축사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 모든 건축사들의 면허를
 관장하고 있고, 회비를 걷고 있다. 이와같은 권한과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기여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다.

회원들의 밤벌이를 위한 일차적인 권익보호의
 단계를 떠나 좀더 크게, 면허를 갖지 않은 건축권계인
 모두를 포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건축활동이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적인 분야가 되도록 연구,
 기술개발투자를 하여야 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도시환경, 국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의 기여를 높여야만 우리 건축사들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본다.

현행 고층아파트 구조설계 문제가 심각하다.

李昌男/건축사 建築士事務所



이 그림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의 원효대교를 건너다보면 시속 100km가 오히려 답답하다. 속도 제한표시에는 분명히 60km로 되어 있으나 이 제한 속도를 지키는 자동차는 아마도 고장이 났거나, 힘없는 고물차 뿐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날마다 속도 위반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

목욕탕이 요금인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으름장을 놓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불결한 영업이나, 탈세가 자행되고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암시인 것 같다. 요즘은 위법도 일종의 유행이고, 대중이 가는 길이면 바른 길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하기가 옛말에도 “君者大路行”이란 명언(?)이 있었으나, 獨也靑靑하게 살던 정몽주는 타의로 제명을 살지 못했지 않았던가?

현재 우리는 30층 고층 아파트가 눈에 설지 않게 되었고 유능한 구조전문가들이 단 1주일만에 연건평 수만평의 고층 아파트 구조설계를 해치우는 세월이다. 필자도 구조설계계산 속도가 느려서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데도 유독 아파트 구조계산에서만 도저히 그들을 쫓아갈 수

없어서 벌써 2, 3년전부터 도태되는 감이 없지 않다.

오래 전부터 예약 받았던 단 1건을 취급한 것이 작년도의 아파트 설계 실적인데, 그 하나뿐인 아파트 설계 결과가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건설회사를 봉으로 아느냐?! 남들은 15, 16층 아파트 벽체두께가 전부 15cm로 해결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너만 20cm를 고집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최신 “Computer Program”과 “Ultimate Strength Design”을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당신네 연구소만 구닥다리 방식에 집착하여 우리 건설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해 왔다.

정몽주는 죽을 때 영원히 남을 시 한수를 남겼는데 필자는 하늘 쳐다보고 손가락만 빨아야 할 판이다.

200만호나 되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獨也靑靑”에아리를 묻어 버리고 다수가 걷는 “민주주의”의 길에 뛰어들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필자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속 60km 원효대교를 100km로 달리는 상습 범법자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속 60km가 필요 이상의 제재인 것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인데, 요즘의 아파트 구조계산에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하게 되어 심히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 글을 발표한다.

1.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이란 무엇인가?

벽돌이나 블럭으로 벽을 쌓고 그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올려 놓으면 훌륭한 2층집이 된다. 그러나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적조 내력벽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편의상 “재료의 구조상 한계”라고 붙여 보겠다.

모든 재료에는 그 재료에 적합한 구조상 한계가 있다. 올림픽 대교(사강교)는 재료의 구조상 한계가 너무나 못미치는 설계이며, 30m스팬의 트라스를 경량C형강으로 조립하는 것은 재료의 구조상 한계를 넘는 무식의 소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내력벽으로 설계하기 시작한 효시는 필자의 잠원동 대림아파트이다. 당시만 해도 철근콘크리트는 비싼 재료이고 조적조는 싼 것으로만 인식되었던터라 간벽은 의당히



조적조로 하고 꼭 필요한 부위만을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설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던 때였다.

설비공사업자가 이곳저곳에 구멍을 내야
하는데 콘크리트 내력벽은 너무 단단해서
불편하다는 항의도 받았고 입주자가
사진들을 걸기 위하여 박는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웃지못할 불평이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아파트 간벽이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임을 시비하지 않는다.
10~13층 정도의 벽식 아파트라면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으로도 무리없는 설계가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이란 벽체의 중앙
또는 양면에 가로 세로 철근을 배근한
것으로서 단위면적당 축하중이 별로 크지
않을 때 제법 합리적인 구조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얇고 높이는
높아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밀실하게
채워 넣기가 어렵고 따라서 Slump 값을
적게 하면 폼보가 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기
쉽다.

그림1과 같이 가로 세로 철근이 배근된
사이에서 슬래브 철근까지 정착되다 보면
골재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콘크리트
치기전 좁은 거푸집사이에 들어간 각종
오물도 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얇은 벽체의 높이가 높으면 압축력을
받았을 때 좌굴현상까지를 감안하여야 하며
슬래브에서 전달되는 Bending Moment 는
물론 바람, 지진 등 횡력에 의한 추가응력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배근은 수직
수평근의 피복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시공하는 현장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이다. 내력벽은 거푸집
재활용을 위하여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되기도 전에 탈형을 하며 특히 물을
뿌리거나 보온 보양하는 작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구조계산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구멍들, 설비, 전기, 소화전, 엘리베이터,

스위치 같은 것들도 내력약화의 요인이
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이 받을 수 있는
압축력은 다음에 설명할 띠기둥 내력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각 나라의 구조계산
규준이다.

2. 띠기둥이란 무엇인가?

띠기둥은 내력벽에 비하여 작은
단면으로도 큰 축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요구조부재이다. 벗겼을 하나씩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철
농촌에 가면 짚을 서로 묶어 뗏단을 만들어
세워 놓는 것이다. 빗자루도 가느다란 짚을
뽁뽁 북으면 제법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철근도 한두 개가 따로 따로 놓면 압축력을
받아 구부러지고 만다. 시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많은 압축파괴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식이 ACI 의
Tied Column 공식이라는 기록이 있다. 즉
ACI 의 띠기둥 공식은 탁상에서 만든
이론식이 아니라, 임상시험으로 유도된
실제적인 공식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둥배근에 관한 제약조건은 유별나리만치
엄격하다. 철근량을 늘여서 기둥단면을
줄이는 설계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현실에서는 매우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띠기둥(Tied column)에서는 띠철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룸자체도
띠기둥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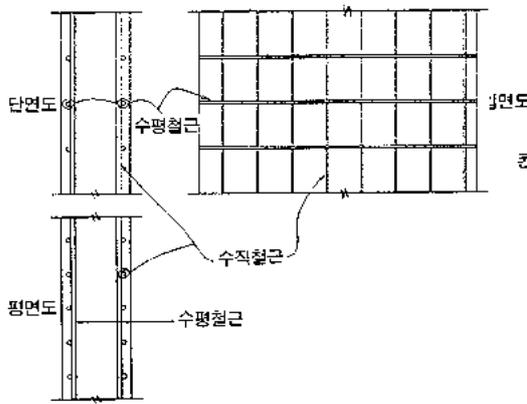


그림1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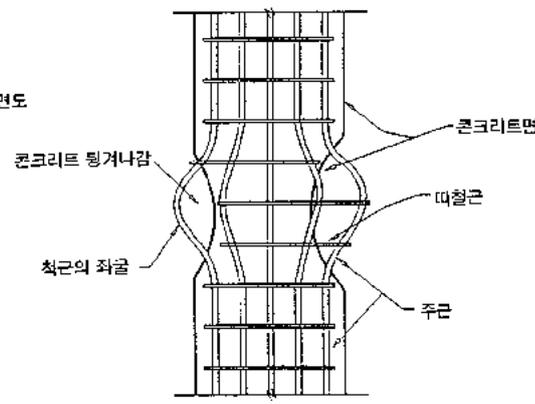


그림2 띠기둥의 압축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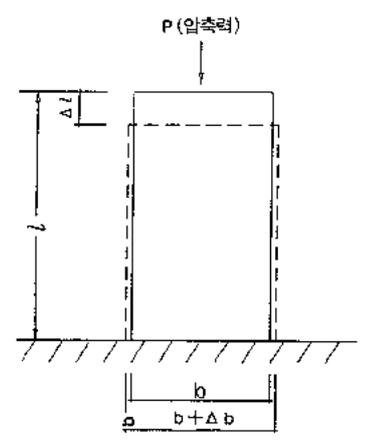


그림3 기둥의 압축변형

라고 하며, 죄수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도 허리띠를 압수하고 “고무줄 없는 팬티”가 어떻다고도 얘기들 한다.

띠기둥이 초과하중을 받았을 때 파괴되는 모양은 거의가 그림2와 같다.

모든 재료는 압축력을 받을 때 그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게 된다. (그림3참조)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일은 길이가 줄어드는 대신 옆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재료마다 그 비율이 다른데 우리는 그 비율을 Poisson's Ratio (프와송비)라고 배웠다. 콘크리트의 Poisson's Ratio는 약 1/6이며, 이는 길이가 6cm줄어들기 위하여($\Delta L = 6\text{cm}$)폭이 1cm 늘어난다는 뜻이다. ($\Delta b = 1\text{cm}$)

모든 구조부재는 힘겨운 하중을 받았을 때 변형을 일으키면서 파괴까지로 이어진다. 만약 하중을 받았는데도 변형이 덜 생기게 하려면 단면을 크게 하거나 다른 강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 띠철근이다. 즉, 콘크리트 기둥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띠철근으로 기둥을 묶어 폭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면 길이도 줄지 못하게 되더라는 경험을 적용한 것이다.

이 원리는 비단 구조재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예컨대 김일성이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 방법도 그것인데, 외부와는 철통같이 차단하여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방지하면 웬만큼 눌러대도 버지지 않더라는 40년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물이나 공기일지라도 주사기같은 Piston에 몰아넣어 외부로의 탈출을 막아 놓으면 큰 힘으로 눌러도 잘 견뎌낸다. 자동차 타이어, 고무봉선, 자동차엔진, 수압 또는 유압 Jack, 이 모든 것도 같은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누르는 힘이 클수록 주위로 터져나가려는 힘도 커지게 되는데 만약 어느 한 부위라도 약하면 그 곳으로 뿔어 나가는 내용물은 그야말로 “분수”같이 격렬해진다.

가느다란 주사 바늘로도 주사액이 분출하는 것처럼……

띠기둥에서 주근의 굵기나 갯수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기둥 축력(압력)이 크다는 것을 뜻하며 다시 말하면 옆으로 밀어내려는 압력이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띠철근을 배근하는 요령을 표준화한 것인데, 예컨대 띠철근이 간격은? 굵기는? 각도는? 정착방법은? 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띠기둥에서 띠철근이 없다는 것은 마치 논바닥의 벼단을 묶은 새끼줄을 끊어 버리거나 빗자루를 묶은 철사를 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띠철근은 간격이 좁을수록, 굵기는 굵을수록, 각도는 적을수록 효과적이지만 그 또한 돈드는 일이므로 최소한 필요한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띠철근이 경제적 효율적이기 위하여는 기둥 단면이 원형일 때가 좋다. 더 좋게 하려면 원형단면 기둥의 띠철근을 나선형으로 연속배근하여 이음이나 갈구를 없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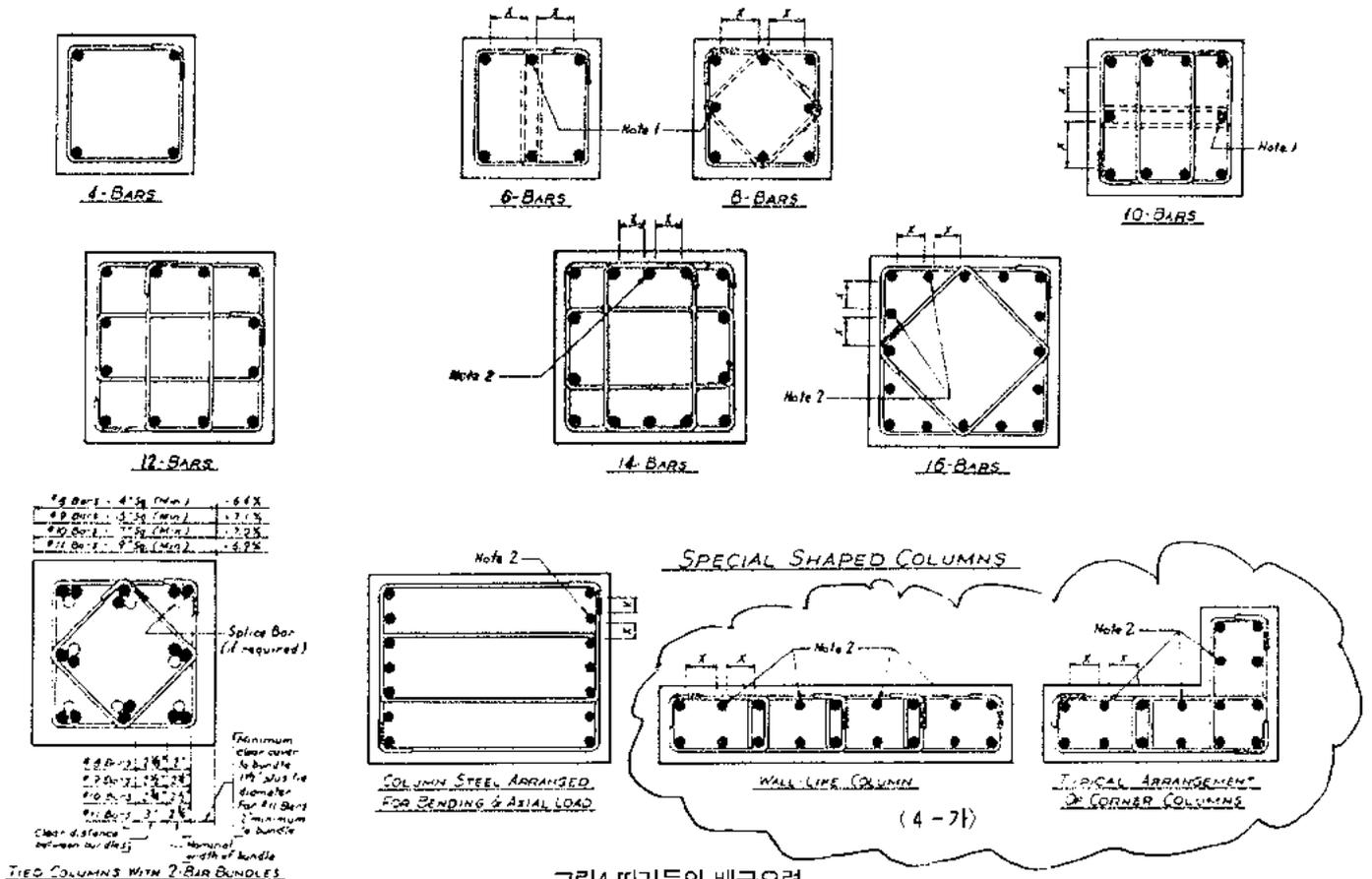


그림4 띠기둥의 배근요령

것이 이른바 나선기둥(Spiral Column)인데 시공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을 따름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 나선형 띠철근을 더 강화하여 아예 원형강관으로 대체하면 더 엄청난 기둥내력을 얻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강관과 콘크리트화를 분리시켜 누를 때 자유로 변형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는 시공상의 까다로움이 있다.(보와 슬래브 주위에서의 문제와 강관 자체의 내화피복 등의 문제점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 규준은 기둥배근 요령중에서 띠철근 특히 보조띠철근 규준이 별로 엄격하지 않다. 우리나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둥에 일반적으로 철근을 배근되도록 설계하는 습성 때문에 띠철근의 역할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기둥 단면이 견디기 어려울만큼 커지면 철골조로 설계하면 되고 실제로 일반 사무실 건물에서 30여 층을 넘는 것이면 철골조로 설계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바람직하다는 "유행"때문이기도 하다. 이 유행은 다분히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며 초창기 우리 규준이 일본 것을 번역 사용했던 것에서 정착화한 부작용이다.

또한 특별히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큰 축력에 견디도록 해야 할 때는 띠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제 ACI에서 규정하는 Tied Column의 배근 요령을 복사해 보겠다.(그림4)

3. 철근콘크리트 내력벽과 띠기둥과의 차이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내력벽과 띠기둥과의 차이점은 다만 띠철근의 유무이다. 철근콘크리트 내력벽도 띠기둥처럼 배근하면 모양만 벽일 뿐 구조역학개념상으로는 띠기둥으로 취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위 그림(4-가)가 그것이다. 이듬하여 Wall Like Column이다. 그런데 문제는 벽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시공상 띠철근을 배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다 띠철근까지 배근하나 보면 콘크리트가 들어갈 공간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철근을 구부리고 정착시킬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부작용 발생을 감안하여 일찌기

띠기둥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기둥의 최소 단면두께를 20cm로 정한 것이 우리 규준이다.

다만 ACI 규준에는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워법 구조설계자들을 양산하게 된 동기이다. 그런데 규준이나 법조문을 해석할 때는 그 제정상 기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A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에 잘못이 있었다. 라는 건설업자의 증언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라는 글에서 처음 한 문장만 읽으면 A 건축사는 엉터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규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언어문화가 다른 외국 규준이나 법규를 적용할 때는 더구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다. ACI 318-89의 14. 3.6항에 보면 "벽체의 수직철근은 그 철근량이 벽체 단면적의 0.01배 이하이거나, 또는 압축철근으로 산정된 것이 아닐 때는 수평띠 철근으로 묶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두께 15cm의 벽체에서 $0.01 \times 15 \times 100 = 15\text{cm}^2 \rightarrow D 13-170@(\text{복배근})$ 보다 철근량이 많거나 수직철근이 벽체의 압축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강이라면 당연히 수평띠 철근으로 묶어야 한다는 뜻이다. 띠철근으로 묶는다는 것은 벽체를 기둥으로 취급하여 계산하라는 뜻이다.

두께 15cm벽체에 D 16-100또는 D 19-100을 복배근으로 한다면 철근비가 0.0265 및 0.0383로 모두 0.01의 2.65배와 3.83배의 보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기둥처럼 배근하려면 수직방향으로는 매 15cm 간격으로 띠철근이 있어야 하며 수평방향으로는 매 20cm마다(수직철근 하나걸러 하나씩) 수직철근을 잡아주어야 한다.

참고로 최근 건설부에서 용역을 받아 1988년 대한건축학회에서 발간한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 및 해설 P. 53에도 기둥의 최소두께는 20cm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시공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층아파트의 15cm두께의 압축 내력벽 배근중에서 D 13-170@보다 더 보강된 것들은 채래식 구조계산 규준 뿐만 아니라

최근 제정된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규준 및 ACI 규준 모두에 위배되는 불법설계임이 증명된 셈이다. 왜냐하면 두께 15cm 내력벽을 띠기둥설계 규준에 맞도록 설계된 도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4. 구조도 유행에 따라야 하는가?

필자가 자주 쓰는 말 중 하나는 "와우아파트도 무너지기 하루전까지는 안전했다."이다. 얼얼불은 한강을 어느 한 사람이 건너가면 용기를 얻어 뒤따라가게 된다. 만약 100명이 무사히 건너갔다면 눈 감고도 건너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다.

분당, 일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파트들이 규준을 무시하고 설계되고 있으며 설계심사위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못하는 일부 기술사들은 구닥다리로 취급받아 아파트구조설계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에게 시비를 걸어온 건축주측 기술자에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필자도 차체에 걸터한 자세로 배워서 날뛴 구조물의 아파트 설계에 임해보려는 각오에서였다. 그러나 구조계산서와 도면이 위법임은 물론, 시방서는 아예 마련되지도 않았다는 이이없는 답변이다.

콘크리트는 잘 양생할 경우 초기 얼마동안은 오히려 강도가 증가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15cm 벽체같이 얇은 단면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양생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면적에 비하여 표면 피복 비율이 커서 중성화 속도가 빠르므로 그 수명이 Mass Concrete인 경우보다 짧은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요즈음 들어서 크게 걱정되는 것은 골재 수급난으로 인한 마나 모래의 공공연한 사용과 중공산 저질 시멘트의 유통 등으로 콘크리트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이 젊은 건축사들은 앞으로 남을 날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자기의 작품 속에 담긴 사람들이, 재해를 입는 것을 볼 확률이 많음을 생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호소하는 마이다.

불가리아의 건축물들

Town & Architecture
in Bulgaria



1



2



3

지난해 10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불가리아(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의 수도 소피아(Sofia)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건축아카데미 학술위원회(IAA AC: International Academy of Architecture, Academic Council)주최 1990년 정기가을 워크숍이 산토키리코(Santo Kiriko Creativity Center)에서 열렸었다. 소피아 南西部인 "고르나바냐 2-에코폴리스 주거단지(GornaBanya 2-Ecopolis Housing Estate)" 마스터플랜설계작업에 외국인 건축가 40여명이 20여 국가에서 초대되어 3주이상 그룹작업을 했다. 新市街地설계의 주제는 '人間을 위해 生態學的으로 정말 깨끗한 단지'였다. 대상인구는 약 1만5천명 정도이며, 인구1인당 기준면적 약 30.5㎡이고 한 주호(1住戶)당 3.5인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복합휴양시설, 복합스포츠시설 및 전문스포츠시설들과 녹지공간 그리고 개인소유 단독 주택지 및 市소유 3~4층 공동주택지들의 설계를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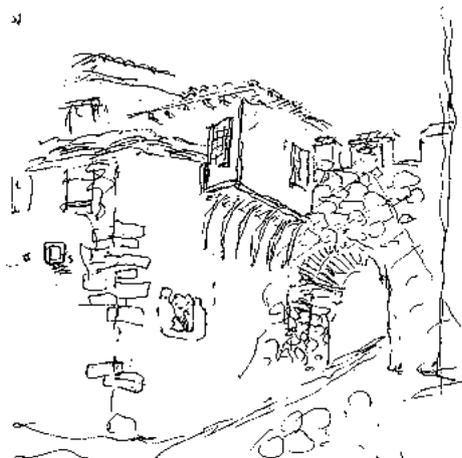
참가자들은 불가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소련), 쿠바,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이집트, 알제리, 벨지크, 그리스, 덴마크, 키에프(소련), 키르키지아(소련), 시리아, 중국, 한국, 독일, 터키에서 온 41명으로 남자가 31명

여자가 10명이었다. 한국에서는 혼자갔었다. 워크숍 진행은 계획대지답사 및 환경파티를 시작으로 설계에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의 강의, 그룹설계작업-중간발표 및 최종발표, 그리고 전통마을 및 주요도시답사로 이루어졌고 최종발표는 불가리아 건축가, 보도진, T.V 및 소피아市 관계자들 앞에서 했으며 마지막 행사로 환송회 및 디플로마 수여식이 있었다. 강의내용 및 설계작업 그리고 국제건축아카데미(IAA)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 숙소이자 스튜디오였던 산토키리코 및 답사때 방문했던 불가리아 도시들을 중심으로 건축물들을 소개한다.

1. 산토키리코 (Santo Kiriko Creativity Center)

국제건축아카데미(IAA)의 숙소이자 작업실이 있는 '산토키리코

趙仁淑/다리건축
by Cho, In-S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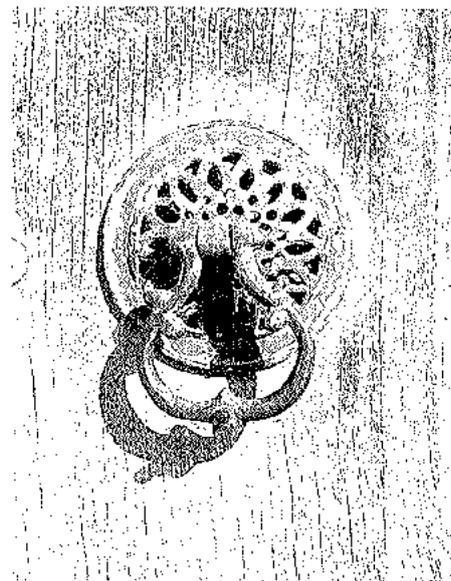


Private house.
Plov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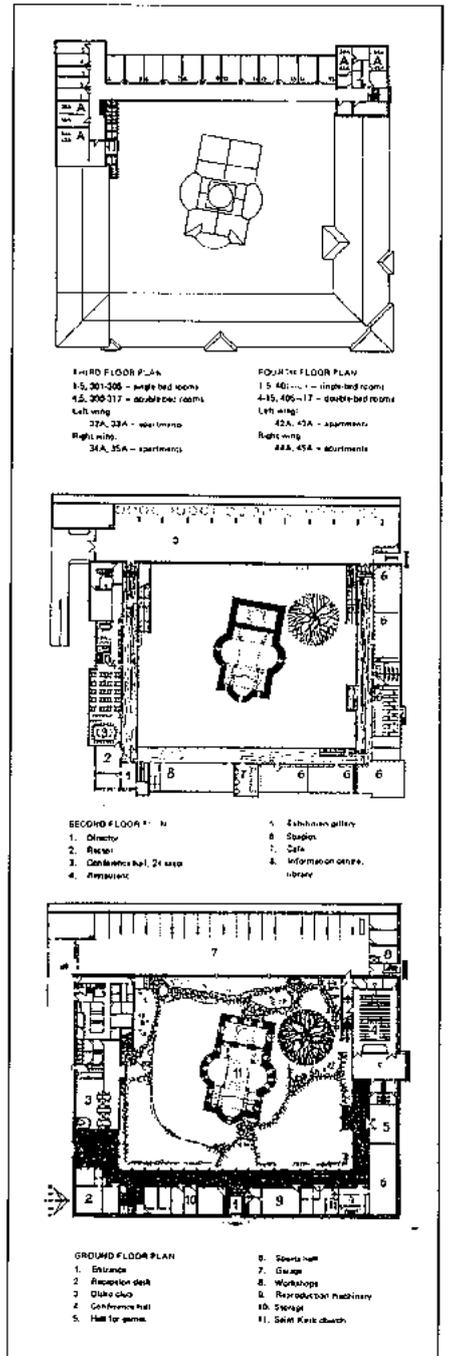
1976 '90 1976 '90 1976 '90

크리에이티브센터'는 아세노브그라드(Asenovgrad)라는 마을 근처 산 꼭대기의 옛수도원 안에 있다. 산토키리코 수도원은 8세기 초에 세워졌는데 1606년 및 1870년 두 차례나 불에 타버렸고, 1899년 불가리아 애국지사들에 의해 새로이 지어졌다. 전체배치는 'ㄷ'형면이고 그 안(內庭)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교회가 있다. 교회는 무척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며 문고리 등의 디자인은 우리 것과 무척 비슷했다. 이 수도원은 최근 건축가 류보미르 신코프(Lyubomir Shinkov)와 리스토 신코프(Hristo Shinkov)에 의해 복원되어 1983년 국제건축비에날레(International Biennale of Architecture)에서 AIA 상을 받은 바 있다. UIA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1985~88) 현재 IAA의 AC 위원장으로 있는 조르지 스토일로브 교수(Prof. Georgi Stoilov)가 이곳에서 취임연설을 했으며 그후 국제건축아카데미 학술위원회(IAA AC) 워크숍장으로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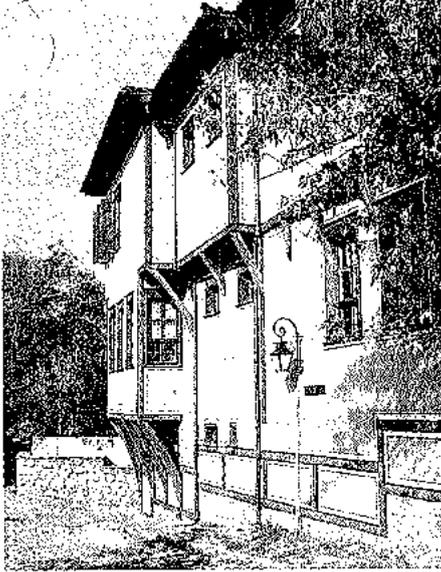
시설로는 한 방에 6~9명이 그룹작업할 수 있는 설계실이 6실, 책은 없지만 도서관이 하나, 2백석규모의 회의장, 1천6백㎡ 정도의 전시실이 있고 침실로는 설계대이블이 있는 2인용 침실이 24 Studio, 1인용실이 10 Studio, 그리고 아파트타입이 8개 있다. 한편 디럭스·레스토랑 및 디스코클럽, 카페·바가 있고 환전소 및 면세품 판매장



등의 지원시설들이 있다. 이곳은 주로 유엔등 국가가 접대하는 외국인 전용숙소로 쓰이고 레스토랑 및 디스코텍은 비교적 고위층이나 부유층들이 자동차를 몰고와서 주말을 즐기고 가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산 속이라 공기가 무척 맑았다. 음식은 불편했지만 생필품 부족 및 식량난 가운데 그들로서는 최대의 대접을 하는 것이었고, 그 곳에서 지내는 동안은 몰랐었는데 전통건축답사때 호텔에 묵어보고 나서야 산토키리코가 불가리아 내에서 최고 좋은 숙소라는 것을 알았다.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세시간에 한시간씩 소등을 했는데



- ① 산토키리코
- ② 산토키리코 교회
- ③ 4층 회랑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 북도에는 깊숙히 해가 든다.
- ④ 스케치
- ⑤ 교회의 문 손잡이
- 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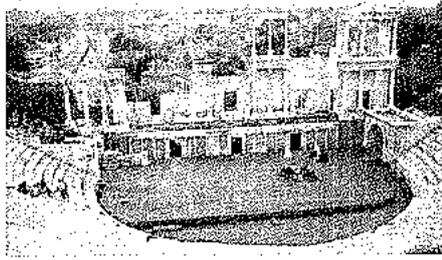
④



⑦



⑤



⑧



⑩



⑨

- ④ 플로브디브 중심가 골장기면 전통 마을 및 유적지로 통한다.
- ⑤ 대표적인 지택
- ⑥ 담장과 기와
- ⑦ 기와 얹은 담장과 대문
- ⑧ 로마시대 극장 유적지
- ⑩ 교회벽에 붙어있는 헤시계

이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녁이면 한시간씩 유일하게 소등에서 예외인 카페·바에서 지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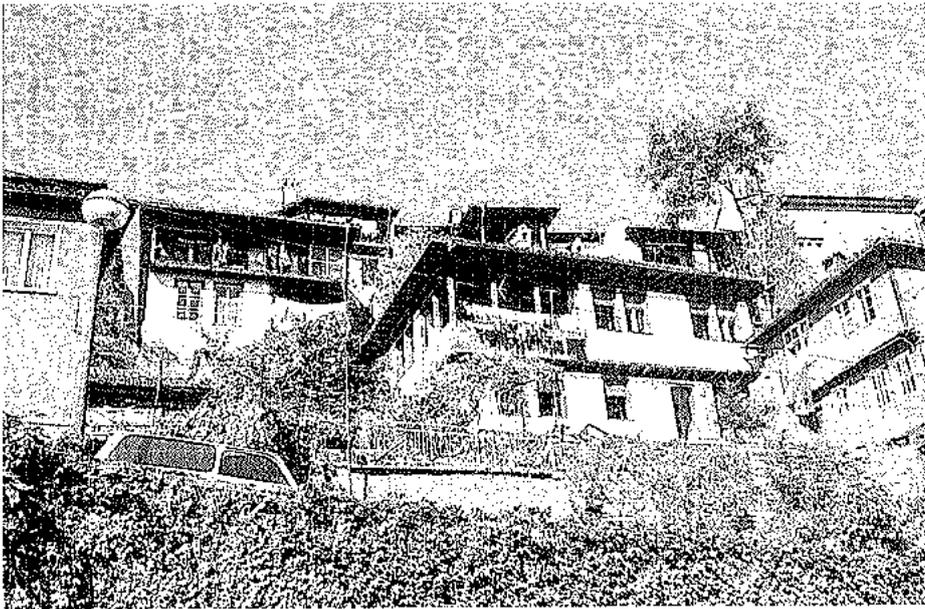
2. 플로브디브 (PLOVDIV)

불가리아 내 5대도시중의 하나이자 산토카리코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 단체로 두 번이나 답사를 했다. 거리거리에 발굴현장이 있었고 로마유적지 및 대표적인 전통마을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과 그들을 겨냥한 암달러상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로마시대 극장이 있었는데 아직도 때로는 공연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대리석의 스타디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플로브디브의 전통마을은 마을의 스케일에서 오는 空間感이 한국의 마을과 비슷하였다. 플로브디브의 주택들은 하부는 돌로 축대를 쌓고 상부는 목조로 하여 지붕은 처마를 내어 기와를 덮었는데 목조결구나

담장의 처리라든가 기와덮는 수법이 한국건축이나 중국건축과 일맥상통하였으며 바닥은 돌을 깔았고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주택들이 이층 이상은 나무버팀대로 까치발을 내어 돌출시켜서 내부공간을 넓게 쓰도록 하였다. 이것을 전통의 모티브로 오늘날의 건축에도 적용하여 심지어 시내 아파트의 상부층을 돌출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중심가 상점들에 재미있는 표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입구에 각목을 대각선으로 걸쳐놓아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문을 닫으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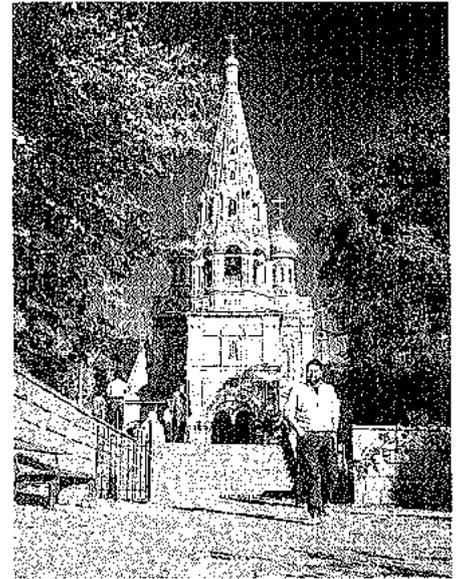
12



13



14



15

우리나라 제주도 성읍마을에 가면 작대기로 '주인이 있고 없음, 들어가도 좋음'등을 표시하는 것과 흡사했다.

한편 옛날 저택들은 박물관이나 기념품가게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정원이 넓은 집은 전시상이나 레스토랑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3. 타르노보 (Veilko Tumovo, old Tumovgr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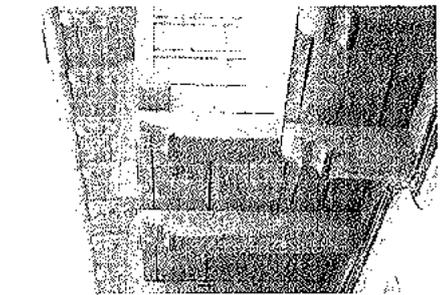
그릅설제작업 중간쯤에 기본안을 만들어 발표를 하고나서 전원이 2박3일 주요도시 및 전통민속마을 답사에 나서게 되었는데 처음 가야할 곳이 타르노보였다.

산토·키리코에서 너댓시간 걸리는 모양이었다. 도중에 하늘에 무엇인가 황금덩이가 번쩍번쩍하기에 놀랐으나 가까이 가서 보니 러시아정교회 교회인 "칩카(deme Chipka)"였다. 건축가 토미치코(Architet A.I. Tomichko)의 작품으로 1896년에서

1902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타르노보에 도착은 했으나 너무 늦어 파노라마 夜景만 보고 이튿날 제대로 답사를 했다.

타르노보는 중세도시로 자연환경에 따라 저절로 城이 된 곳이다. 1187년 수도가 되어 안트라 강(Yantra River)위 언덕을 따라 성벽을 쌓고, 궁전을 짓고 교회 및 수도원을 세우고 있다. 207년 동안 수도였고 그 두 세기(12 C ~14 C)동안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불가리아 사람들의 정신생활의 터전이었다. 그후 문학·건축·그림 및 응용미술 등이 급속히 성장했고 18 C, 19 C 에는 National Revival 이 일어났었다. 1966년에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지정된 후 많은 발굴작업이 있었고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주거지는 대체로 구릉에 자리하고 있고 주택의 형태는 폴로브디브의 주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층부가 돌출되어 있고 한국건축의 겹처마와 비슷한 구조로 복재부재가 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16

- 12 타르노브의 구릉위에 있는 주거지
- 13 주거지 내에 있는 집의 겹처마 처마가 재밌었다.
- 15 사모보딘 성집가
- 16 Dorne Chipka
- 17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겹처마



19



20



21

- 19 20 민속촌 에타라
- 21 목걸구 디테일
- 22 덧문을 들어올려 매달아 놓은 모습
- 23 가브로보 한 주택의 대문



18

4. 가브로보 (Gabrovo) 와 에타라 (Etara)

가브로보는 14세기경 만들어진 도시로 15세기경에는 아주 활발했던 상업중심지였다. 스타라산백(Stara) 중간 부분에서 북쪽에 있으므로 산악기후가 특색이어서 이 지역은 특히 공기가 맑고 생태학적으로 정말 깨끗한 마을들이 있다.

타르노보를 떠나 갈 길을 재촉하여 가브로보로 향하는 도중에 '드리아노브 수도원(Drjanovo Monastery)'에 잠시 들러 민속촌 에타라(Architectural and Ethnographic Complex Etara)로 갔다. 이곳에는 각종 공방들이 재현되어 옛모습을 하고 있었다. 건축물의 특징은 한국건축의 툇마루 또는 누마루와 비슷한 기능의 공간이 있었고 목조결구와 지붕구조가 비슷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문짝(덧문)을 열어 들어올려 처마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다. '에타라'는 주변환경이 비교적 아름다운 곳이었고 처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

다음 답사지는 불가리에서 가장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입구에서부터 차량진입이 금지되었고 모든 공해요소는 배제되었는데 공기가 정말 맑았고 무공해 과일이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녔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즉 마을 전체가



22

이 마을의 대표적인 거리는 사모보딘 상점가(The Samovodene Market Street)인데 수 세기동안 옛 전통을 지켜 오면서 예술성을 겸비한 상업적 성격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도자기, 구리제품, 木器들의 수공예품과 그림·조각들이 돋보였고 이 상점거리가 창출해내는 민속적, 건축적 분위기가말로 건축전통의 새로운 탄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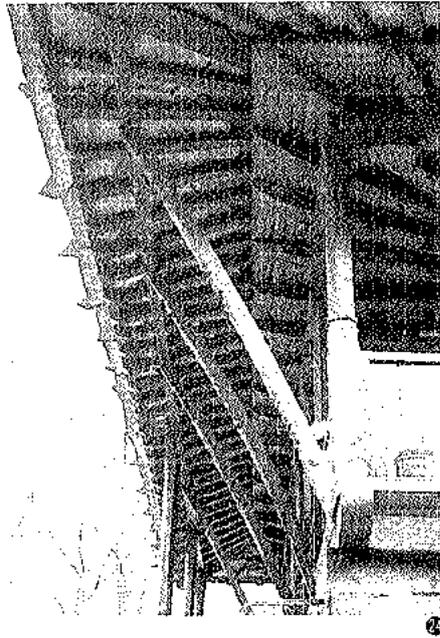


박물관이었다. 가브로브에 있는 발칸호텔에서 하루 묵고 산토 키리코로 향하던 중 예정에 없었던 전통마을을 한군데 더 들렀는데 미리 약속이 안 되어 있어서 모두 잠겨서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마을구경만 했다. 주변담장보다 높은 대문과 그 대문을 덮는 기와 지붕등 세세한 부분은 달라도 이상하리만치 한국건축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차이라면 기와없는 바탕이 우리보다 가볍다는 점이다.

소피아(Sofia)

산토키리코에서 공식일정이 끝나자 모두 首都 소피아로 나와서 주최측에서 마련해 준 호텔에 머물면서 각자의 비행기 시각에 맞추어 차가 올 때까지 하루·이틀 소피아 시내를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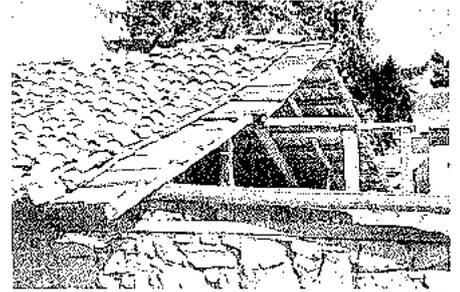
소피아(Sofia)란 지혜의 상징이다. 발칸반도 중앙부에 있으며 비토사산(Mt. Vitosha)과 류울린산(Mt. Lyulin) 중턱에, 해발고도 5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시에는 약 250종류의 고고학적, 역사적, 건축적 유물들이 있다. 특히 4세기 것인 聖 조르지성당(St. George Rotunda)은 이 시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자 잘 보존되어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서 5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서 해놓은 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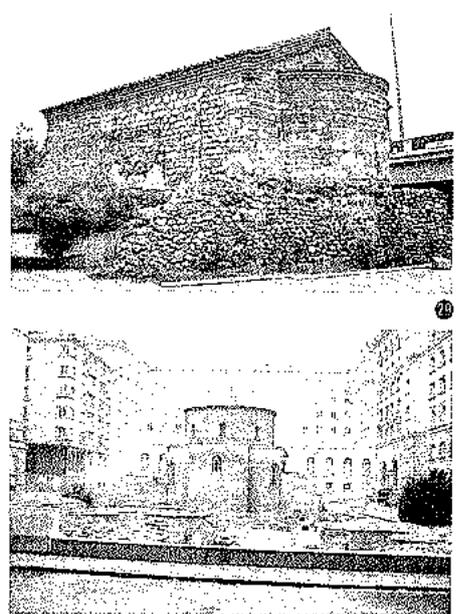
성당은 쇠라톤 소피아 호텔 정원에 있으며 軍部 건물과 마주하고 있다.

알렉산더 네브스키 광장(Alexander Nevsky Square)에 있는 聖소피아사원은 초기기독교 바실리카 양식으로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때인 6세기경 만들어졌고 이 사원 때문에 이 시를 소피아라 이름붙였다.

그 밖에도 많은 사원들과 혁명기념 건축물들이 있고 박물관 및 컨벤션 센터들도 많았다. 호텔중에 '비토샤뉴오파니(Hotel



- ㉓ 가브로브 상층부 돌출
- ㉔ 에타리의 누마투와 처마
- ㉕ 널판지 위에 기와를 그냥 얹은 모습(가브로브)
- ㉖ 가브로브 마을 입구
- ㉗ 구멍으로 들여다본 가브로브 시내의 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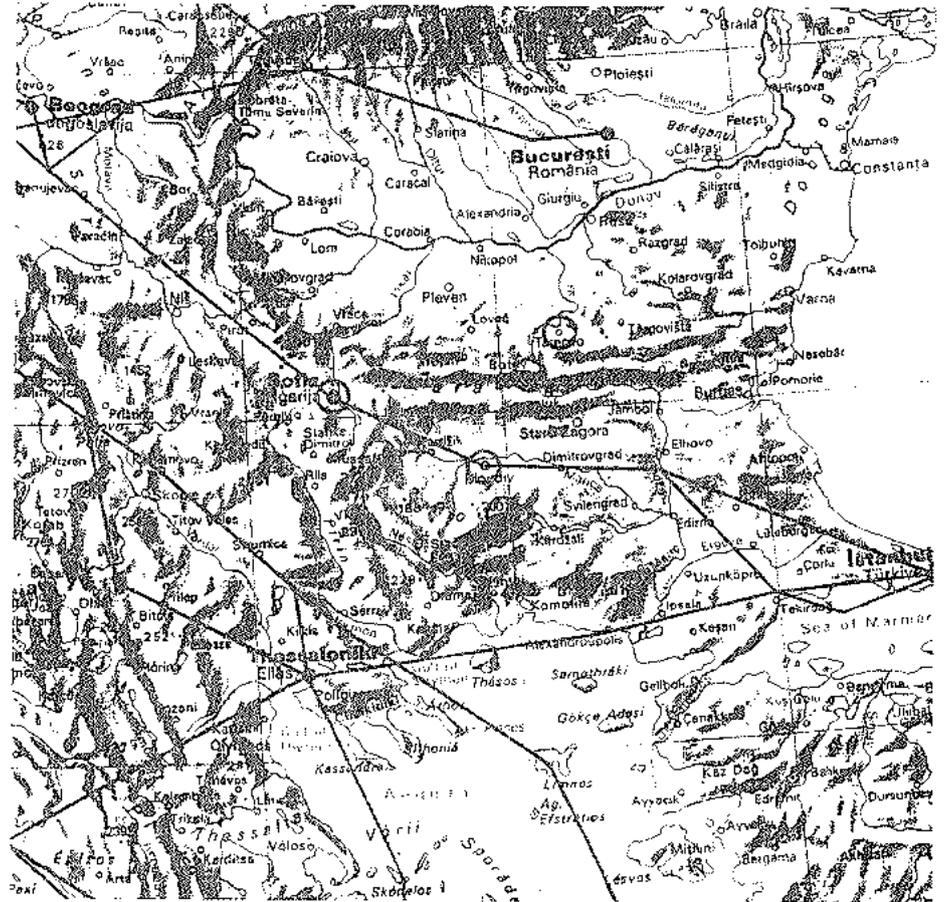
Vitosha the New Otani)'는
겐조·당께에(Tange Kenzo, 日本)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했다.

과거에 몽골리인들이 한반도 뿐 아니라
발칸반도에까지 진출하여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입증이나 하듯이 건축물 양식의 상당부분이
비슷했고 심지어 먹는 음식중에 쌀밥과
발효야채(김치와 아주 가까운 것)가 있었다.

실제일정이 바빠졌고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정해진 곳 밖에는 못 가보았지만
본디 자연환경은 참 좋은 곳인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땅을 돌보지 않아 국토가 비옥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軍部(공산당정권)가
실각하자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생필품
구하기가 어렵고 자동차용 연료도 한 번에
20ℓ 밖에 안주는 배급제여서 곳곳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곳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고위층들은
너무너무 잘살고 일반인들은 살기가
어려웠고 종이 등의 소모품이 더욱 귀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외국으로 나갈 궁리만
하며 어학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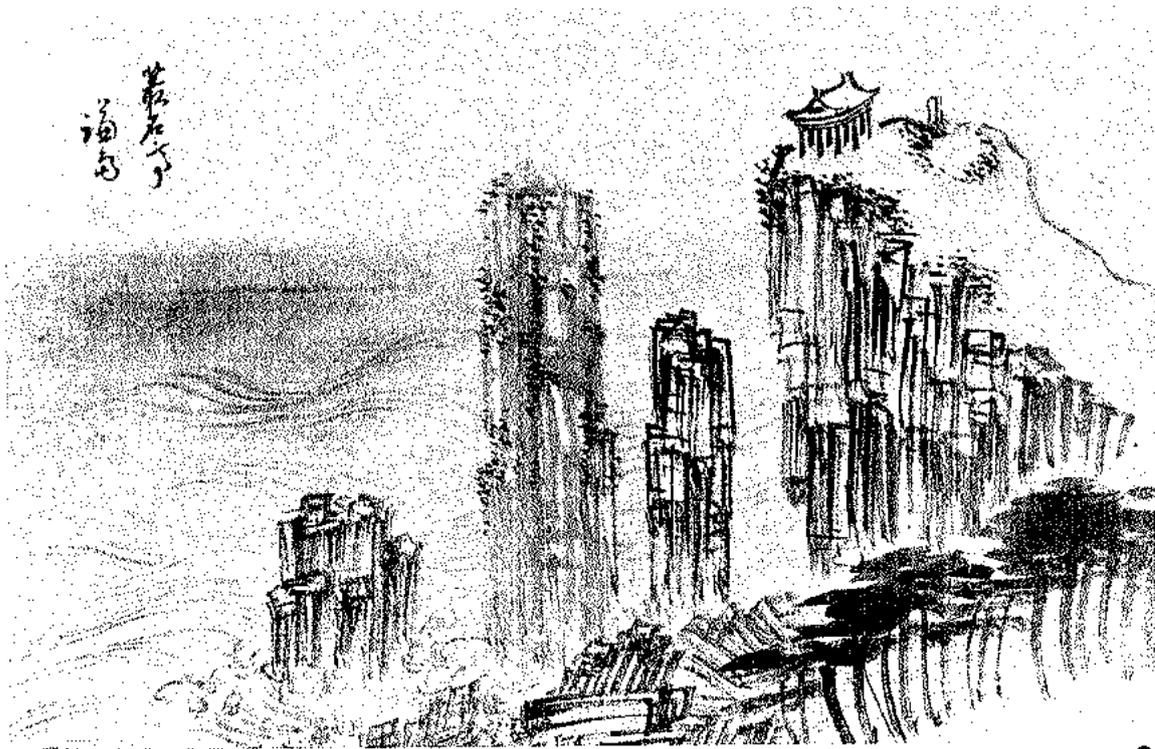
1) 위키숍 내용 및 IAA 에 대해서는 “건축가”誌
103호에 소개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 ① 소피아내의 터어키식 교회
- ② 쉴 조르지 성당
- ③ 聖 Peta of the Saddlers Church
- ④ 불가리아 지도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1

7. 樓亭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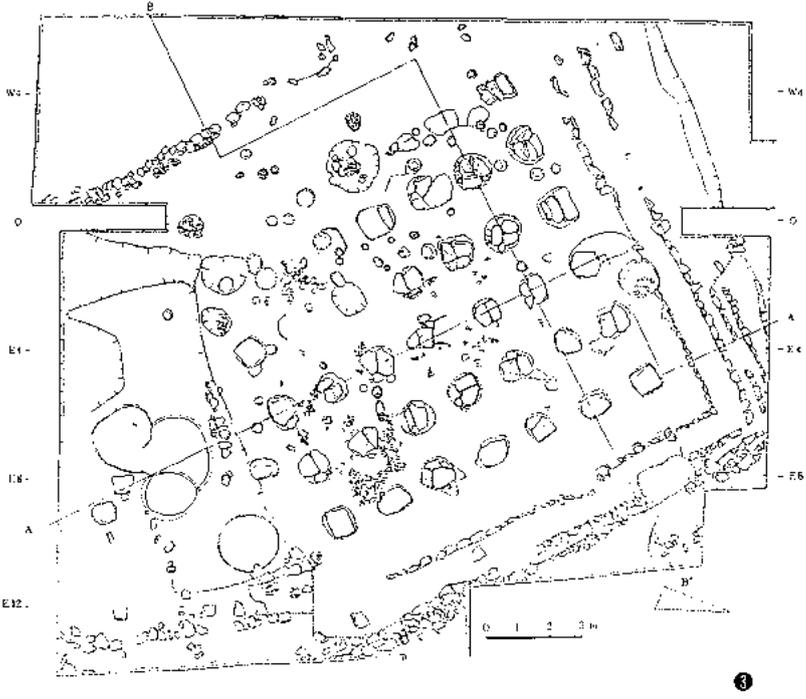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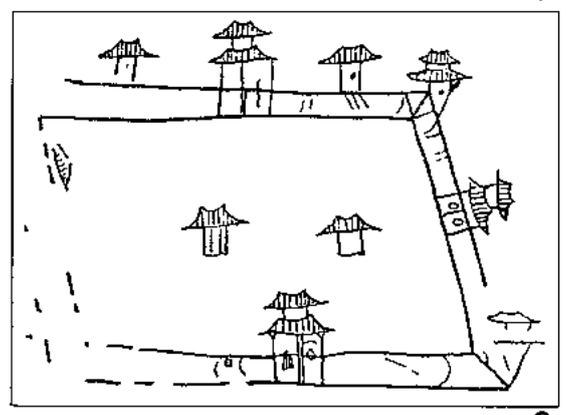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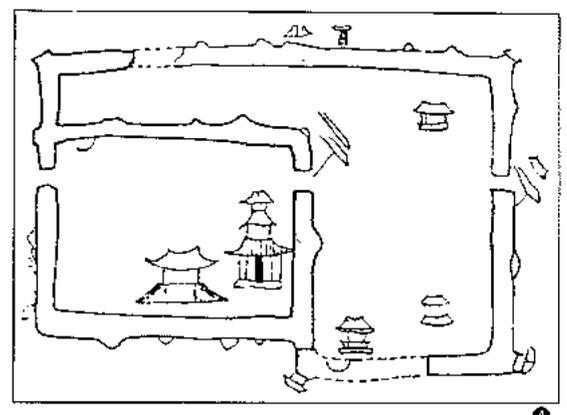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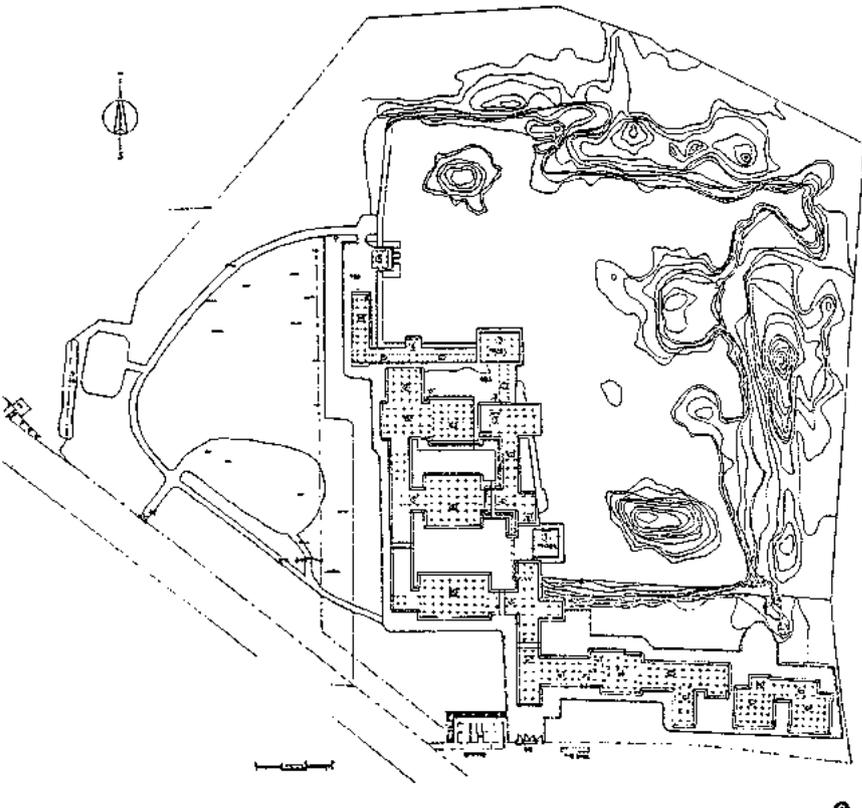
樓閣과 亭子를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臺·射·閣·軒까지 포함하여 일컫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樓와 亭의 뜻이 엄밀히 보아 다르듯이 이들의 명칭 또한 꼭 같지는 않다. 樓는 다락을 의미하므로 樓閣이라 함은 높은 다락이나 언덕 혹은 臺위에 세운 건물을 말하며 정자는 반드시 높게만 놓이지는 않고 경관이 좋은 곳을 택하여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살림의 기능을 갖는 건물이 아니고 園林의 공간 또는 休息공간으로서 자연을 즐기며 抒情의 感을 돋구어 詩를 읊거나 놀이와 風流를 즐기는 곳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러한 목적 이외에 기능을 갖는 예도 있다. 즉 학문을 가르치는 精舍의 기능이나 또는 농사를 위하여 들에 세워지는 정자의 기능도 있다.

1. 由來

중국 「사기」에는 신선들이 樓에서 살기를

좋아하였으므로 황제는 五城十二樓를 짓고 神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여 樓의 역사는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樓閣의 위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명당건물이나 궁궐에 高樓가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사찰의 목탑 역시 이 高樓를 활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누정건축의 시초는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국유사」기록을 보면 신라 炤知王 10년(488년)왕이 天泉亭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 정자가 書出池와 관련하여 전설이 쓰여진 것을 보면 못가에 있었던 정자임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사기」에 보면 東城王 22년(500년)에 宮東쪽에 臨流閣을 세웠는데 그 높이가 5丈(50尺)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임류각址는 근년에 公山城 발굴조사에서 밝혀져 일부 초석을 놓았던 礎盤石이 노출되었는데 이들은 2~3매로 맞추어 놓은 자연반석이었고 주칸은 한면이 6칸이고 다른 한면은 5칸을 이루는 듯하였지만 正·側面의 기단 길이가 같았다. 이들은 초석의 배열로 보아 밑의 층은 벽이 없이 기둥을 훑훑히 세워 2층루를 이루었던 것으로

張慶浩/문학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 ① 謙齋 정신 작 총석정도
- ② 안압지 배치도
- ③ 臨流閣址 발굴평면도
- ④ 遼東城塚 성곽도
- ⑤ 樂水里古墳 성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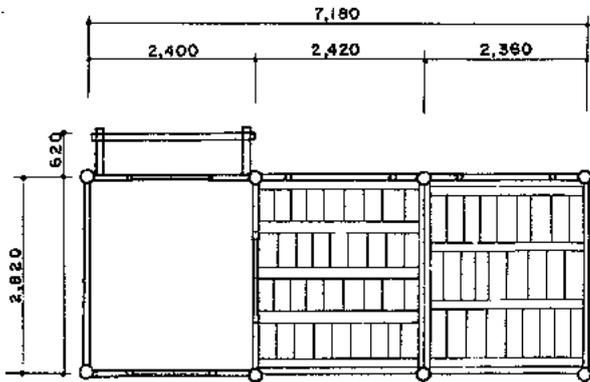
- ⑥ 소쇄원 제철당 평면도
- ⑦ 광풍각 평면도
- ⑧ 제철당 전경
- ⑨ 소쇄원圖
- ⑩ 광풍각 전경

추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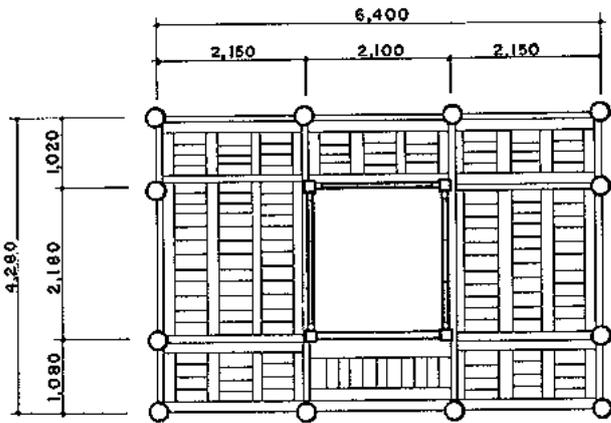
또 「삼국사기」권 27 백제武王條에 보면 634년에 궁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20여리나 끌어들었으며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속에 섬을 만들어서 方丈仙山에 비기었다. 또 636년에는 望海樓에서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또 655년에 의자왕은 태자궁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궁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고 하였다.

한편 679년 신라 문무왕대에 창건되고 그후 여러 번 증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雁鴨池의 臨海殿과 平議殿 등은 인공적인 연지에 향연을 베풀었던 통일신라시대 누정건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76년부터 발굴조사한 바 특이한 형식의 아름다운 연못을 꾸미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섬과 주위에 造山과 修石등이 펼쳐지며 서남쪽 호안에 배치된 누정과 전각 등 글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이였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누정건축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세워진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이보다도 누각의 건물은 궁궐이나 성곽이 생기면서 이미 세워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벽화고분에 표현된 성곽도에서 閣樓나 門樓를 볼 수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실제로 삼국시대 성곽터에서 망루나 각루址를 볼 수가 있다.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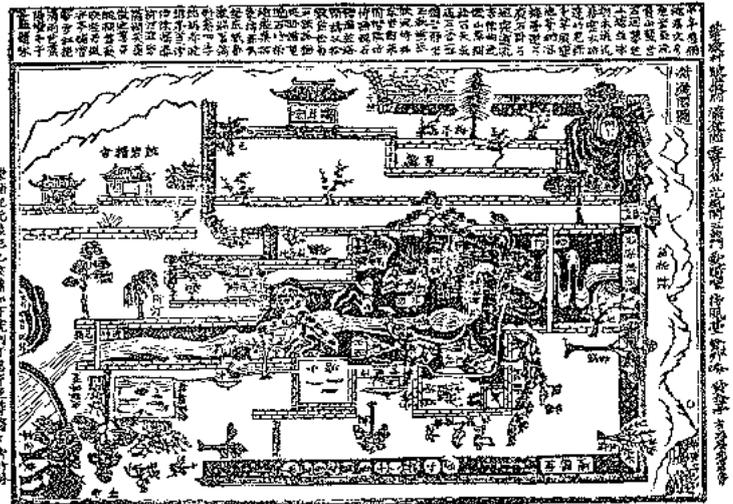
2. 위치의 특징

누정은 물론 앞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경관이 좋은 위치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전망이 좋고 경관이 좋은 곳은 산이나 냇가·계곡·호수·폭포·바닷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 연결되는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옛날 전통화가들은 산수화나 풍경화를 그리는데 樓亭圖를 많이 그려왔다. 예를 들어 謙齋 鄭澈은 서울의 洗劍亭이나 鴨鵝亭을 비롯하여 많은 누정도를 그리었고 林得明 李維新등 조선시대 많은 畫家들이 산수화에 樓亭圖를 즐겨 그린 것 같다.

화가들이 그린 누정도는 실제 존재하는 누정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 많아서 그 위치와 건물형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중 특징적인 것의 예를 들면 전술한 서울의 세검정은 신양동 계곡연안 자연암 위에 누각형으로 높이 놓인 건물로 평면이 '丁'자형이고 그 주위에는 담장을 두르고 출입문을 두었다. 원래 인조반정때 이곳에서 칼을 갈았다는 유래에서 붙인 이름이다. 지금의 건물은 1977년에 복원한 것이다. 현재는 남아 있지않은 압구정은 정자라 하여도 정면이 7칸이나 되는 대단히 큰 건물이었다. 강원도 동해안 海金剛의 절경 위에 있는 叢石亭은 기암절벽을 한 자연석 위에 놓인 정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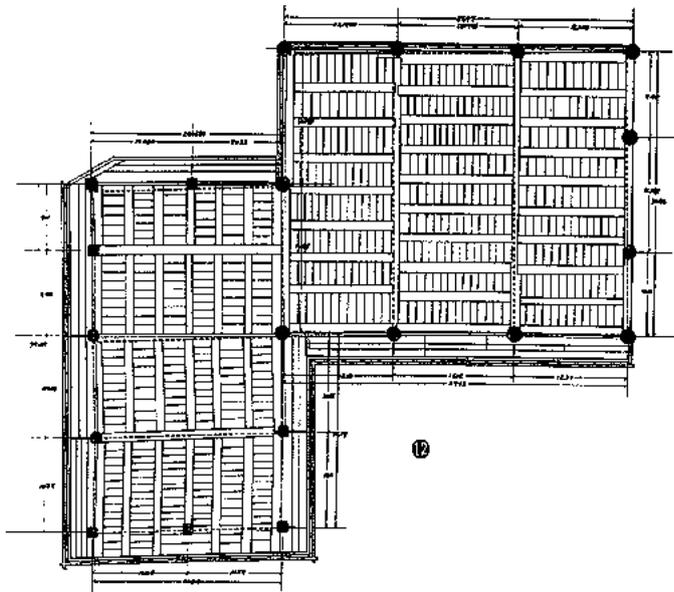
8



9



10



이 정자는 우리나라의 동해안의 명승지인 關東八景의 하나로서 이외에 강릉시에 있는 鏡浦臺, 양양의 의상대, 삼척의 竹西樓, 고성의 淸澗亭, 三日浦, 울진 月松亭, 望洋亭 등이 있다. 한편 關西지방에도 팔경이 있어 평안 남북도에 絶景地에 분포되었다. 이들을 소개하면 강계의 仁風樓, 의주의 統軍亭, 선천의 東林瀑, 안주 百祥樓, 평양 練光亭, 성천 降仙樓, 만포의 洗劍亭, 藥山東臺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북한에 있어 그 보존을 알 길이 없다.

누정은 이렇게 자연경관에 일부로서 놓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궁궐의 후원이나 造景으로서 꾸며지는 경우도 많다. 즉 예를 들면 조선 중종때 梁山甫가 경영하였던 담양의 瀟灑園에 있는 光風閣이나 齊月堂, 또 尹善道가 경영한 보진도의 洗然亭을 비롯한 曲水堂, 無憫堂, 洞天石室, 芙蓉洞 樹林 등이 있다. 또 궁궐의 후원으로서는 대표적으로는 창덕궁의 후원인 비원을 들 수 있고 경복궁의 경회루는 국가적 행사를 위한 특수한 누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원안에 있는 정자들은 그 건축이 기묘한 것들이 많아 주로 조경적인 차원에서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기능

첫째, 경관을 보며 휴식과 놀이를 하는 기능이다. 자연의 산수와 관련하여 이름한 누정이 많은 이와 같은 기능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관동·관서팔경에는 반드시 경관을 감상하고 즐기는 누정이 있었다.

둘째, 선비들이 詩壇을 이루고 풍류와 창작을 즐기는 곳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와 같이 누정에서 시를 지은 글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이중 張寧의 시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득히 물 급히 흐르는데 저 멀리 돌층계 평평하네, 산새는 울다 다시 멈추고, 강의 포구는 흐리다가 개는구나, 흥은 구름과 함께가고,情有 풀과 같이 나는 것이 兩親을 붓보니 다시금 神京을 생각한다...”

셋째, 학문을 수양하고 강학하는 精舍의 기능이다. 누정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은퇴한 후 유후처로 지내던 곳이 많다. 광해군때 吳裕立이 청원에 일송정과 止善亭을 짓고 그곳에 은거하면서 유생을 가르쳐 많은 문사를 배출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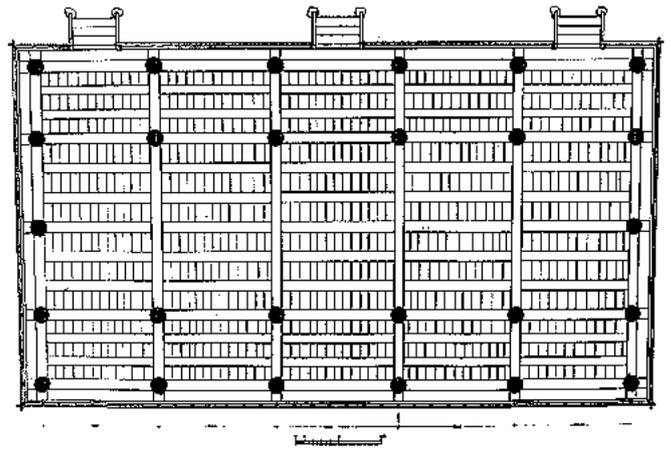
넷째, 宗會나 마을사람들의 洞會 또는 각종의 회의 장소로도 기능을 갖는다.

다섯째, 활을 쏘는 수련장으로서 기능을 가졌다. 옥동의 登龍亭, 삼척동의 雲龍亭, 사직동 大松亭, 누상동의 風囂亭, 필운동 登料亭은 모두 궁술 연습장으로 유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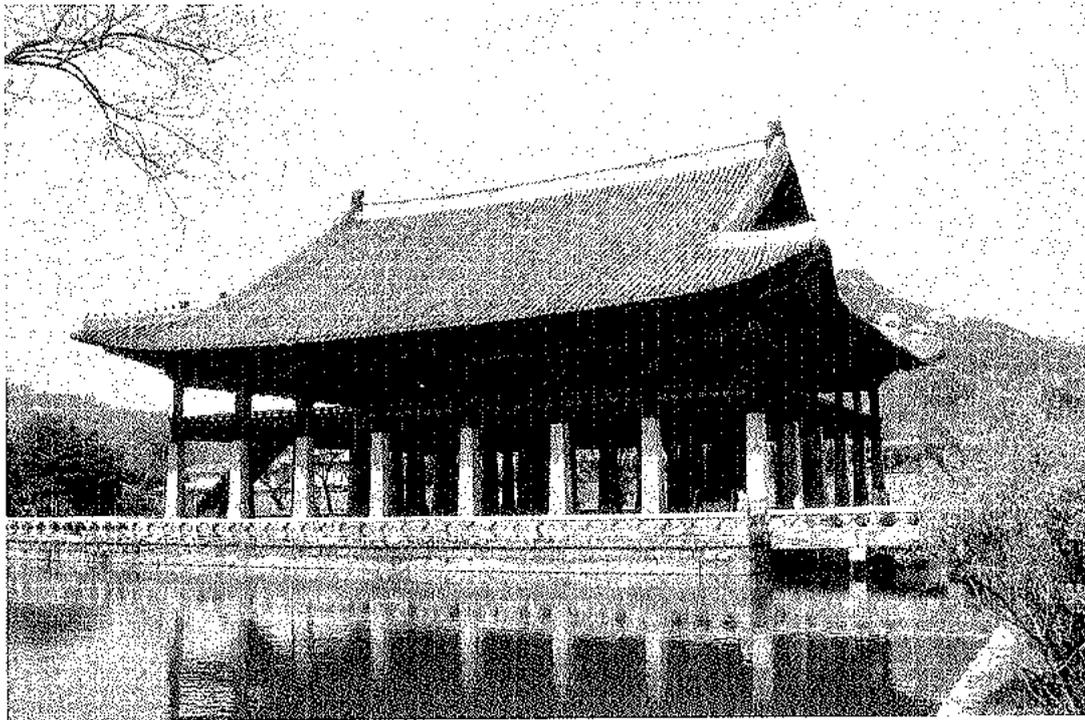
여섯째, 어떤 인물이나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적 기능도 있다. 이와같은 기능 이외에도 성안에 있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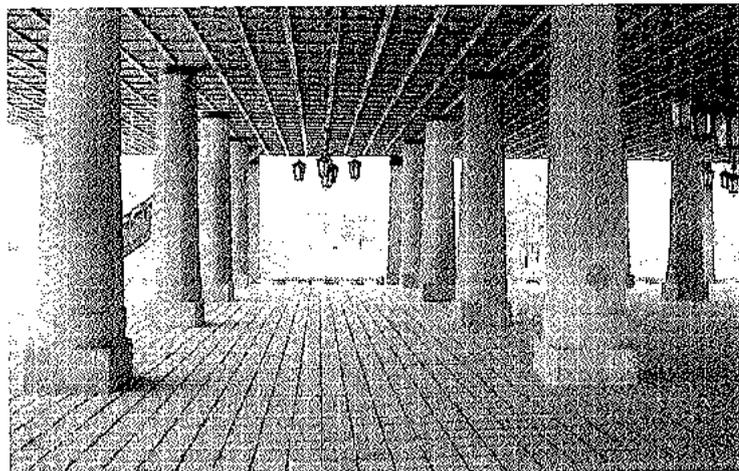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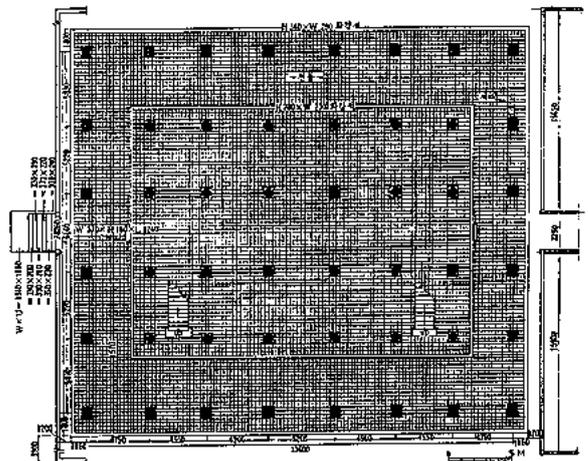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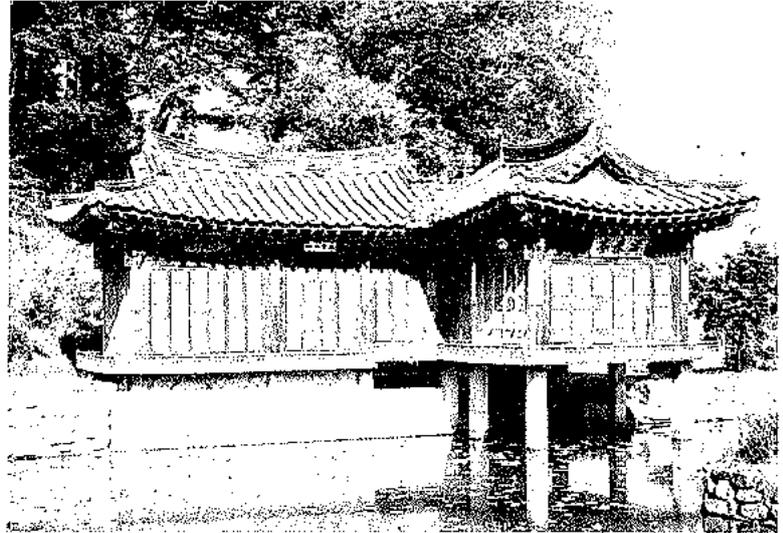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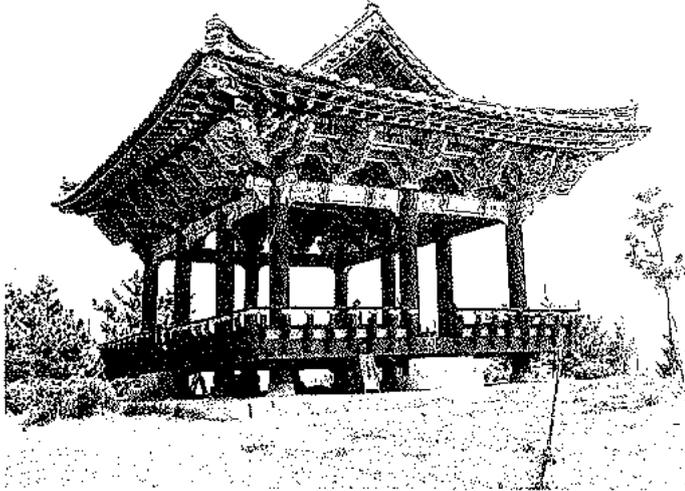
- 1 평양 연광정 전경
- 2 평면도
- 3 모길도의 세연정 유구
- 4 진주 축석루 전경
- 5 평면도
- 6 경복궁 경회루 전경
- 7 경회루 1층 열주
- 8 평면도



17



16



樓閣은 전시를 위한 망루나 지휘소로 사용되기도 하여 진주의 疊石樓는 그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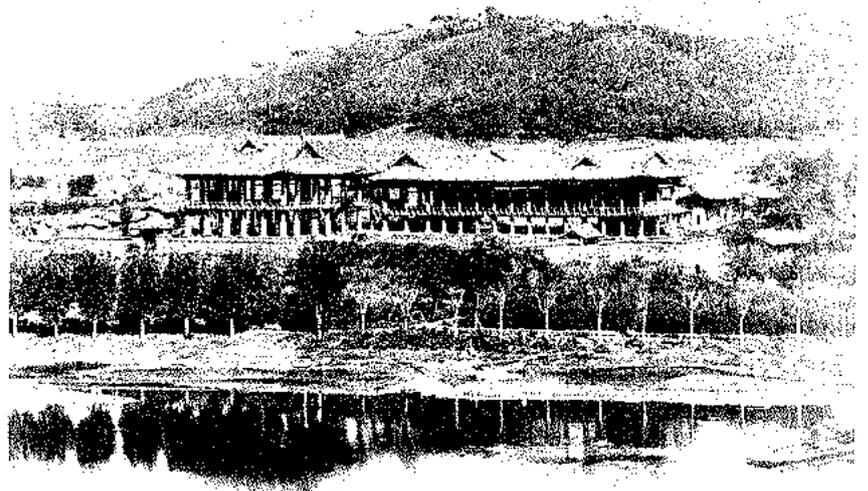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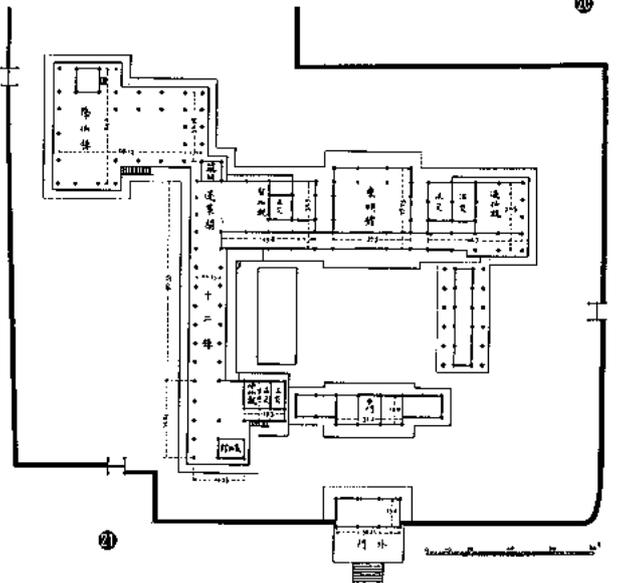
4. 건축형식

건축형식은 먼저 평면을 들어 말할 수 있는데 평면이 정방형과 장방형인 것에서 '丁'자형, 'ㄱ'자형, 육모형, 팔모양, 부채꼴형, '亞'자형, 특수형 등 많은 형식이 있는데 근래 경기도 二聖山城이나 공주 공산성등지에서 9角, 12角形의 건물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기수모각의 정자도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東文選의 四輪亭記에 상세히 기술한 건물말에 四輪을 달아 옮겨다닐 수 있는 정자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평면에 따라 기둥의 배치는 正·側面이 單間으로 되는 경우와 정면이 7칸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누의 형식을 취하여 밑의 기둥은 트인 列柱를 배열하되 높은 석주를 세우거나 목주를 세우는 경우가 있다. 경복궁의 경회루는 전자의 예이고 남원의 광한루는 후자의 예가 된다. 또 석주를 두되 일부는 연못이나 하천에 잠기도록 하여 누정의 절반쯤은 물위에 놓이도록 배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창덕궁의 비원에 芙蓉亭, 愛蓮亭 偉德亭 등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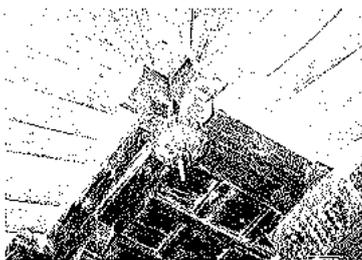
누정 건물의 벽은 대부분이 트인 열주를 세워 외부의 자연을 훤히 내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편에 방을 꾸미거나 군사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벽이나 관문을 달기도하고 창호를 달기도 한다. 바닥은 대부분이 우물마루를 깔거나 널마루를 깔지만 사대부집의 누정은 보통 온돌방을 한편에 놓거나 양편에 두는 경우가 많다. 강릉 해운정이나 달성 태고정등 후자의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 ㉞ 울진 망양정 전경
- ㉟ 강릉 선교장 활래정
- ㊱ 상주 동명관 배치도
- ㊲ 동명관 형선두 전경
- ㊳ 강릉 해운정 전경
- ㊴ 내부 가구
- ㊵ 내부 천장
- ㊶ 강릉 방해정 전경
- ㊷ 밀양 영남루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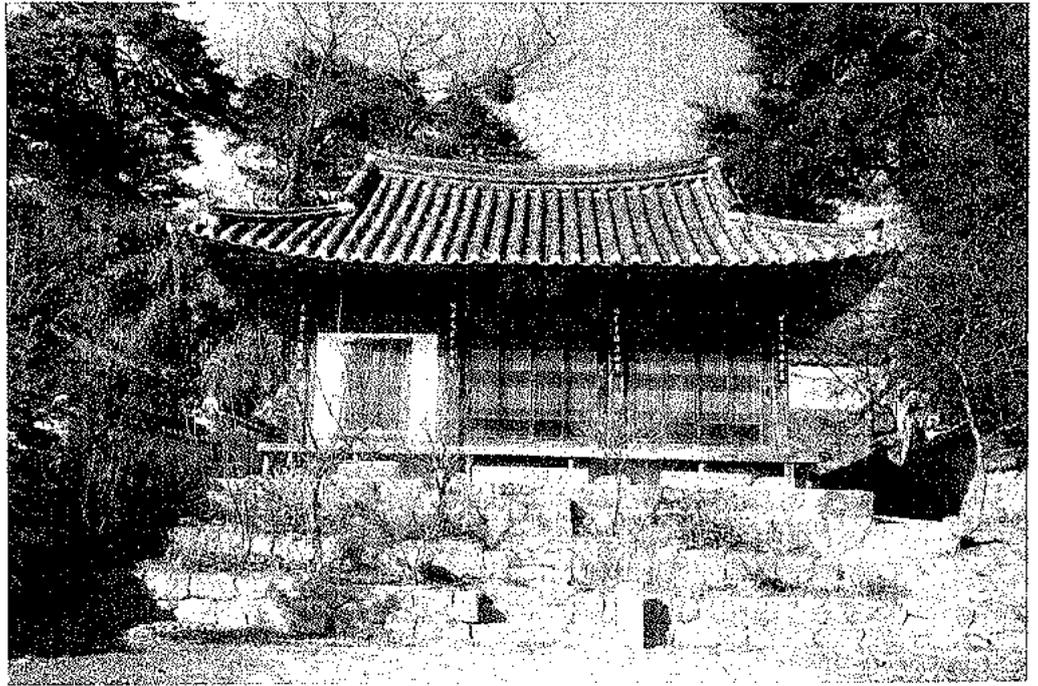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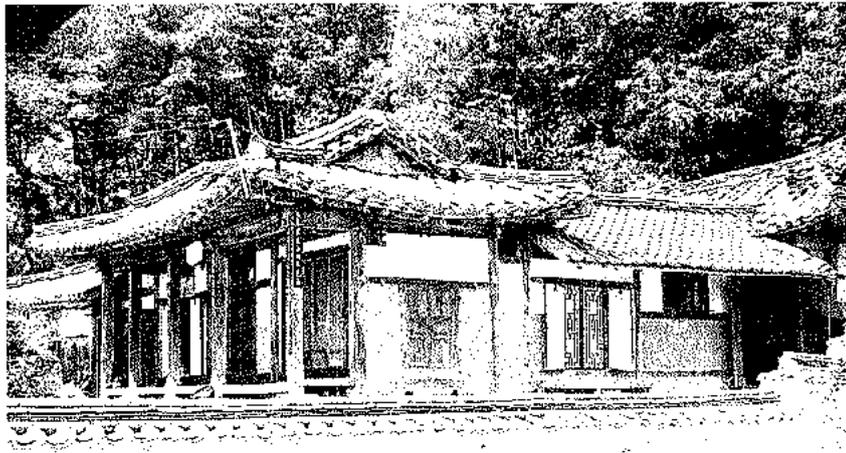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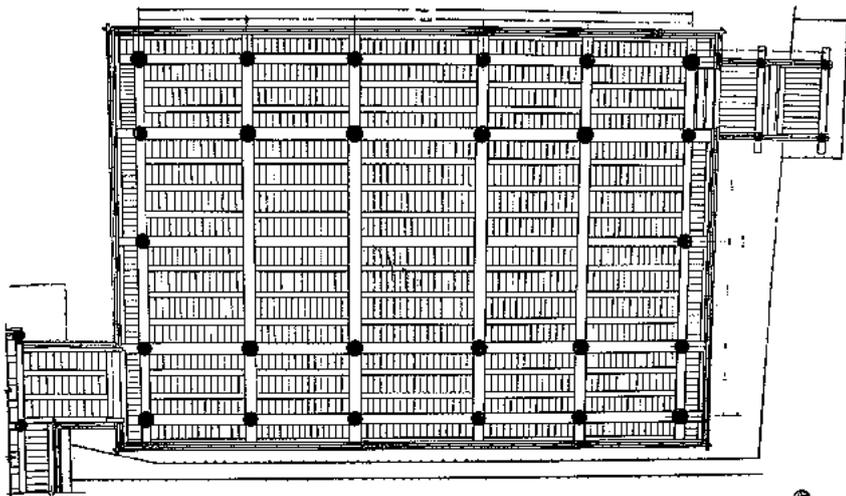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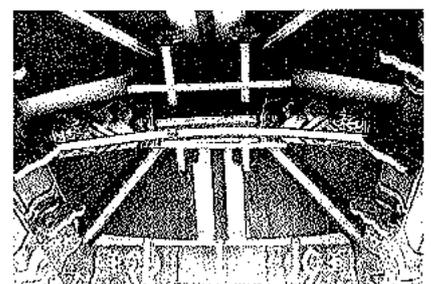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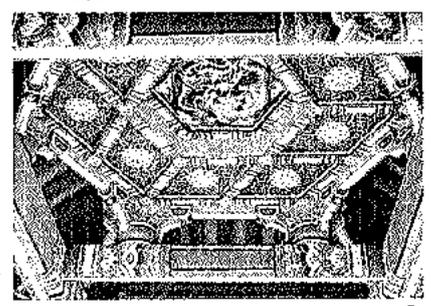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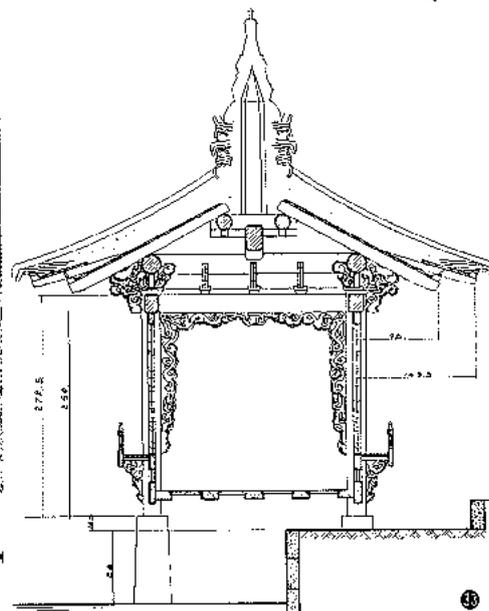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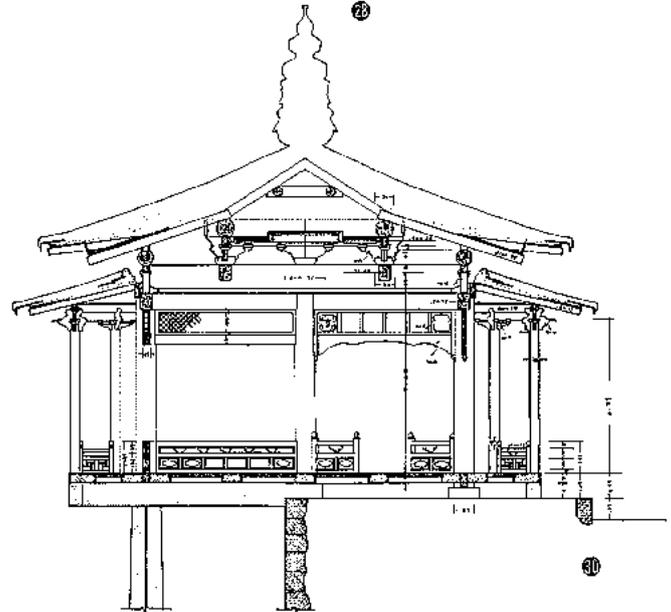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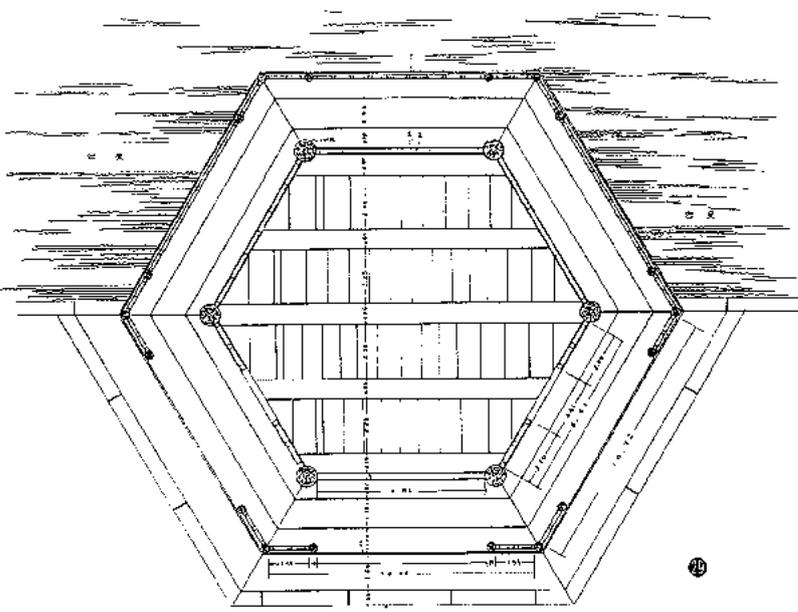
집의 평면이 육각이나 팔각일 경우 마루를 까는 방식도 우물마루를 한 방향으로 깔거나 널마루를 외부에서부터 돌려 깔기하여 마감하는 방식도 있고 비원의 존턱정과 같이 육각평면에 내·외퇴를 두어 마루갈기와 바닥의 높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을 맨다지 바닥으로 할 경우도 있다.

건물의 架構는 특히 정방형이나 모임집일때 지붕 처리가 까다롭다. 즉 대부분의 소규모의 모임지붕에는 들보를 두지 않고 선자서까래와 4기둥에서 올라온 추녀가 중심에서 잘 맞도록 짜져야 하므로 그 기법이 까다롭다. 궁궐의 후원일 경우 기구는 더욱 치밀하여 아름답다. 또 대부분의 누정은 높게 세워지므로 안전을 위한 난간을 주위에 설치하는데 鷄子欄干이나 '亞'자난간 또는 간단한 돌란대를 돌린 난간 등을 시설하여 의장적인 효과도 나타낸다.

지붕은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이 있는데 거의 기와를 이었고 특히 모임지붕일 경우 중앙에 절명통을 올리어 운치를 돋군다. 격이 높은 누정이거나 궁궐의 후원 누정에는 화려하게 모루단청을 함이 보통이지만 시골 사대부집의 누정은 소박한 백골집으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누정에는 현판과 詩板 등이 있어 당대의 명필과 문인들의 글이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적 기록과 문학적으로 귀중한 사료가 된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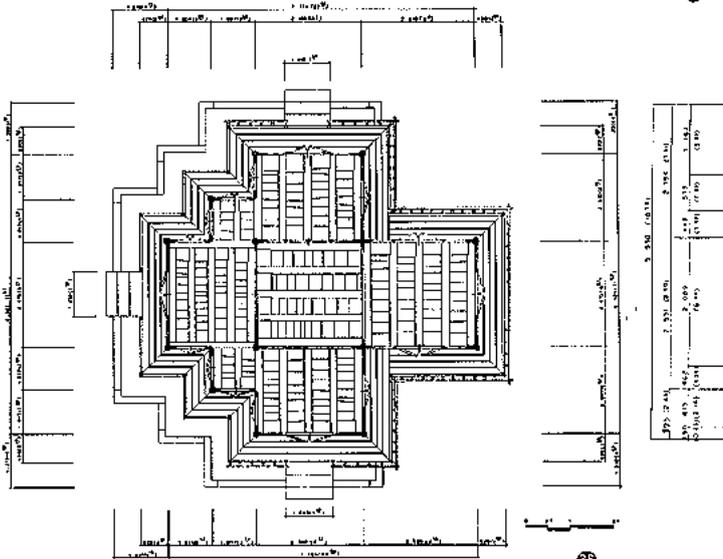
1. 「史記」
2. 「三國遺事」卷第一 射琴匣條
3.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한국 민중문화 대백과사전, 1988
4. 前掲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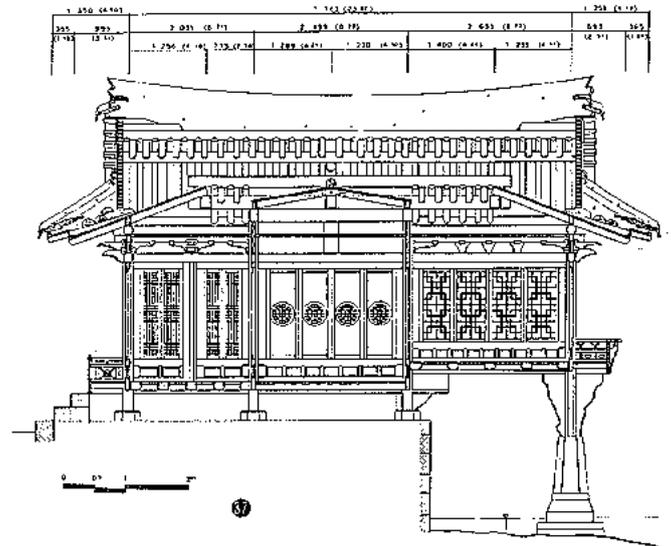


- ㉔ 비월 존덕정 전경
- ㉕ 평면도
- ㉖ 단면도
- ㉗ 내부전장
- ㉘ 비월 애련정 전경
- ㉙ 단면도
- ㉚ 상부기구
- ㉛ 비월 청의정 전경
- ㉜ 비월 부용정 평면도
- ㉝ 월단면도
- ㉞ 부용정 전경
- ㉟ 부용정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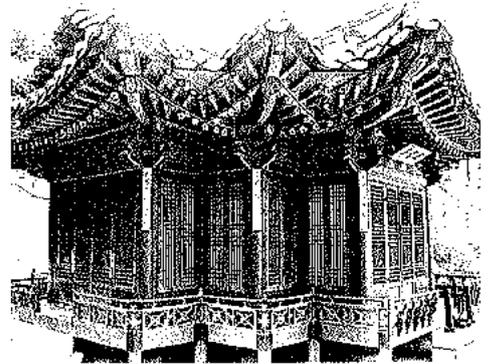
㉔



㉕



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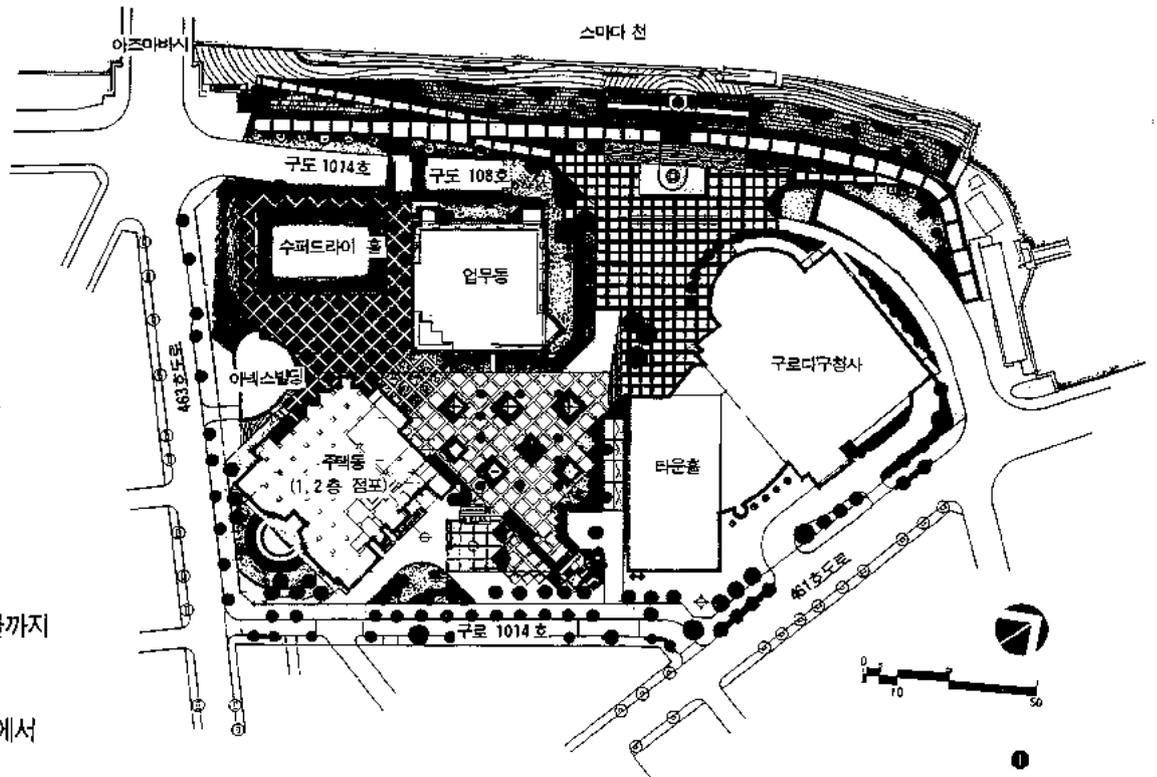
㉜

도쿄의 상공간(商空間)

Commercial Space in Tokyo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소비자지향의 다양화, 시장경쟁의 격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이제까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전혀 무관했던 기업도, 소위 기업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간개별에 주력하고 있다. 공간은 안테나숲이라고 불리우는 것에서부터 쇼룸, 홀, 미술관까지 폭넓다.”

—「전략기업의 商空間」에서



1. 商空間의 추세와 외국인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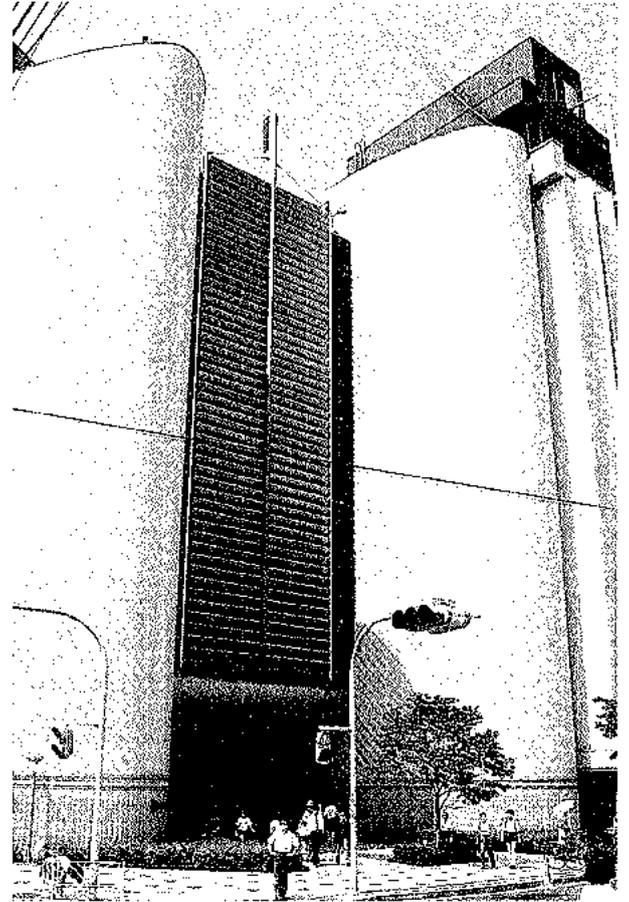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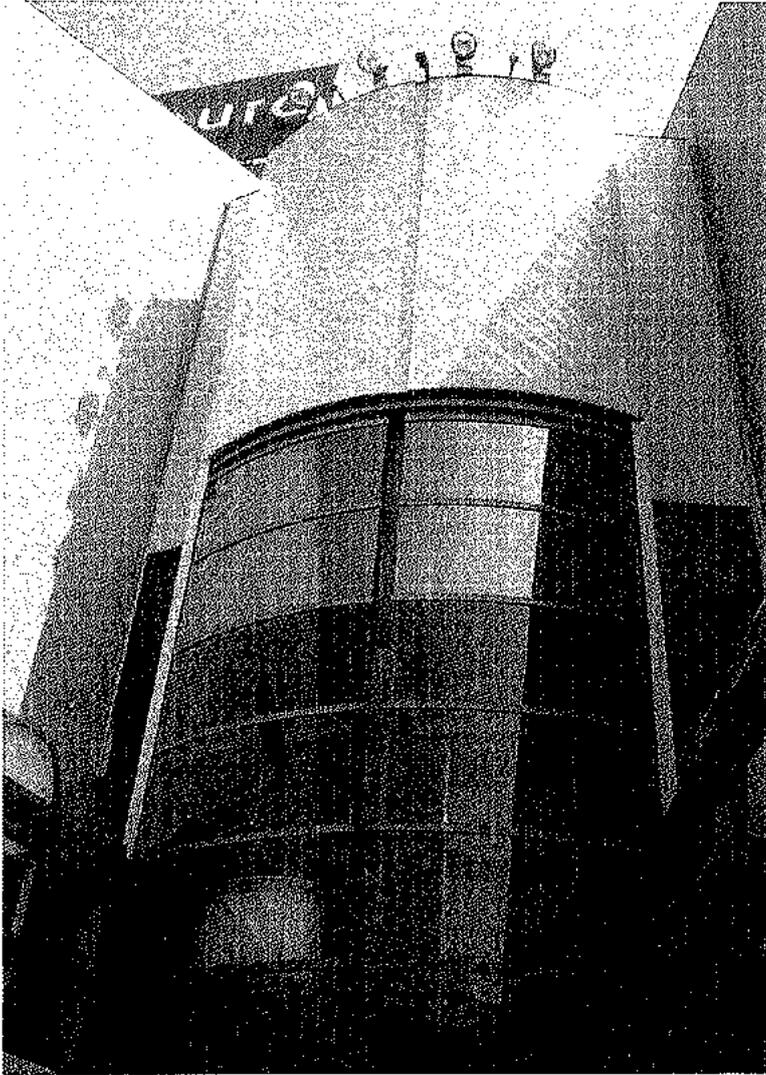
최근 일본 상환경(商環境)설계가 협회의 주최에 의한 '90상환경 디자인상의 입상작이 발표되었다. 숲 스토어 부문, 레스토랑, 서비스 부문, 복합상업시설 부문, 기타라는 4개 대상부문에 총 368점이 응모한 상환경 디자인상의 결과는 대상에 알도 로시(Aldo Rossi)가 후쿠오카(福岡)에 완성한 호텔 일 팔라조(Hotel Il Palazzo)를 비롯하여 우수상에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k)가 기본설계, 완성한 아사히맥주 수퍼드라이 홀, 특별상에는 장 미셸 빌모트(Jean Michel Wilmotte)설계의 분카amura)등과 가작상으로 안도 다다오(安藤 忠雄)의 콜레찌오네(Collezione) 등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상기한 글로만 판단한다면, 외국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만이 이 상을 모두 휩쓴 것같지만, 실제로는 이즈에 칸(出江 寬)이 설계한 오사카 로얄호텔이나 와카바야시 히로유키(若林 廣幸)설계의 우나기다니(鰐谷) 칠드런 무zeum(Children Museum), 모즈나 기코(毛綱 毅曠)의 구시로(釧路) 휘셔 맨즈 워프(Fisher Man's Wharf)등 일본 국내건축가들의 작품도 대상에서 우수상, 장려상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수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입상작에서 외국인들 프로젝트의 상승세도 상당히 강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상작들의 분포에 의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상공간의 다변화 추세와 동시에 외국인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일본진출일 것이다. 엔화의 강세에 의해 최근 외국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일본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건축가로는 상기한 알도 로시 외에 렌조 피아노(Renzo Piano), 리차아드 로저스(Rich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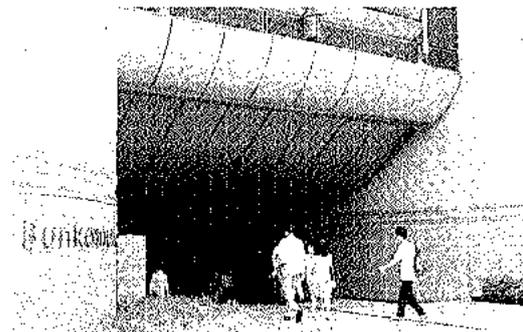
金文德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Rogers), 프랭크 게리(Frank Gehry),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자하 하디드(Zaha Hadid), 코프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등 셀 수도 없을 정도이며,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상기한 필립 스타크외에 에트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 알프레도 아리바스(Alfredo Arribas) 등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필자도 「일본의 외국인 건축가들」이란 제명으로 후에 이 연재의 일환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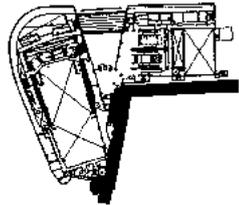
상공간의 다변화라는 추세는 국내에서도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과거 단순한 판매라는 직접적인 상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단순상업 공간에서 판매라는 행위에 문화와 위락이 가미된 복합상공간의 활성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잠실 롯데 등 유통산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상공간개발의 패턴으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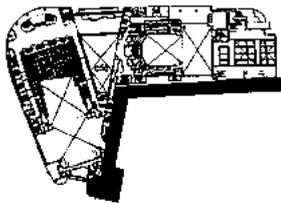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적 방법으로는 시장조사와 점포의 활성화를 위한 시용공간으로 시음장(Test Stage)이나 시식장을 제공하는 방법과 공간개발의 다각화와 유통자본의 이용, 탈 본업(脫本業)을 하기 위한 타영역으로 영역확장을 거론할 수 있으며, 간접적 방법으로는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의 통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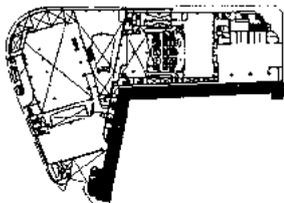
- ① 리버피아 아즈마바시 배치도
- ② 아래에서 올라다 본 전망 엘리베이터 탑
- ③ 분카무라의 주출입구 선박의 마스트에서 유추 디자인 되었다.
- ④ 파도모양의 문결형으로 디자인된 주출입구의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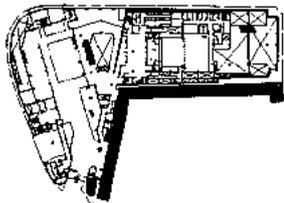
6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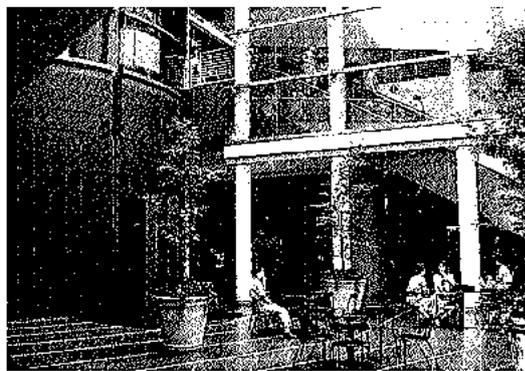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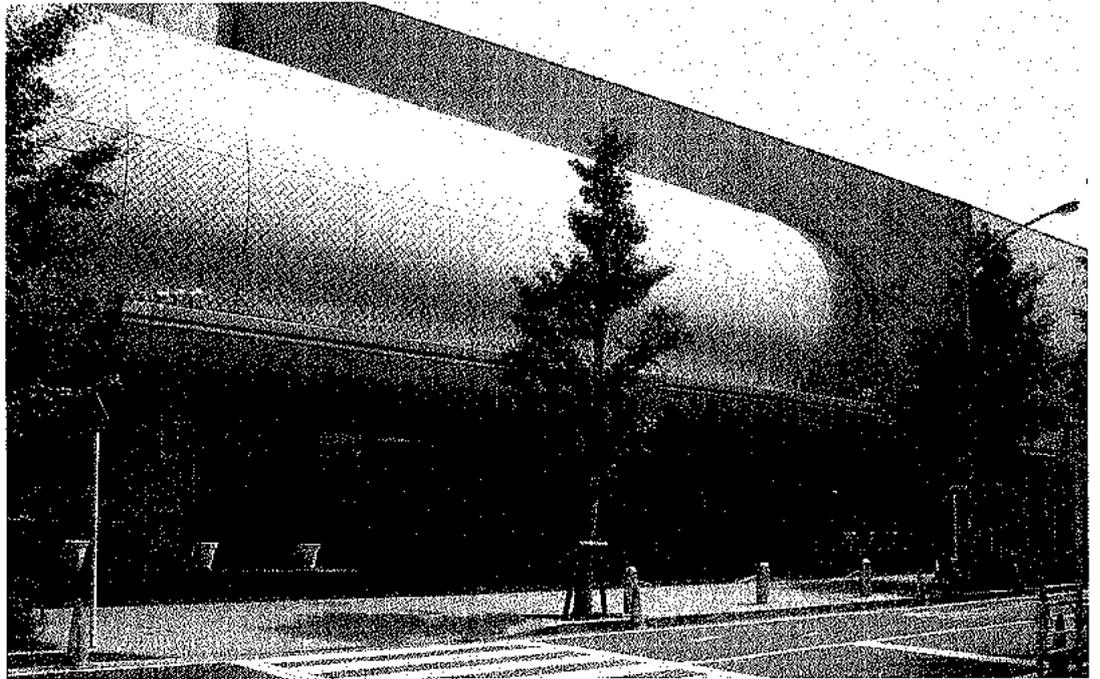
4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⑤ 각종 평면도

⑥ 북측 출입구

⑦ 중앙 광장

전망 엘리베이터 탑 전면에 설치된 비석형 오브제와 나무들이 휴먼 스케일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 계획적 경영전략)활동의 일환으로 문화활동의 후원이나 신상품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 전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기업들도 이제는 그 시대의 경향 및 가치관의 변화와 지역의 풍토와 식생활을 세심히 검토하고 또한 판매대상자들에 대한 취향과 기호를 분석한 후 제품을 생산 판매해야만 배상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상공간의 다변화도 다중소량이라는 생산체계를 가진 현대사회의 속성에 맞는 다변화한 판매나 홍보체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사례의 하나인 분까무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분까무라의 전개과정

시부야(澁谷)에 연극, 음악, 영상의 새로운 문화거점! 이것이 분까무라에 대한 설명이다.

일본에는 최근 문화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기업 이미지 전략의 일환이며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바로 분까무라이다.

분까무라는 1989년 9월 3일에 오픈한 지상 7층 지하 2층의 건물로 연극, 미술, 영상, 음악 등을 위한 갖가지 시설로 이루어진 도큐(東急)백화점의 부속 문화시설이다.

현재 시부야 도큐본점과 같이 연결되어 건축된 이 분까무라는 8년전 도큐그룹 회장의 구상에 의해 「기업으로서 질 높은 문화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목적으로 그 시발이 이루어졌으며 「고객과 연기자간의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의 분까무라와 같은 기업의 문화사업의 진출거점 사례로 아까사카(赤坂)와 롯뵈기(六本木)가 만나는 지점인 아크힐즈(Arkhills)에 세워진 산토리 홀, 아오야마(青山)거리에 세워진 외콜사를 위한 스파이럴(Spiral), 부동산업을 하는 도큐(東高)하우스를 위한 아오야마거리의 도큐 현대미술관 등이 있고 도큐 외의 지역에는 오사카(大阪)시의 기린 플라자 오사카, 나고야(名古屋)시에 위치한 도요타 박물관, 고베(神戸)시의 VCC 커피박물관 등이 있다.

1984년 가을 「문화촌 기업 준비실」을 발족, 분까무라의 기초를 다진 분까무라 운영위원회의 특징은 프로듀서즈 오피스(Producer's Office)라는

지휘자, 편곡자, 연출가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 웨어팀과 「극장만들기」, 「음만들기」, 「인테리어」분야에서 탁월한 3개 설계사무소에 도류독자의 설계사무소가 가세하여 4개 설계사무소팀으로 구성된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하드 웨어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1985년 개업준비실 실장이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할 직격자를 유럽에서 물색하던 중, 당시 무명이었던 프랑스인 장 빌모트를 만나게 되었으며, “취미도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말에 그는 빌모트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1986년 6월 새로운 시설의 복합문화 시설로 목표하고 착공한 분카무라는 기능과 형태가 다른 5개 홀들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L자형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5개의 홀들에 용이하게 진입하는 문제와 원활한 동선처리, 다양한 복합시설에 있어서 구신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시설들의 스파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부가 오픈된 광장공간을 설치하여 이것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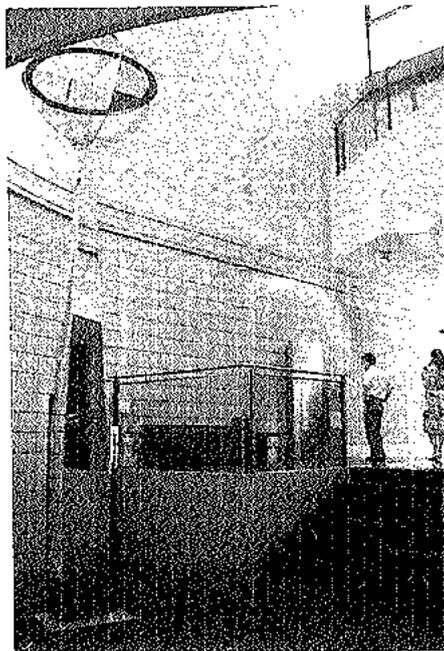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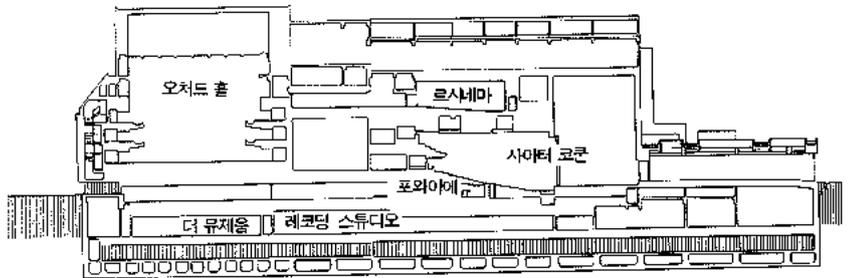
분카무라의 각 공간의 세부계획에 있어 문제되었던 점을 살펴 보면,

1) 미술관의 경우 무주공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하 1층의 기둥 일부를 구조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없애고 이동벽체에 의해 유동적인 공간이 가능케 하였다.

2) 공연장의 경우, 하나의 공간을 클래식, 오페라와 발레, 대중음악이라는 3개 장르가 이용할 수 있는 대 홀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120톤이나 되는 3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가동식 음향 셀터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하였다.

3) 디자인 면에 있어, 빌모트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정적인 공간」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재질이 지닌 자연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전개하였다. 전체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선박」이라는 개념으로 낙착되어, 이 시설전체가 문화와 인간을 집결시키는 항구이며 여기에서 선박이 출항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이미지가 분카무라의 형태적 원천이 되어 입구정면에 요트의 마스트같은 이미지가 유추, 디자인되었고 스파인이 되는 광장공간의 오픈부에 면한 난간 등은 선박의 데크를 유추시켜 디자인되었다.

1988년 11월 「문화촌」이라는, 즉 임시로 「분카무라」로 호칭하게 되었던 가칭이 정식 명칭이 되었다.



- ① 실내 홀의 일부
- ② 단면도
- ③ 분카무라의 운행을 유도하는 상징적인 「꿈의 콤포스」라는 조각
- ④ 중앙광장 상부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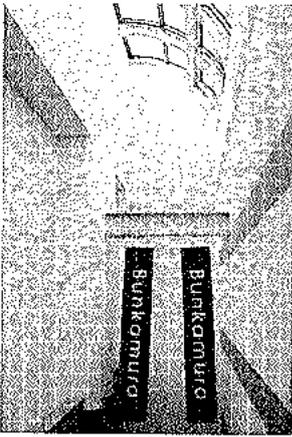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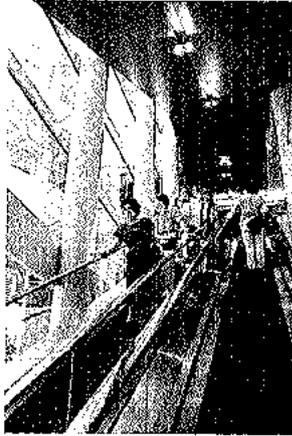
3. 문화촌 · 분카무라

주말에 시부야역전 교차점에 서면, 주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목격하게 된다. 서울에서도 현재 젊은이들의 거리는 종로통인 것처럼, 도쿄의 시부야는 서울의 종로2가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거리 시부야! 즉, 젊은이들이 시부야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아오야마와 긴자(銀座)로 옮겨가는 것이다. 또한 시부야는 사철(私鐵)과 전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시부야에 전개하고 있는 도큐그룹의 전략은 성인들의 시부야 탈출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기도 한 것이다. 젊은이들에서 성인을 위한, 통과점에서 목적지로서의 시부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분카무라의 총장 시미즈(清水 嘉弘)는 분카무라를 「시부야의 새로운 도시계획의 스타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분카무라의 홍보담당 야마모토(山本 智津子)는 이 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큐백화점 본점거리의 케이블과 전선의 지하매설화, 도로확장 등, 우리들은 행정에 협력하여 시부야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부야를 단순한 환승을 위한 통과점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찾아 오는 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카무라를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하이 레벨의 매력적인 거리가 되기 위한 재개발의 핵으로서 8년전서부터 계획한 것입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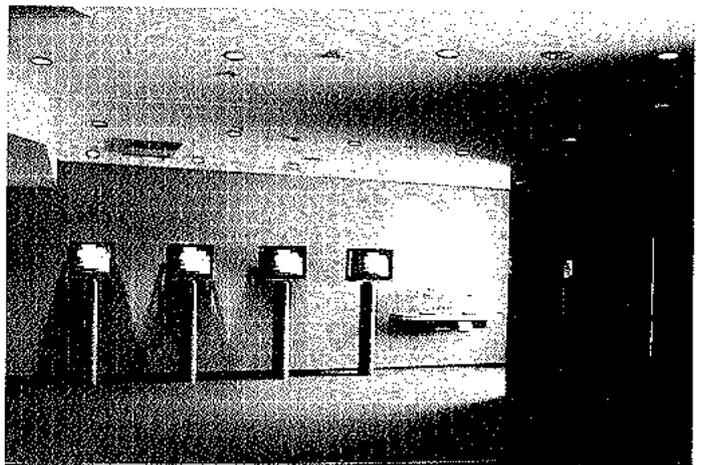
빌모트가 디자인한, 음표를 모티브로 한 로고마크는 문화라는 시대적 울림을 경쾌하게 추상화시킨 동시에 그에 의해 설계된 인테리어는 이 공간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분카무라에 연결된 도큐본점의 식당가는 통상 매상고의 수습매를 기록하는, 이 프로젝트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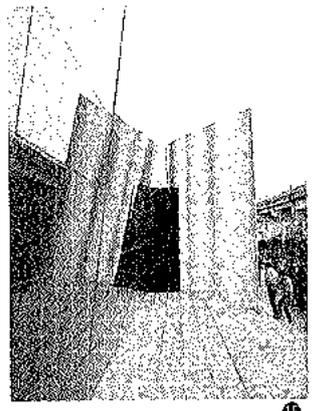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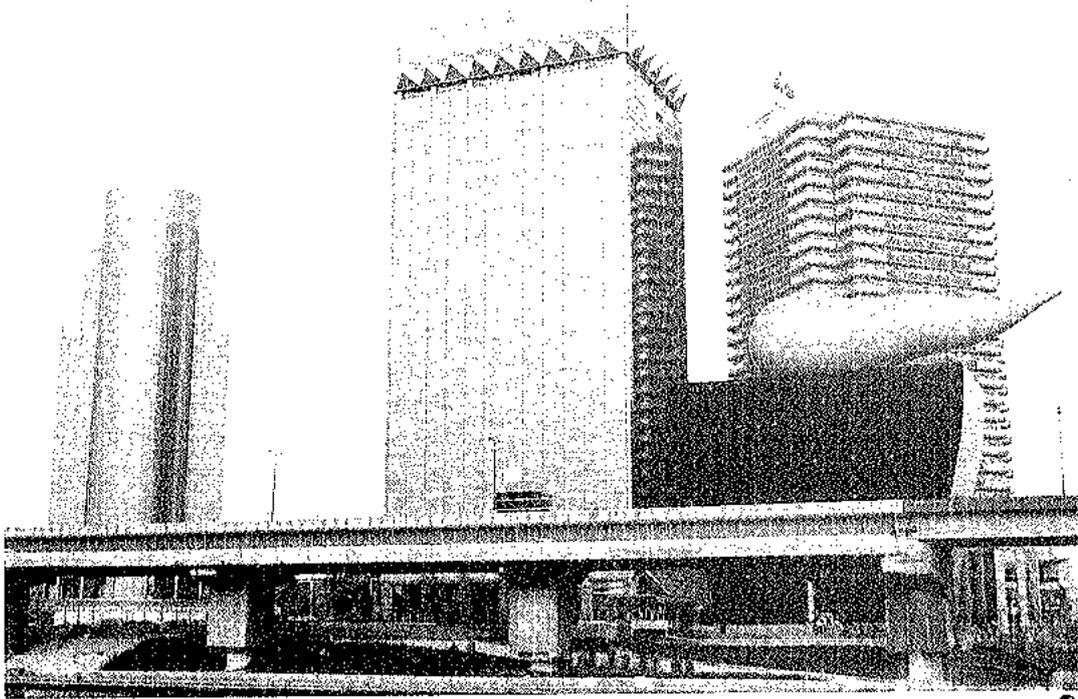


그러면 분카무라의 5개 홀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5개의 홀들을 소개하면,

- 1) 오처드 홀(Orchard Hall : 2~6층)
주개념은 「세계 제 1급의 음」을 목표로 하여 최고의 노하우가 투입된 2,150석의 일본 국내 최대의 슈박스(Shoe Box)형 음악 홀로 종래 홀들의 개념과는 모순된 복합적 기능을 지닌 홀로 갖가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2) 시아터 코쿤(Theater Cocoon : 1~5층)
「음악을 중요한 요소로 한 갖가지 퍼포먼스의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된 객석 747석의 극장으로 무대와 객석과의 일체감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 3) 더 무제움(The Museum : 지하1층)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술공간으로 49개의 가동벽면패널을 설치, 공간을 자유롭게 레이아웃하는 것이 가능하다.
- 4) 르 시네마 1, 2(Le Cinema 1, 2 : 6층)
예술성높은 작품과 잊혀진 명작의 영화를 상영하는 소극장으로 시네마 1이 164석, 시네마 2가 128석.
- 5) 갤러리(Gallery : 1층)
4개의 작은 실로 구성된 미술 아뜰리에. 소개될 기회가 적었던 국내외 예술가들과 신인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작품의 판매도 행한다.

분카무라는 상기한 홀들을 본거지로 사용하는 것도 계약가명행식을 채용하고 있다. 오처드 홀은 「도쿄 필하모니」, 시아터 코쿤은 극단 「은 시아터 자유극장」과 가맹형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재능있는 신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키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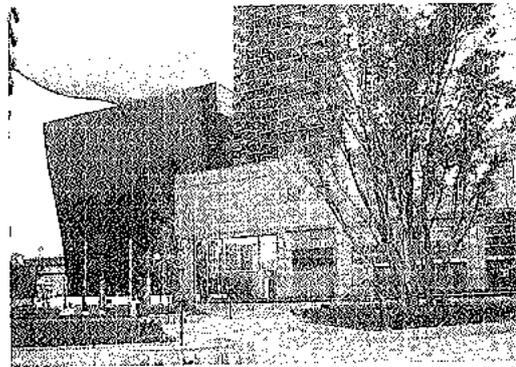
무대를 위한 오디션은 물론 사르트르 등 예술가들에게 애호되었던 파리의 카페 레스토랑과 체인점은 「두 마고 파리」(지하 1~1층)에 의한 「두 마고 분학상」을 제정하여 문학방면의 신인등용의 길을 터놓고 있다.

분까무라 정도를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한 것이다. 재정적 문제의 해결을 오피셜 서플라이어(Official Supplier)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여 기획은 모두 분까무라에서 운영하지만 취지에 찬동하는 노무라(野村)증권 등 6개 기업이 장기간 후원을 결정, 기획의 고품질화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부야역에서 원통형의 인상적 패션 빌딩인 패션 커뮤니티 109를 지나가다 보면 도큐백화점 본점이 나타나고 그 본점과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이 바로 분까무라이다. 주출입구이기도 한 남측 입구는 두개의 원통형 매스가 만나는 곳을 오목하게 처리하여 마치 사람들을 흡수하려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고, 중앙부에는 선박의 마스트를 모티브로 하여 풀대에 매달린 듯한 그릴형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주출입구 부분의 상부 천장은 파도형상의 곡선으로 처리하여 분까무라의 「선박」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실내로의 진입도 유도하고 있다.

외벽은 은색의 띠가 가미된 백색타일로 마감되어 한편으로는 실크같이 직조된 이미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금속성 이미지로 나타나 산뜻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분까무라의 형태디자인에서 최대한 고려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5개 홀이 내장된 이 건축물의 둔중한 매스를 어떻게 날렵한 선박의 이미지로 치환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³¹⁾

이런 문제점때문에, 전체 실기능을 만족시키면서도 복합문화시설이라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하여 외형이 완만한 곡선형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주출입구를 통해 실내에 들어 가면, 천장에 방향성을 암시하는 선형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이 선형 조명을 따라가면 주위에 에스컬레이터와 전망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상부 오픈의 중앙광장이 나타난다.

이 중앙광장과 광장주위의 엘리베이터 홀은 이 시설의 중심적 역할과 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스페인 역할도 하면서 남측의 주출입구와 북측 입구와의 해벨차를 조정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사다리꼴형으로 오픈된 이 광장에서

- ⑫ 중앙광장 주위에 있는 전망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 ⑬ 최상층으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상부의 홀 라이트
- ⑭ 실내에 있는 카페
- ⑮ 로 시네마 전면 홀에 설치된 TV모니터
- ⑯ 리버피아 이즈마바시 프로젝트 전경
좌로부터 구로다구 청사, 이즈마바시 빌딩, 수퍼드라이 홀, 후면이 주거동...
- ⑰ 광장에서 바라본 수퍼드라이 홀
- ⑱ 수퍼드라이 홀 입구 유리블록 계단상에 황금색 오브제가 입구를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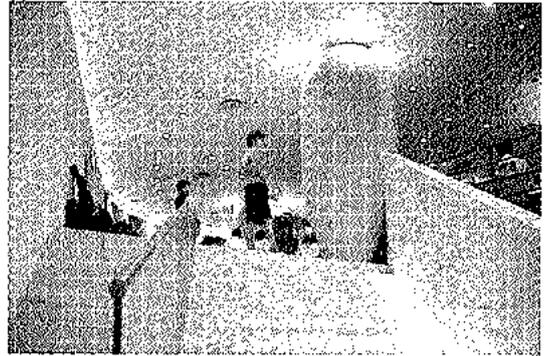


① 아사히 맥주 빌딩과 수퍼드라이 홀 전경
 ② 2층으로 오르는 계단 기둥은 맥주 거품을 형상화하였다.

전망엘리베이터탑은 상당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장의 엘리베이터탑의 축과 대칭을 이루며 서 있는 비석형 오브제와 몇 그루의 나무가 광장의 오픈 카페에서 휴식하는 사람들에게 휴먼 스케일적 장치로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각 층을 오르내리면서 여러가지 흥미있는 장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항해하는 선박 분까무라호를 유도하는 「꿈의 콤파스」라는 실내의 홀에 설치된 조각이나 르 시네마 대기 홀에 설치된 풀형 TV 모니터, 최상층의 톨 라이트 밀을 통과하여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등 유니크한 장치들이 이 분까무라호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과연 도큐그룹에서 꿈꾸는 “시부야가 일본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날은...” 멀지 않은 것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사히맥주 수퍼드라이 홀로



향하였다.

4. 리버피아 (Riverpia) 아즈마바시 프로젝트

도쿄 스미다(隅田)川 주변의 스미다공원은 에도시대부터 유명한, 산책로 중심으로 설계된 2km 거리의 강변 공원이다. 서양식 정원의 아사쿠사(淺草)쪽과 일본식 정원인 강 건너편의 구로다(黒田)로 양분된 이 공원은 벚꽃으로도 유명하여 봄철이면 많은 상춘객들이 찾아 드는 곳이다.

또한 스미다천을 오르 내리는 수상버스는 아사쿠사의 아즈마바시(吾妻橋)에서 다케시바(竹芝)까지 운항하면서 강변의 정취를 즐기는, 서울로 말하면 한강유람선을 연상시키는 관광코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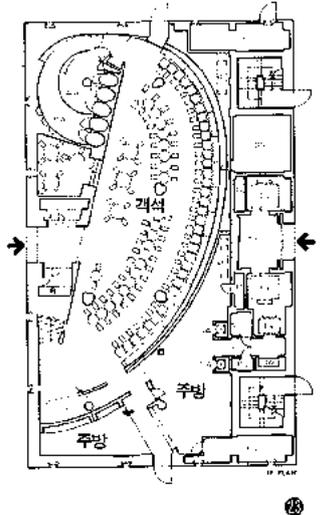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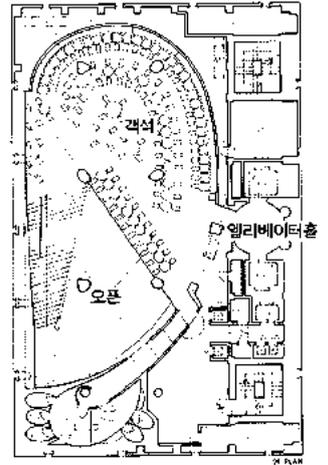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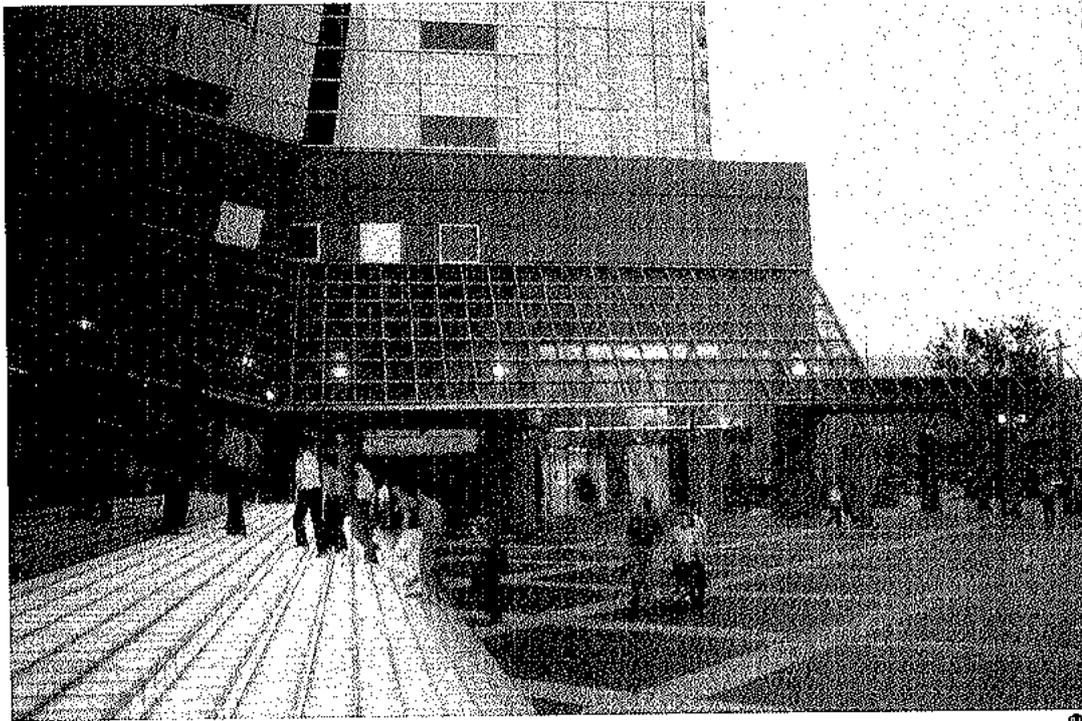
즉 스미다천 주변은 도쿄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도 많아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아사히맥주

아즈마바시(吾妻橋)공장부지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리버피아(Riverpia) 아즈마바시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구로다구(區)와 주택·도시정비공단, 아사히맥주 3자 공동개발에 의한 것으로 21세기를 겨냥한 도시형 하이컴플렉스 시티(High Complex City)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구로다구 신청사·타운 홀 외에 도시형 주택의 건설과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 및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면서 강변공원을 포함한 도시형 광장을 정비하는 것이 계획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사(18층)는 구메(久米)설계사무소, 업무동은 니켄세계이(日建設計), 주택동은 시미즈(清水)건설 설계부, 광장과 강변공원은 패시픽 컨설턴트와 에디 조경설계사무소가 담당하였으며, 특히 아사히맥주 홀이 프랑스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의 제안이 채택되어 화제가 되었다.^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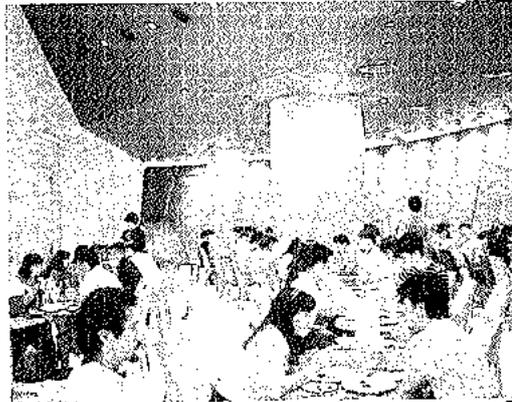
특히 인공지반상의 광장에서 스미다천의 강변공원을 연결하는 오픈 스페이스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간스케일과 기능에 의해 각각의 개별성을 발휘하면서 전체로서 다자인이 조정된 외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인계획, 조명계획, 포장계획, 식재계획에 대한 조정이 행해졌다.

신청사와 타운 홀앞의 「정취의 광장」은 스미다천을 배경으로 각종 이벤트기획에 대응하는 다기능공간으로 정비하고 타운 홀의 집회, 전시기능에 맞게 연출하였으며, 주택동 북측의 「 만남의 광장」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녹지를 주체로 유구, 스트리트퍼니춰, 모뉴먼트 등의 장치로 연출하였다. 맥주 홀 전면광장은 「변화의 광장」으로 맥주 홀과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광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5. 아사히맥주 아즈마비시홀(수퍼드라이홀)

아사쿠사전철역에서 강변을 바라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건축물들을 발견하게 된다.

비교적 저층으로 생각되는 검은색 건물위에 황금색 오브제가 옥상에 설치된 형상이 과연 저것이 건물일까 하는 의문부터 들게 하고, 바로 인접해 황혼에 금색으로 빛나는 고층건물과 상부의 요철형태의 처리등이 스미다천을 오르 내리는 수상버스, 전철, 바로 인접해 지나가는 수도고가



고속도로에서 볼 때, 상당히 강한 인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인상적인 건축물군들이 바로 리버피아 아즈마비시 프로젝트의 하나인 아사히맥주 아즈마비시홀과 아사히맥주 아즈마비시빌딩인 것이다.

아즈마비시홀과 분까무라를 기본설계한 필립 스타크나 J.M. 빌모트는 우연히도 다같이 프랑스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다. 빌모트가 분까무라를 설계한 후 프랑스에 알려진, 즉 프랑스에서는 무명의 디자이너였던데 비해 필립 스타크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파리, 뉴욕, 도쿄, 바르셀로나 등을 무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다.

그는 이미 이 맥주홀 이전에도 도쿄에 몇개의 인테리어와 소규모 건물을 설계, 일본에서는 이미 평판이 나있는 디자이너이다.

- ㉑ 홀속에서 바라본 빌딩 밤이 되면 유리블록의 계단에 빛이 들어오고 홀은 떠 있는 느낌이 든다.
- ㉒ 실내 전경 벽면은 벨벳으로 마감되어 있다.
- ㉓ 수퍼드라이 홀 평면도



21

1949년 프랑스에서 출생한 필립 스타크는 1963년 파리 장식미술학교 졸업, 1964년 미국으로 이주, 1966년 파리에서 레스토랑, 디스코 텍 등을 설계하여 유명해진 이후 세계각지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노자와(野澤 誠) + GETT가 담당하였고 노자와팀은 맥주홀 광장에 위치한 소규모의 시음장도 설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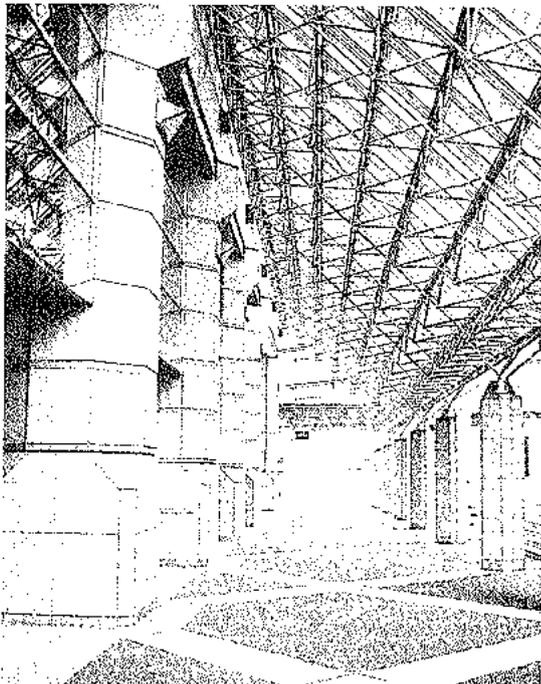
1987년 10월 계약시 아사히맥주 사장이 필립 스타크에게 “당신은 21세기를 향해 가우디가 스페인에서 이룩한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는가?”하고 질문했을 때, 스타크는 “물론이다”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있어 가우디이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 가우디의 스폰서였던 구엘백작이다.” 라고 했던 일화끝에 탄생된 건축물이 바로 수퍼드라이홀이다.

아사히맥주 사장은 준공하는 해가 아사히맥주



22

- ㉓ 주력동과 인접해 있는 이비스 빌딩
- 노자와+GETT팀의 설계
- ㉔ 이케이드 전경
- 맥주홀 계단과 안접해 있다.
- ㉕ 아즈마비서 빌딩 입구



23

창업100주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사히의 파워를 표출하는 건축물, 워터 후프트 개발의 일환으로 그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건축물을 요망했던 것이다.

스타크는 2주간의 작업끝에 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행하였으며, 그는 이 빌딩이 아사히맥주의 에너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외관에 다음과 같은 3개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리블록의 계단, 검은색 어영석, 그리고 황금색의 오브제.

즉, 스타크의 극적인 어프로치를 선호하는 성향은 이 계단을 극적인 장치로 연출케 한 것이다.

계단을 유리블록으로 마감하여 야간에 하부에서 조명을 하면, 건물전체가 부유하는 것같이 보이도록 연출하는 제안이었던 것이다.

또한 검은색 어영석 마감의 건물본체는 상당한 신비를 비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내부공간이 더욱 신비롭게 보이도록 창을 최소화하고 창의 외형은 객식의 원형창처럼 처리하여 워터후프트에

서있는 건축물임을 강하게 표출하도록 하였다.

황금색 오브제는 불꽃을 상징한 것으로 에너지와 파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오브제는 전장 44m 무게가 350톤이나 된다.

맥주홀 1, 2층 실내는 초현실주의의 세계로 기둥은 맥주의 거품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색채는 부드럽고 밝은 파스텔조로 마감되어 있다.

실내의 벽은 설탕의 벽을 연상시키는 백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었으며 소파와 일부벽은 회색 벨벳천으로 마감하였다.

3층은 불·바람·물이라는 자연의 3요소를 나타내는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운지 바닥전면에 새겨진 원주율은 무한을 의미하고 있다.

4층은 다목적 홀로서 바닥에 매입된 조명은 4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5층의 객석에서도 4층의 이벤트를 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홀을 5층까지 오픈하였다. 6층은 냉각탑이나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층은 주방과 사무실 및 기계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필립 스타크 자신은 이 맥주홀을 설계할 때, 1) 스케일과 관계없는 건물을 만드는 것, 2) 일반적인 건물을 디자인하지 않는 것, 3) 초현실주의의 개념을 집어 넣는 것을 가정하여 작업하였다고 한다.⁵⁾

아즈마바시홀을 방문했을 때는 저녁이 가까워졌을 무렵이었고, 스미다천쪽의 입구가 있는 유리블록마감의 계단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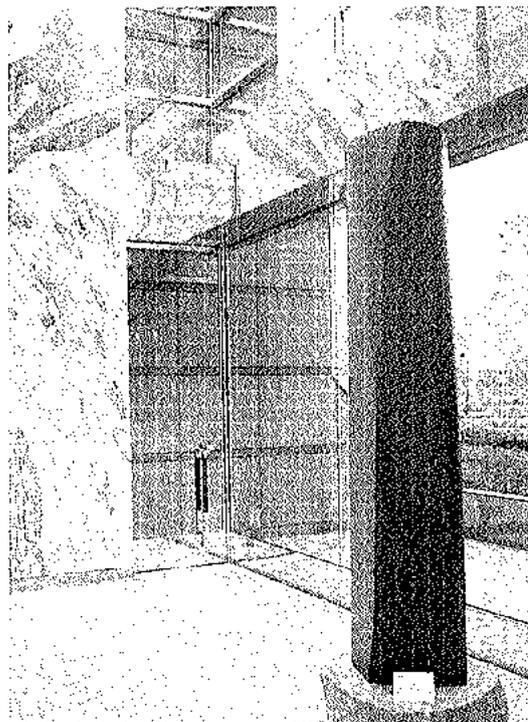
이 인상적인 건물에서 간단한 식사와 맥주를 마시면서 낭만을 즐기기 위한 젊은이들이거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것이다.

입구부분에는 역시 건물육상에 설치된 황금색 오브제와 같은 색깔의 오브제 단편이 설치되어 입구를 암시하고 있다.

실내의 기둥들은 회색이 가미된 연녹색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기둥들의 형태가 한편으로는 솟아오르는 돌고래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에고치형을 취하고 있는 초현실적인 것이었으나 이 오브제형 기둥은 상기한 것처럼 맥주의 거품을 모티브로 하였다고 한다. 벽면은 벨벳으로 마감되어 주방부분은 그 입구가 벨벳으로 된 커튼을 들어 올린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실내공간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안토니오 가우디나 초현실과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전체공간은 곡선을 주제로 한 초현실풍 디자인으로 이루어졌다.

아즈마바시에서 환상의 선박 슈퍼드라이호를 타면, 내부는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찬 초현실주의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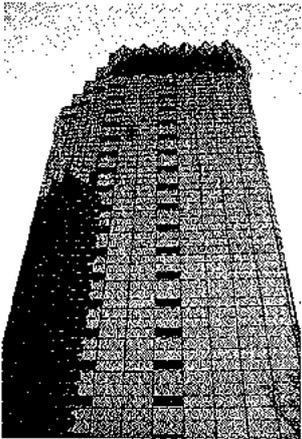


㉗ 빌딩의 아케이드에서 바라본 주택동
㉘ 로비 일부에 세워진 조각

인도하겠다는 스타크의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되었다.

슈퍼드라이홀을 나와서 바로 인접한 아사히맥주 아즈마바시빌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슈퍼드라이홀에 인접한 아즈마바시빌딩의 지붕이 유리로 덮힌 아케이드를 따라 가면 빌딩의 주출입구 앞에 펼쳐진 광장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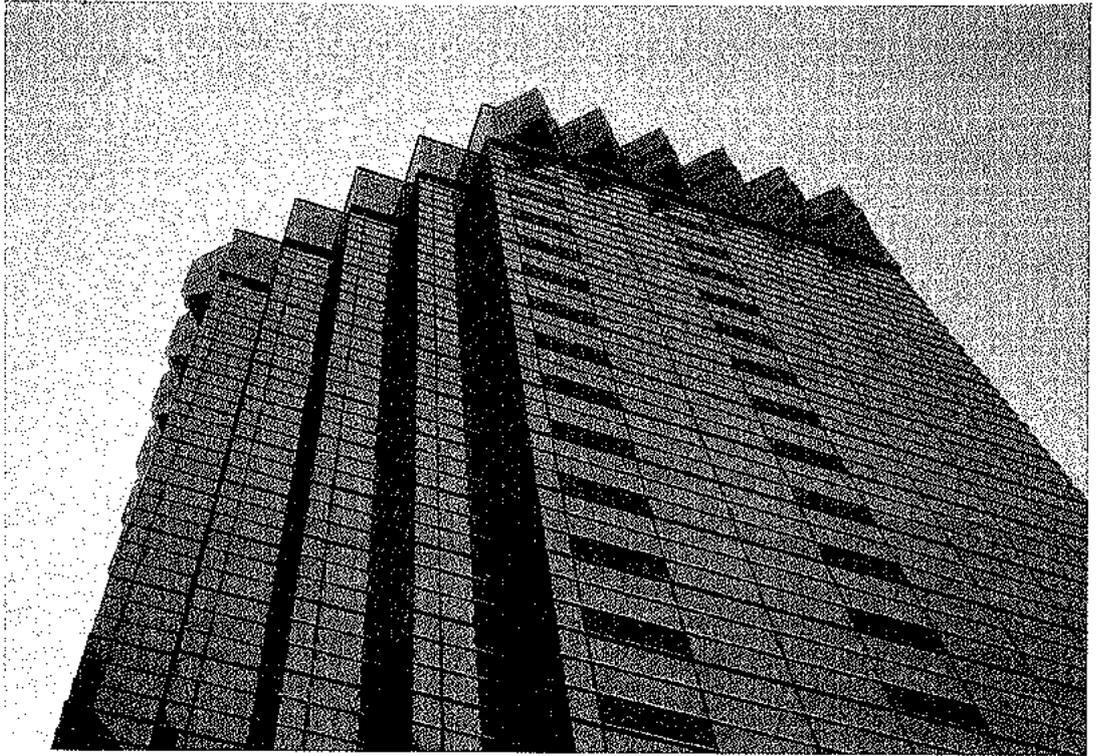
이 빌딩을 설계한 니켈세계이팀의 말을 빌리면, “텔러트는 어떤 경우이던 간에 자기개성을 표현하는



㉑

㉑ 아즈마비시 빌딩의 상부
요철로 편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㉒ 아즈마비시 빌딩을 올려다 봄
㉓ 야경에 바라본 수퍼드라이 홀
상부의 황금색 오브제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



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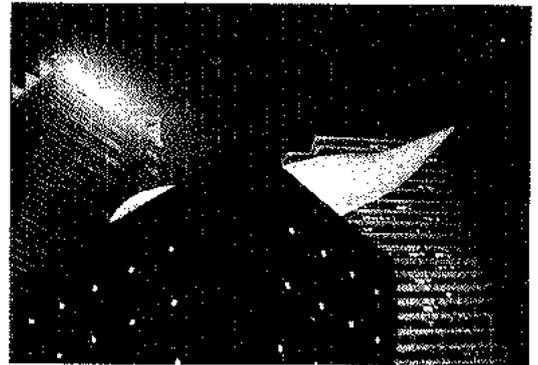
것을 제일로 생각해야 하고, 보통사람들은 각본을
숙독하고 각본가의 진의를 읽어 그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사히맥주는 소비자의
잠재적 요구를 읽고, 소비자의 미감을 맞추는
보통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
아사히맥주의 사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에는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맥주홀을 설계한 필립 스타크라는 벨런트와
빌딩을 설계한 니켄세계이라는 보통사람들의 집단의
역할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 빌딩설계시 직원들에게서 수집된 앙케이트의
내용을 보면, 3인1대의 단말기를 설정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완비하여 장래 다양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인텔리전트빌딩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사용하기 쉬운 사무공간」, 「화재, 지진
등의 비상시에 안전한 빌딩」, 「야사쿠사에 인접한
스미다천에 면한 토지의 특성을 살린 건물」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이런 요구들이 모두 충족된 건축물이 바로 이
빌딩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재개발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사히맥주
수퍼드라이홀을 바라보니 야경중에 조명에 의해



㉓

빛나는 황금색 오브제가 꼬리를 휘날리는듯 서있는
것처럼 보였다.

註)

- 1) “企業の文化戦略の現在と未来”：貝山 恵子(空間 1989. 11), p. 105
- 2) “「ブソカムラ」は新澁谷のゴールとなふか”(商店建築 1989. 11), p. 192
- 3) “Bunkamura：阿佐見昭彦”(新建築 1989. 10), p. 311
- 4) “リバーピア 吾妻橋”(Japan Landscape 1989. No 11), p. 79
- 5) “百由な 建築デザインへの飛翔”：Philippe Stark(新建築 1990. 1), p. 260

군산시청사 현상설계경기

현상설계경기

다가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군산시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현대식 청사를 건립키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된 군산시청사 현상설계경기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총 12개 건축사사무소가 작품을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에서 당선작에는 삼정건축(대표 金基雄)案이 선정되었으며, 건원건축(대표 郭弘吉)案과 가전건축(대표 姜永浩)案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교수 5인, 건축사 2인, 시청 관계공무원 6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은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 삼정건축案은 「건축물의 상징성과 조형미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현상설계경기 공모시 제시된 설계지침은 다음과 같다.

당선작

삼정건축(안)

우수작

가전건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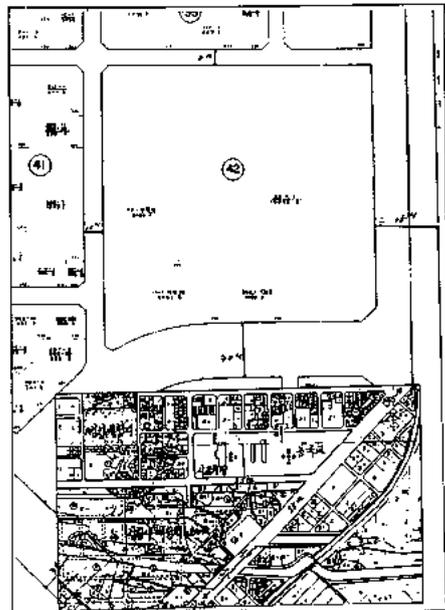
건원건축(안)

설계지침

- 1) 건축연면적 : 약 4,000평(설계자의 창의성 고려 ±10%)
- 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부대시설 : 조경, 주차장, 담장(투시형), 부속건물 등.
- 4) 입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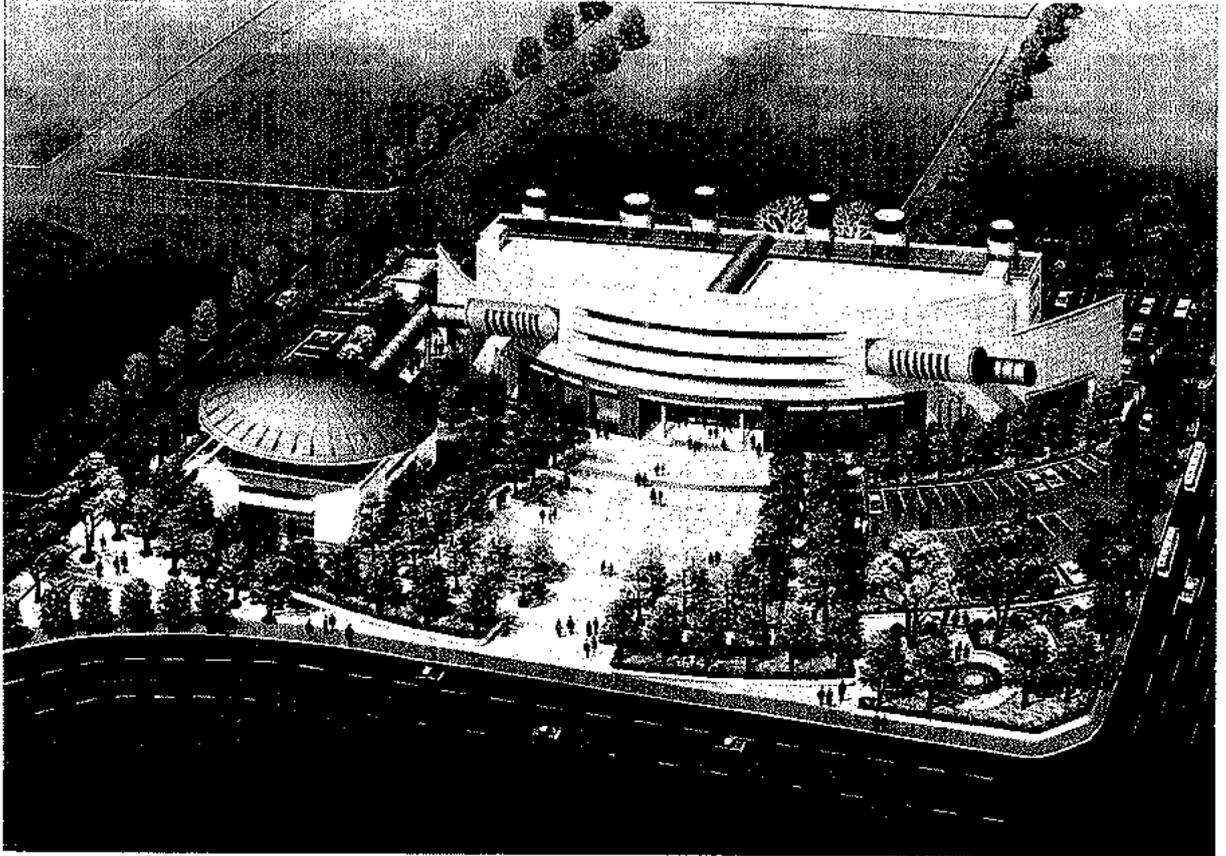
5) 설계일반지침

- 우리 군산시는 2,000년대에 인구 70만을 바라본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인구증가 및 행정 수요의 변화로 기구확장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행정 능력향상·주민 편의시설 제공과 다가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대응하여야 하며, 또한 장엄성·예술성·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함(수직, 수평 중축고려).
- 외형은 관료적인 종래의 건축형태를 지양하고 군산시의 전통과 미래가 조화있고, 지역의 중심적 역할 및 우리 시의 상징적인 심볼로서 이미지를 부여하는 건물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에너지 절약의 효율성이 높은 전력을 공급하고 자연 채광과 인공조명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함.
- 건물은 외부공간과 상호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별 배치등 공간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집기 운반용 승강기, 민원인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야 함(직원용 승강기 면적 확보)



삼정건축(대표: 金基雄)案

C
O
M
P
E
T
I
T
I
O
N



조감도

■ 설계개요

대지위치/전북 군산시 조촌동
6토지 구획 정리지구
42블럭
지역·지구/주거지역
대지면적/약 21,157㎡
건축면적/3,334㎡
연면적/13,716㎡
규모/행정동—지하 1층, 지상 5층
의회동—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일부철골조
건폐율/15.75%
용적률/83.49%
주요외장재/화강석버너구이+
붉은벽돌치장쌓기,
칼라복층유리
주차대수/148대

1. 계획개념

꼭 40년전 1·4후퇴 때에 이 군산에서 몇 달 살면서 생글을 따먹고, 뱀어를 썰던 기억이 선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이 도시가 이제는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조촌동은 옛날의 조촌면이 시에 편입되면서 달라진 이름인데, 바로 이 근처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동네에 시청사가 새로이 들어시키기 위하여 구획정리공사가 한창이었다.

군산이 일제시대에는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내기 위하여 개발한 항구라서 일본인들이 도시를 계획했고, 또 일본식 '오까베'집들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지금도 단층 일본집이 도시전체를 채우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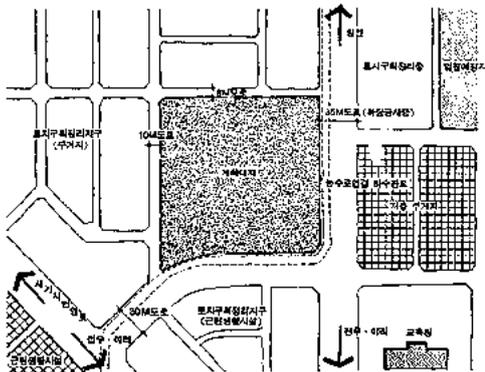
해방이후 지금까지는 일부를 개조하거나 개축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미곡창고등은 벽돌벽으로 지어져서 도시의 인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군산시청사가 다른 항구도시의 시청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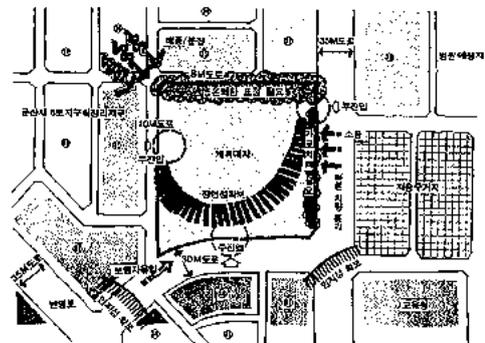
최근 지어졌던 여타 도시의 시청사와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

지방화(민주화)시대에서 시청은 더이상 고압적이고, 수탈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실제로 시민에게 실리를 제공하고, 편의를 베풀며 친절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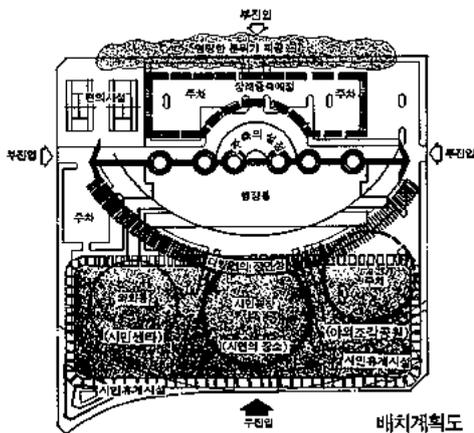
시민들이 좋은 전시회를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싸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고, 결혼식을 한다든가 환갑잔치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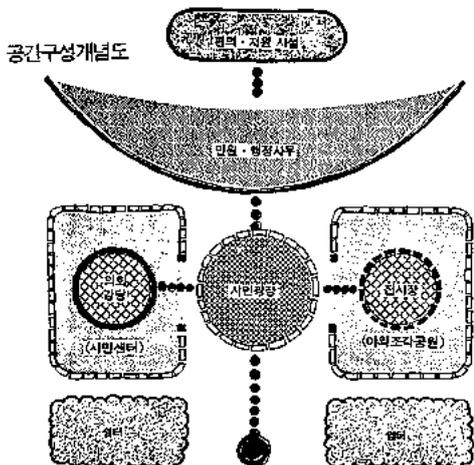
대지현황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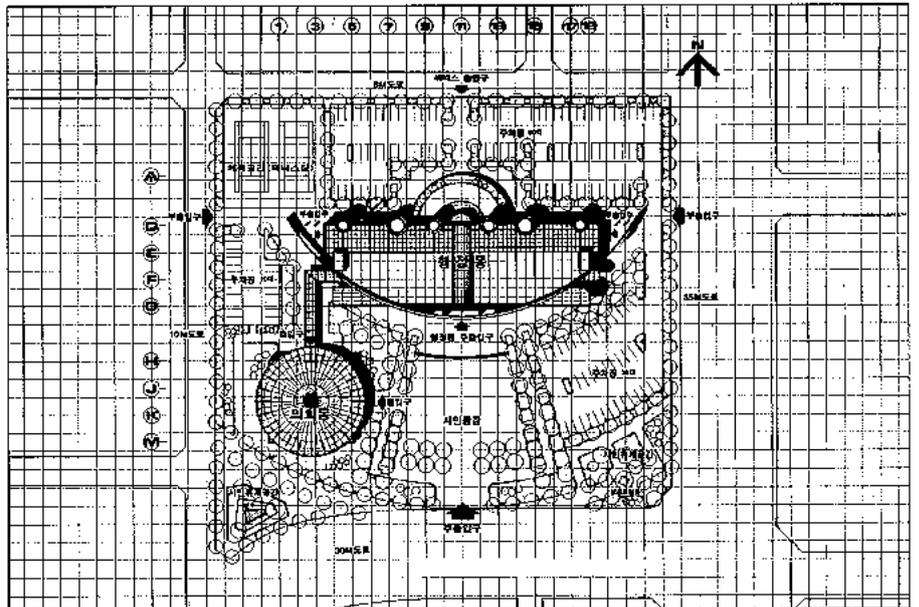
대지계획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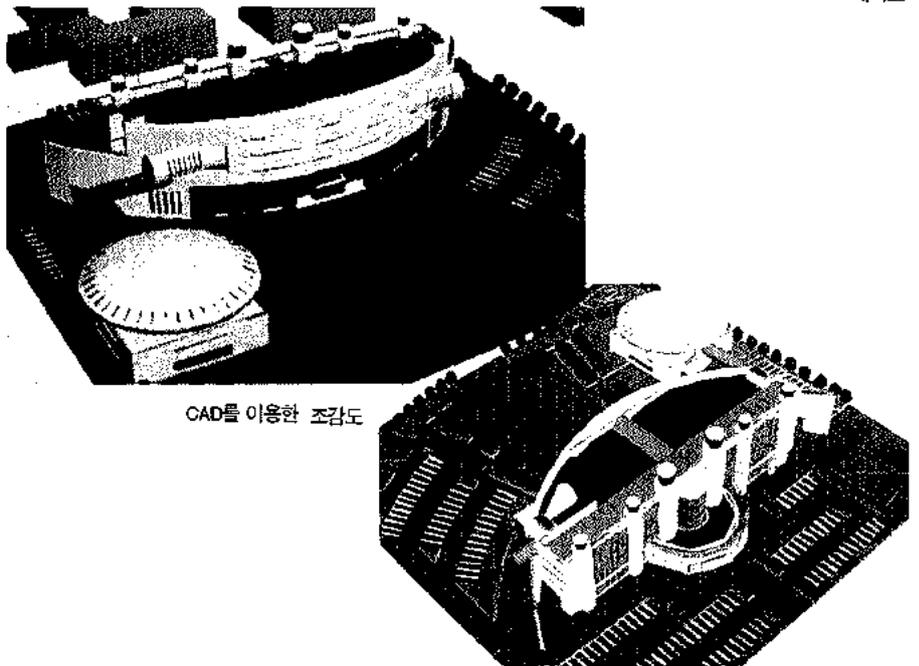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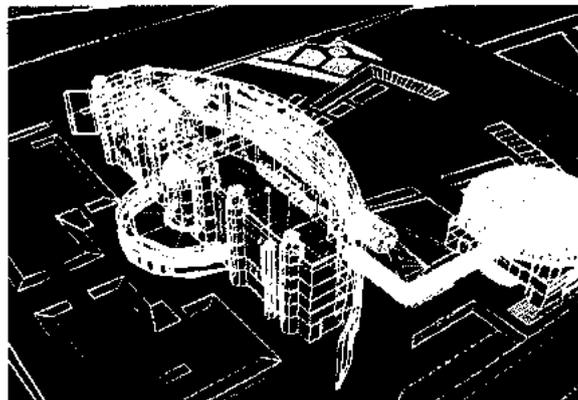
공간구성개념도



배치도



CAD를 이용한 조감도



CAD를 이용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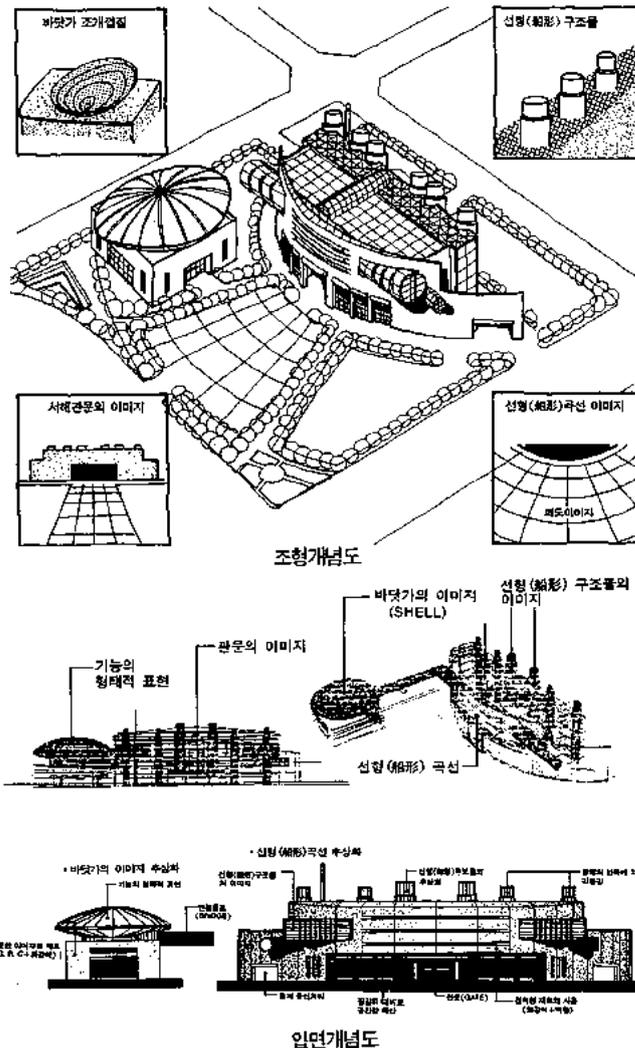


모임을 열 수 있게 하며, 더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민원을 해결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시민들의 장소를 시청이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센터'라는 CONCEPT을 만들어 의회와 집회시설 그리고 시민편의시설을 묶어서 수용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서해안 시대를 맞아서, 군산이 국제적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자본의 투입규모와 시기, 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발전하는 양상은 불확실하기는 하나, 중국과 직결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우리는 감안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산시민이 남다른 시청사를 가져야 되는 이유도 되는 것이다.

이 시청사 대지는 4방향에 도로가 면해 있으나 서남쪽과 동남쪽 그리고 남쪽에서 접근해오는 시선에 모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물의 Facade가 삼방향의 시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U곡면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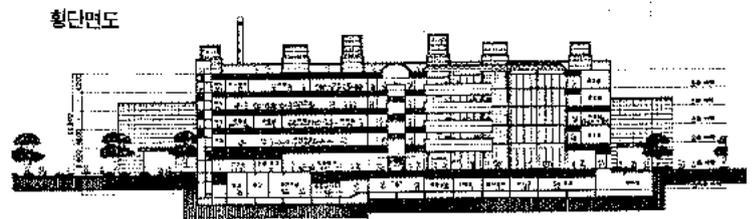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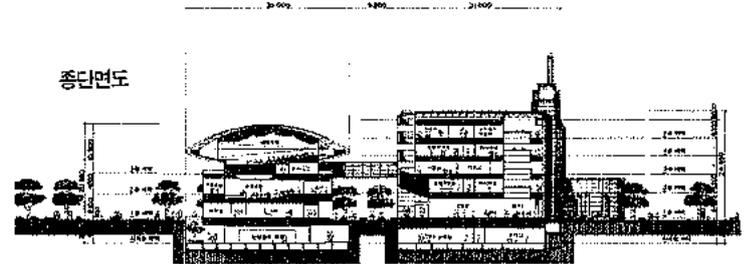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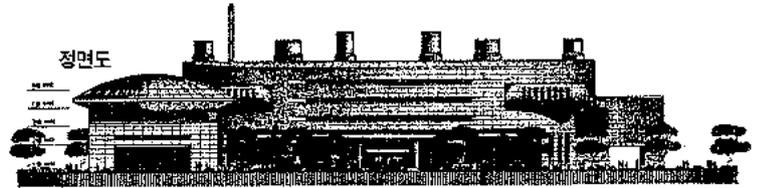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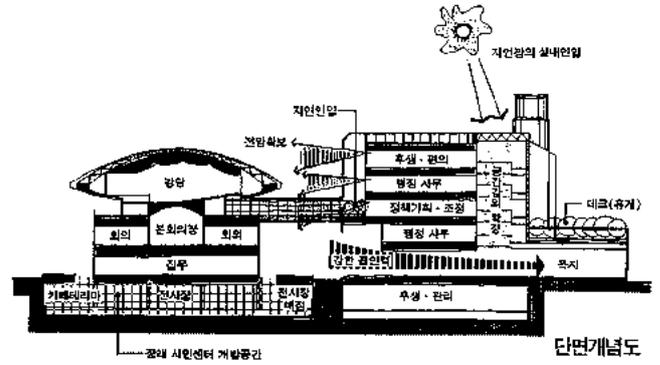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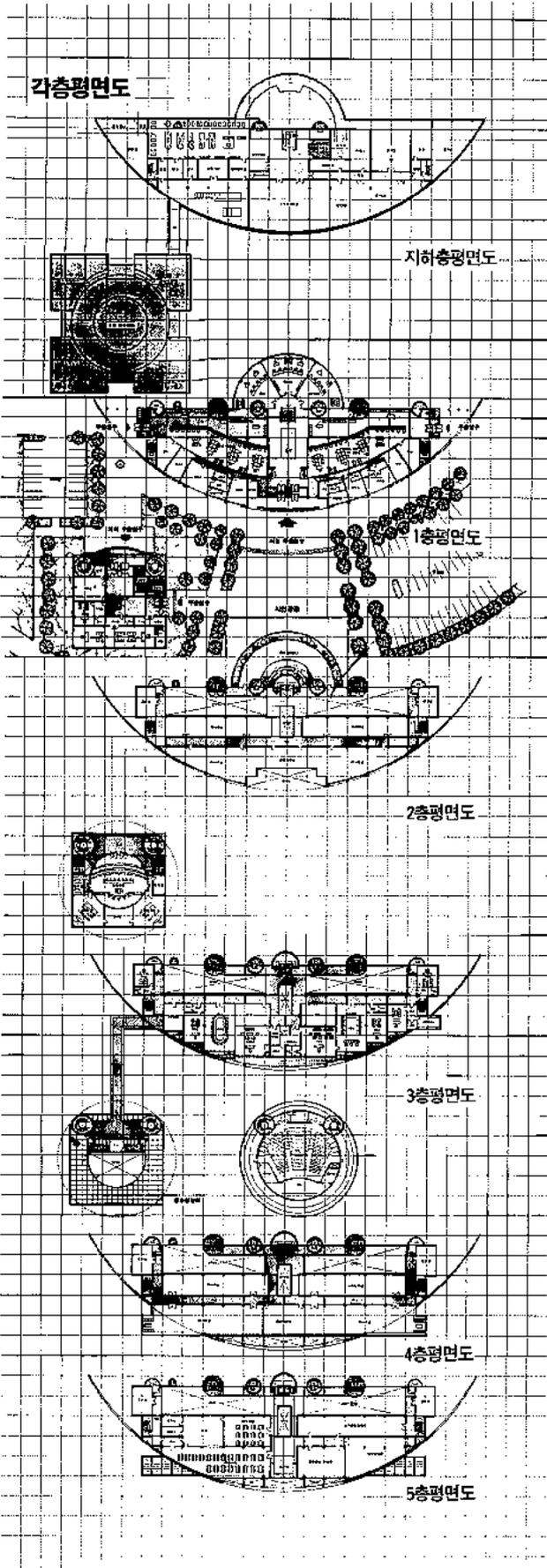
로 조형되는 것이 재미있겠다 싶었다.

대지의 동편은 넓은 도로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어서 속도있는 자동차 속에서도 이 시청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비워놓았다. 다만, 동남쪽 모퉁이에는 시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눈에 띄기 쉽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청사의 대지는 시민들이 자주와서 쉴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형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중앙의 '시민광장'과 함께 동쪽의 공연마당을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모든 차량을 지하로 유도하도록 제안하였다.

또 한가지 군산만이 항구도시는 물론 아니지만 항구에서 흔히 보는 풍물중에서 함선의 Image-예를 들면 곡면이라든가 수직수평의 Cylinder-를 추용해 보는 것이 대지자체에서 나오는 형태와 맞아 떨어질 것같이 생각되었다.

본동의 벽체가 활같이 굽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고 시민센터의 Shell구조는 그것 그대로 해변가의 한마리 조개이다.



2. 배치계획

- 시민의 개방성 극대화
- 다방면의 정면성 확보
- 주거지와와의 연계

3.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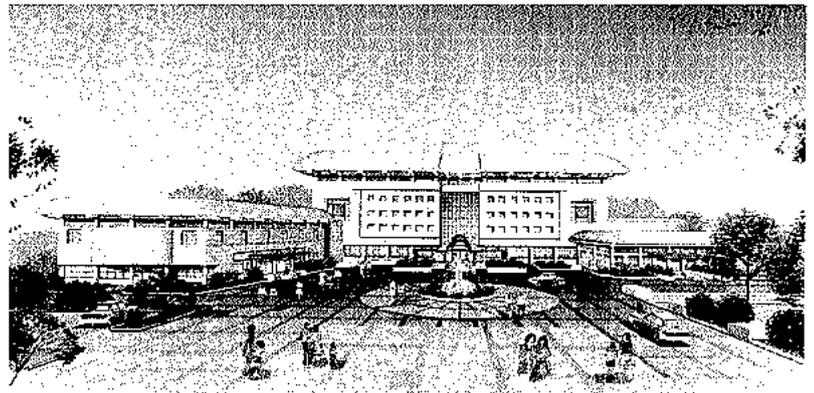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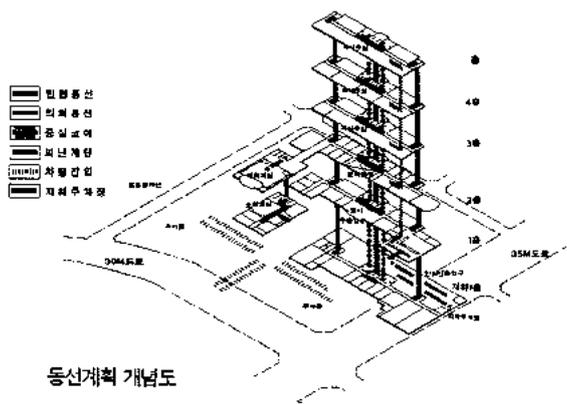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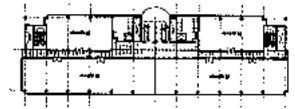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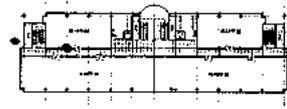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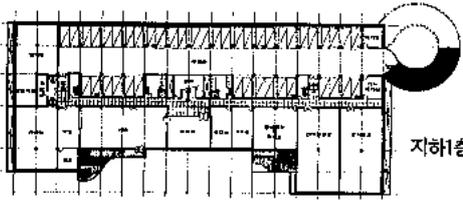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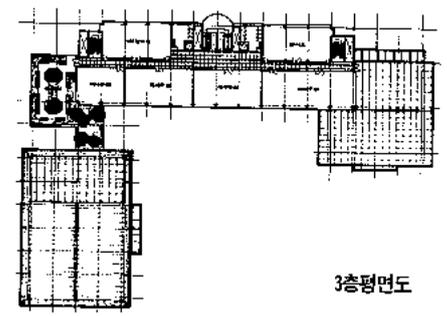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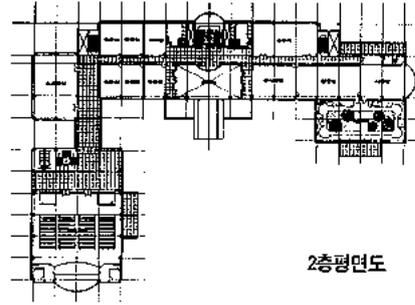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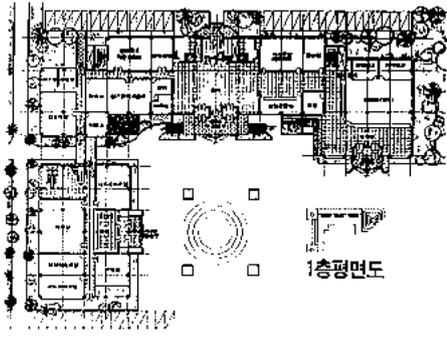
- 업무영역과 서비스영역 구분
- 대만봉사 기능의 극대화
- 휴게공간의 활성화로 업무능률향상

4. 입면계획

-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서의 강연 상징성
- 항구도시의 이미지 추상화
- 군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5. 단면계획

- 공간의 리듬감 강조
- 자연요소의 실내도입
- 장래확장에 대비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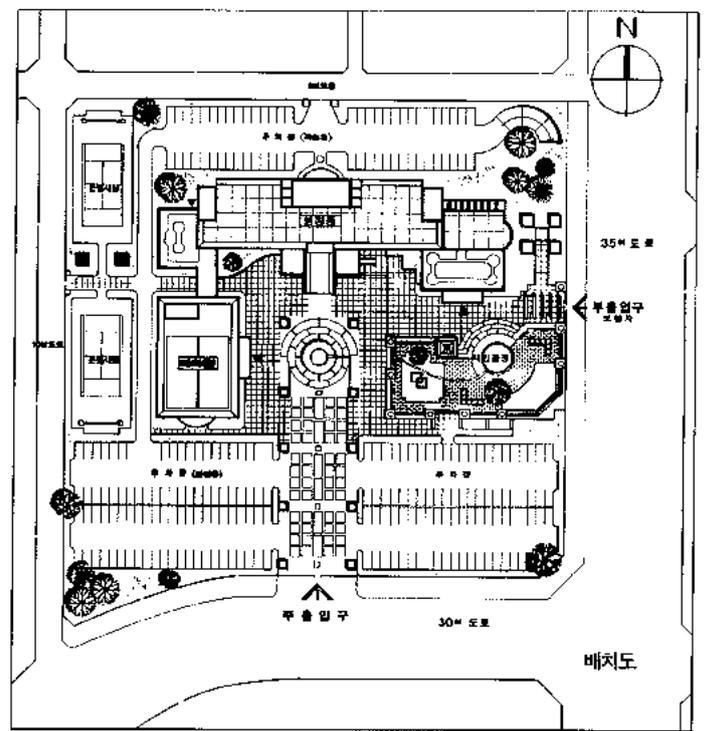


- 주계단을 중앙에 배치하고 양측에 부계단을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성 및 비상시 피난에 대처
- 실기능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방음시설된 Dry Wall 설치
- 1층 부출입구 부분에 연금매장, 이발소, 방재센터 등을 집중 배치하고 양호실은 차량 출입 동선에 인접하여 긴급시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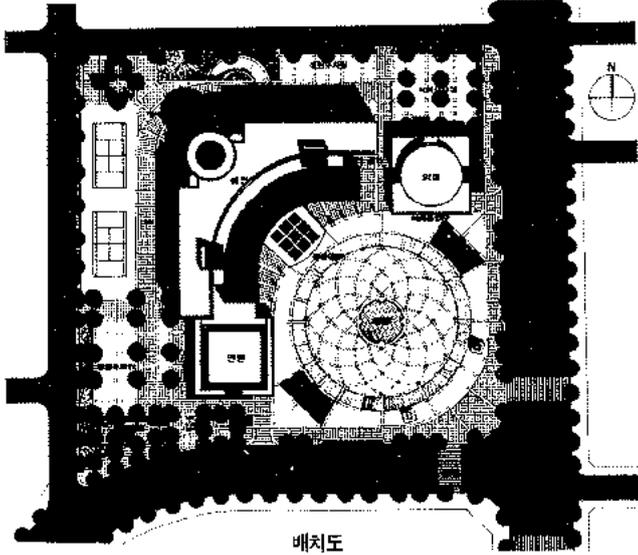
3. 입면계획

- 가. 기본구상
- 도약하는 항구도시 군산의 이미지 표현
 - 민의에 충실하는 공무원상의 구현
 - 도시의 Symbol로서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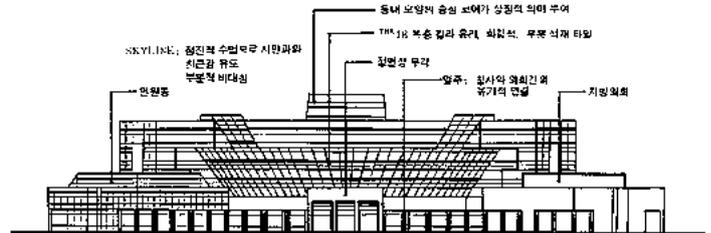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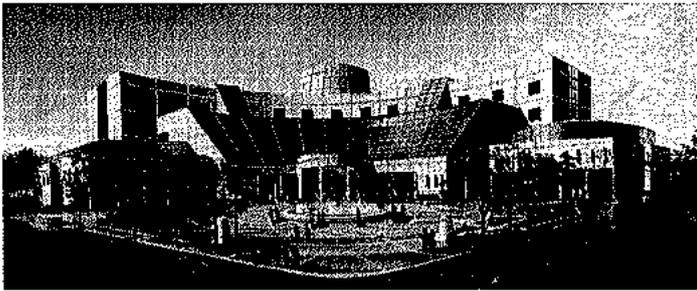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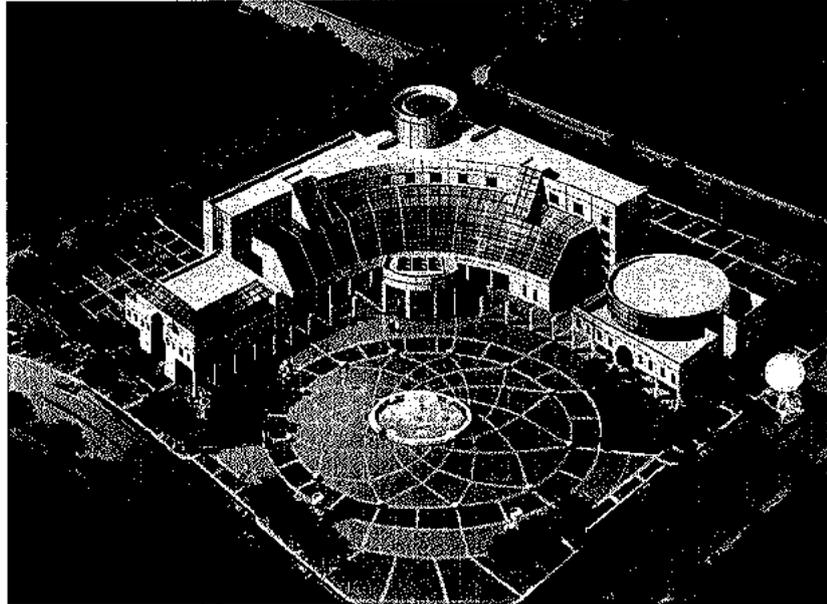
- 성
- 나. 세부계획
- 전통적 초가지붕+배의 모양 상징
 - 의회동의 주디자인에 종속+한국적 이미지 표현
 - 솟을 대문의 이미지
 - 비상하는 군산시를 표현하는 석재부조
 - 격자모양의 전통창 문양
 - 밝고 경쾌한 중앙부분+전통 창살 문양
 - 主 Design의 리듬감 부여
 - 강+중약+약
 - 주출입구의 정면성 부여
 - 출입자를 위한 현관 캐노피 설치



건원건축(대표 : 郭弘吉) 案



배치도



입면계획 개념도

■ 설계개요

대지면적/20,845㎡
 건축면적/4,301.2㎡
 연면적/14,510㎡
 • 지상층 면적 : 11,765.3㎡
 • 지하층 면적 : 2,744.8㎡
 건폐율/20.6%
 용적률/56.4%
 규모/시청사 : 지하 1층, 지상 5층
 의회청사 :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12대

1. 계획개념

고대 이래로 시청사의 변천은 도시와 시민의 정치·사회활동의 중심지로서 광장의 변천과 맥을 같이 했다.

그리스의 아고라, 로마의 포럼, 중세의 피아지 등의 맥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동헌의 앞마당과 같이 광장은 공공건축으로써 도시의 상징인 랜드마크가 되어 시청사 내부의 기능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근대의 시청사 건축에 있어서 광장들은 담장이나 조경도로, 보도와 격리되어 있으며 내부의 전면광장도 주차장으로 전용되어 사실상 도시의 중심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산시청 현상설계에서는 시민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내부기능의

연장은 물론, 도시의 공공광장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차량과의 독립과 더불어 시각적 차단까지도 배재하였으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오픈에 역점을 두었다.

현대 시청사의 성격은 개방적 기능의 적극적 수용과 지역적 특성의 반영, 시각적 경쾌감 추구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추어 시청 자체의 원칙적 개념 즉, 시민활동의 중심지로서의 공공적 공간설계를 하였다.

2. 배치계획

- 축의 설정
- 도심축과 방위축을 주축(Main Axis)으로 설정
- 토지이용 계획

- 현 도심과 주변도로를 최대한 반영

- 기능별로 시청사, 의회청사, 시민광장, 주차장 휴게공간, 체육시설의 6개 Zone으로 구성.

- 장래의 증축을 고려하여 외부 및 청사내부 즉 동선처리

- 청사, 축·후면에 충분한 조경면적 및 주차장 확보(개방된 옥외공간 확보)

- 시민광장을 둘러싼 건물군으로 광장에서 건물로의 간결한 동선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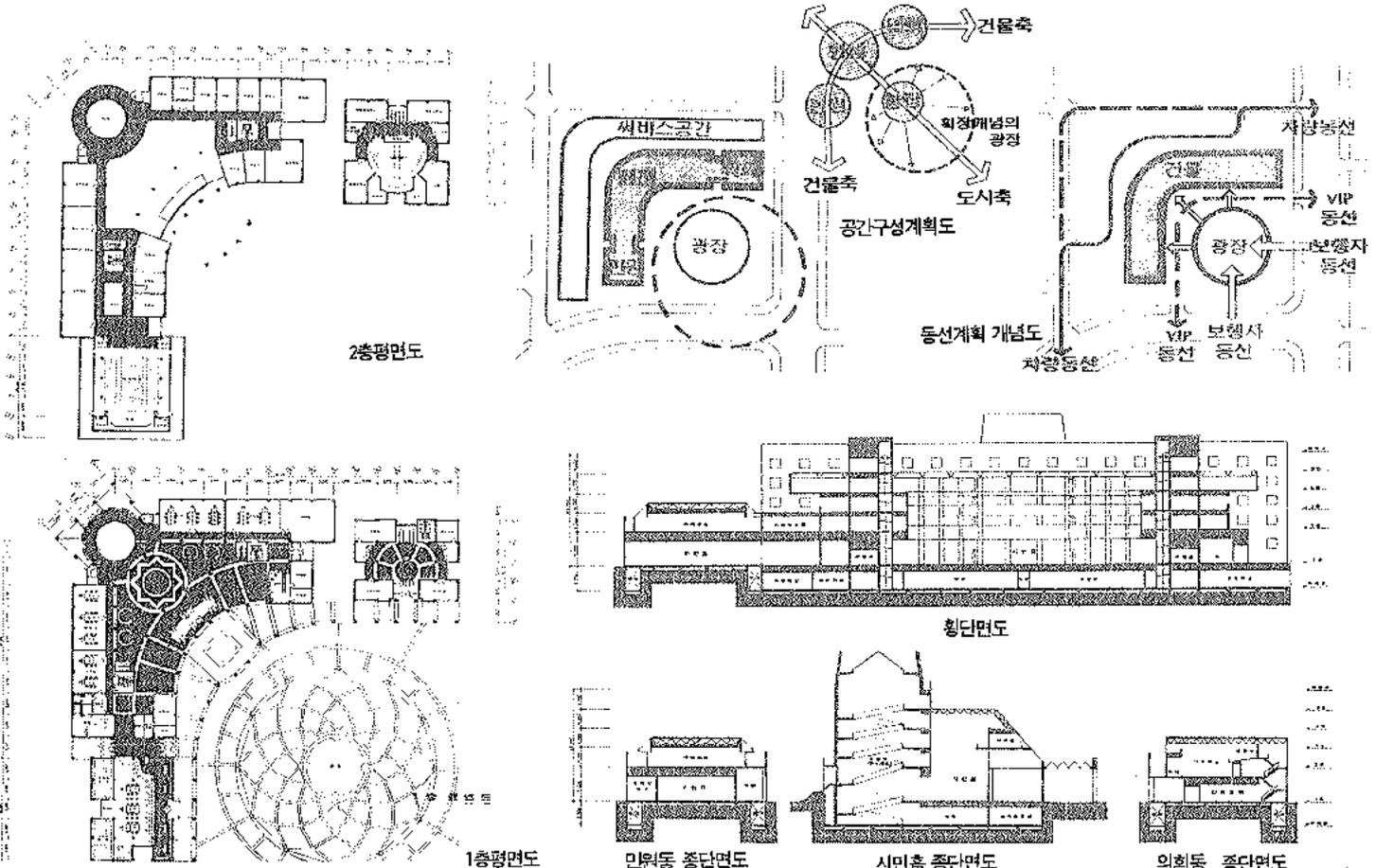
• 진입

- 현도심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축선상에 중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공간의 변화 및 위계를 반영

• 공간구성 개념

- 전체 배치를 도심축에 순응

- 시청사, 의회청사를 기능상



독립성을 위해 분리배치
 -부지형태별 주변 도로현황을 최대한 활용
 • 시민광장
 -청사의 중심적 옥외공간
 -대규모 집회, 축제, 행사기능 수용
 -비상 주차장으로 활용
 • 동선계획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분리 원칙
 -보행자는 시민 광장을 통한 진입 유도
 -버스정차장을 시민 광장 전면 위치로 제안
 -주차장은 민원인 차량과 직원 서비스차량 동선으로 구분 설치
 -시민광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서비스 차량 및 V.I.P.용 차량의 제한적 통행이 가능토록 주차 동선과 연결고려

3. 평면계획
 가) 내부동선계획
 • 시청사는 민원 업무기능, 행정사무기능, 회의, 집회기능, 후생복지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체계화하여 단순·명쾌한 동선처리
 • 기능별로 독립된 출입구 설치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적 출입이 가능
 나) 공간계획
 ○시청사
 • 실내공간의 채광 및 조망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남향 배치
 • 주 출입구 로비공간을 5층까지 Open 시켜 개방감 부여
 • 기구(조직)의 변화 및 증설에 대비한 실기능의 가변성 부여
 -경량 칸막이 벽채택
 • 동선이 집중되는 공간에는 완

충공간 확보(홀, 테라스)
 • 비상시(대피소) 용도 및 주차 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지하공간 설치
 • 유사 기능실별 집약화에 따른 층별 공간구성-연관 업무간의 동선 단축.
 •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후생 복지 시설 확보
 ○지방의회
 • 넓은 홀을 중심으로 실들을 배치하여 명확한 동선 처리 유도
 • 집회 및 사무기능을 2층에 둬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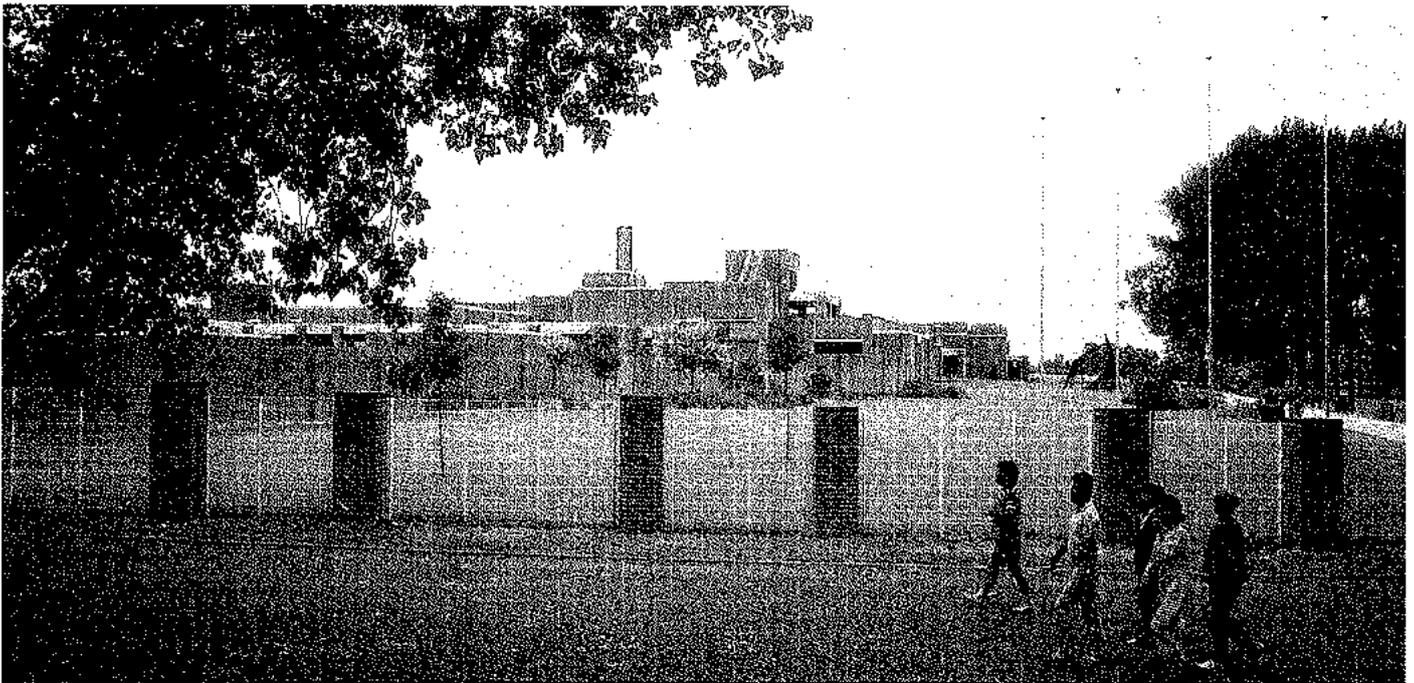
4. 입면계획
 • 향구도시 군산의 상징적 이미지인 등대모양의 계단을 중심으로 변화있는 level로 친근감 유도

• 단순한 권위주의적 입면을 배제하고 Mass의 기능 배분에 따른 시각적 안정감 추구
 • 전면부를 투명한 유리로 처리하여 확장된 공간감을 줌과 동시에 주 출입구를 부각
 • 기능별로 별도 처리를 하고, 전체적 이미지는 한 덩어리를 표현(상징적 열주)
 • 공공청사의 이미지 표현을 위한 개구부 디자인

5. 단면계획
 • 로비 부분을 5층까지 Open시켜 건물내부에 개방감 부여
 • 쾌적한 사무공간을 위한 적절한 천장고 설정(일반사무실 : 2.4M, 민원실 : 3.0M)
 • 점진적 공간크기의 변화와 Level변화로 다양한 내부 공간 창출

롤랑 시무네의 빌뇌브다스크 소재 현대미술관

Roland Simounet's Museum of Modern Art of the North



■ 서

1927년 알제리에서 출생한 롤랑 시무네(Roland Simounet)는 1942년 알제리 건축대학에서 수학한 후 파리에 활동한다. 1952년부터 자신의 작품을 실현하였고, 1953년 CIAM의 회원으로 역상 프로방스(Aix-en-Provence)에서 개최된 '주거헌장'(la Charte de l'Habitat)에 관한 제9회 회의에 참여했으며, 1954-55년 알제리시의 도시계획 고문, 1955-57년 알제리 '엘 아스남' 소재 알베르 까뮈(Albert Camus) 문화센터, 1956년 알제리의 테페순 교회를 실현하였고, 1958년 알제리 전쟁 기간동안 알베르 까뮈의 친구들과 '시민구조 위원회'를 창설한다.

1961년 르코르뷔제와 만나게 되고, 1963년 프랑스 파리에 개업하여 수많은 주거계획과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다. 1972년 르코르뷔제 재단이사로 임명되고, 1973~76년 에브리 신도시에 100호의 주거단지, 1973~78년 그레노블 건축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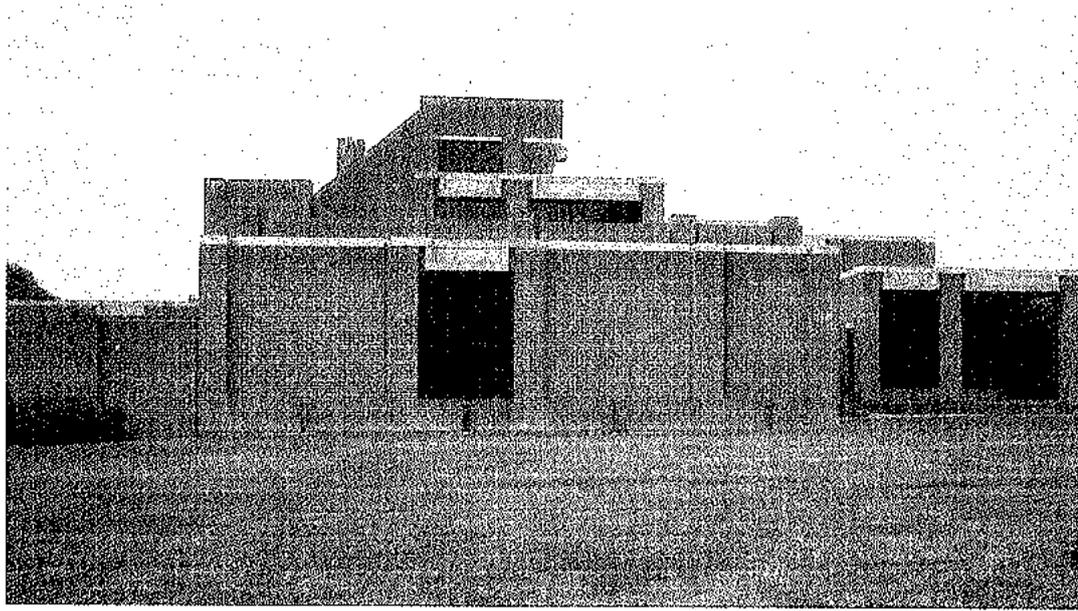
朴賢燦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렌
by Park, Hyun-Chan

1974~79년 느무르 소재 선사시대 박물관 현상설계 당선과 실현, 1976~82년 파리소재 피카소 박물관 현상설계 당선과 실현, 1978-83년 밀 동쪽 신도시(빌뇌브다스크) 소재 현대미술관 현상설계 당선 및 건설, 1976~86년 생드니 바실리프 집합주거, 1977년 그랑프리 수상, 1982년 로마건축 아카데미 회원, 1985년 피카소 박물관으로 '은 삼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의 작품에서 일관되는 주제는 단순·명료한 구조와 시공, 세밀한 기능의 배분, 그리고 거칠고 부드러운 재료, 짙고 비어있는 공간의 단순한 대조같은 것으로 빌뇌브다스크의 미술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빌뇌브다스크(Villeneuve d'Ascq) 소재 현대미술관(1978~1983)

본 미술관의 건축주는 '릴의 도시공동체'로 정부에 기증한 뒤티렐(R. Dutilleul)과 마쉴(J. Masurel)



- ① 미술관 전경
- ② 서측 전경
- ③ 1-2층 평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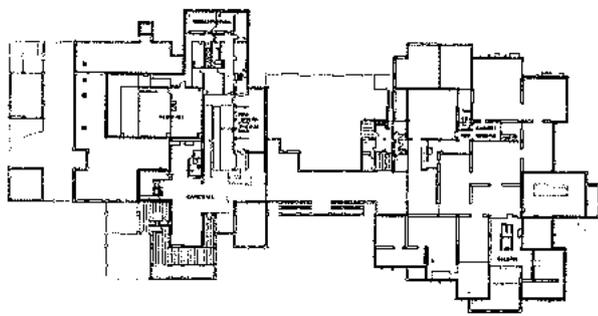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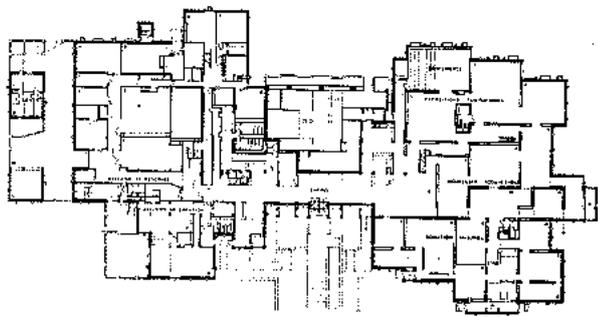
의 입체과 작품수집의 전시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도시중심부와의 격리로 인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입지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본 건물의 실현에 따르는 도시생활의 활력부여와 다양한 행태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되나, '재인식되고 재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미술관이 존재성을 상실'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건축가가 설계시에 자연에 순응하고, 접지성을 높이려면 시도하여 전체건물 매스가 저층으로 이미 도시화된 평원위에 펼쳐져 있다. 상당히 거대한 저층의 매스이지만, 수직·수평적으로 적절히 분절되고 미묘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수의 동질적인 건물이 군집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동쪽부분의 삐죽삐죽 솟은 볼륨과 서쪽부분의 망루와 채광창에 의한 고저차를 통하여 매스의 변화와 용도 및 공간의 다양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7천5백㎡ 면적의 미술관은 두개의 부분으로 분할되는데, 서쪽으로 집객과 서비스 기능인 도서관, 큐레이터 사무실과 서비스, 남쪽에 면한 테라스가 있는 카페, 창작실, 복원실, 보관소 등이 있고, 동쪽은 미술품 전시부분으로 마쉬렐 기증실, 신소장품 전시실, 기획 전시실과 강당이 있다. 동쪽과 서쪽의 두 기능을 연결하는 중앙부에는 탈의실, 서점, 만남의 장소, 입구홀 갤러리가 조각공원이 되는 내부정원에 인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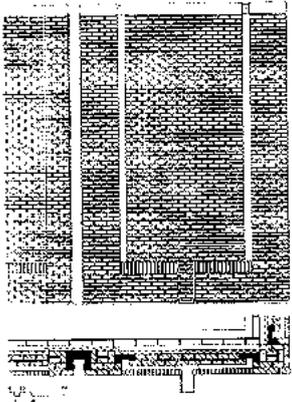
마쉬렐 기증실은 다른 실과는 다른 규모로 세분되게 설계하였고, 남쪽에 면한 상부의 채광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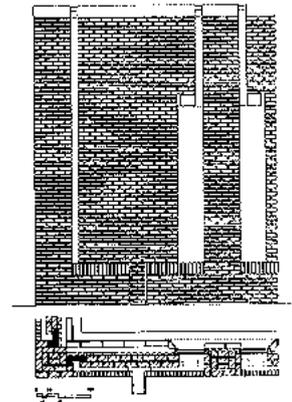
3

의해 빛이 상부로부터 투과되어 동쪽과 서쪽에 빛의 효과를 다양하게 해주고 있다. 세분된 실들은 세계의 휴식공간과 외부에 폭넓게 개방된 세계의 로지아를 수반한다. 내부공간 볼륨이 보다 무게있는 신소장품실과 기획전시실은 북쪽에 면한 일련의 채광창에 의하여 보다 변함없고, 평범한 빛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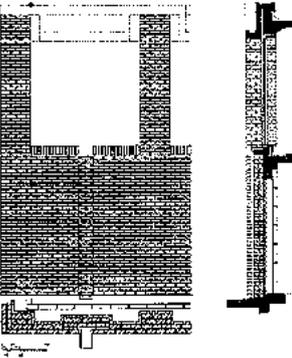
프랑스의 건축가 자끄 뤼캉(Jacques Lucan)의 비평에서, 본 미술관이 구조와 디테일 측면에서의 합리주의를 높게 평가하지만, 건물전체 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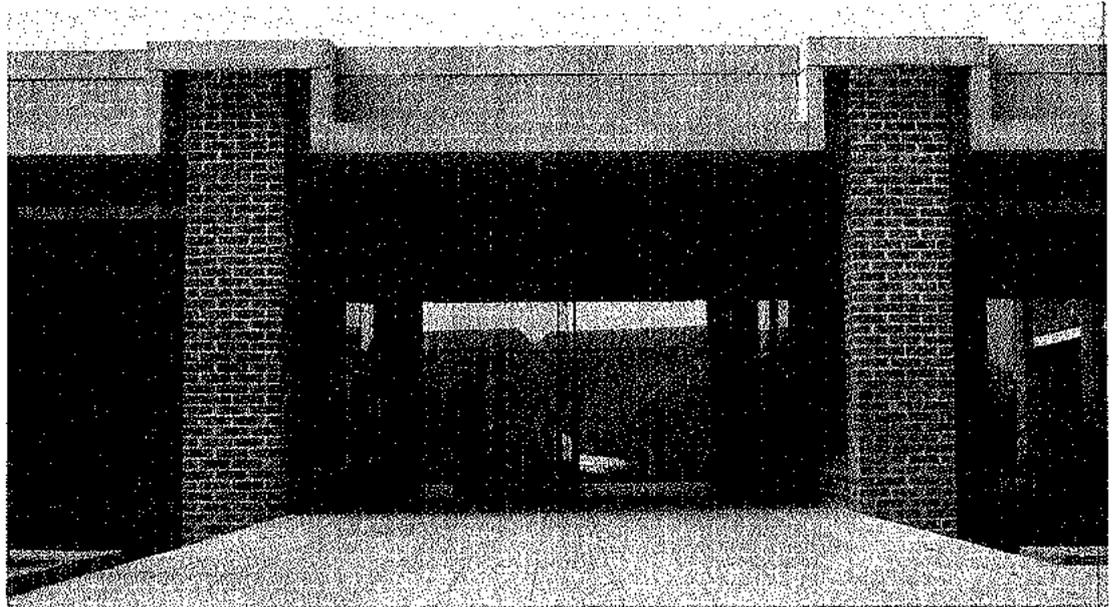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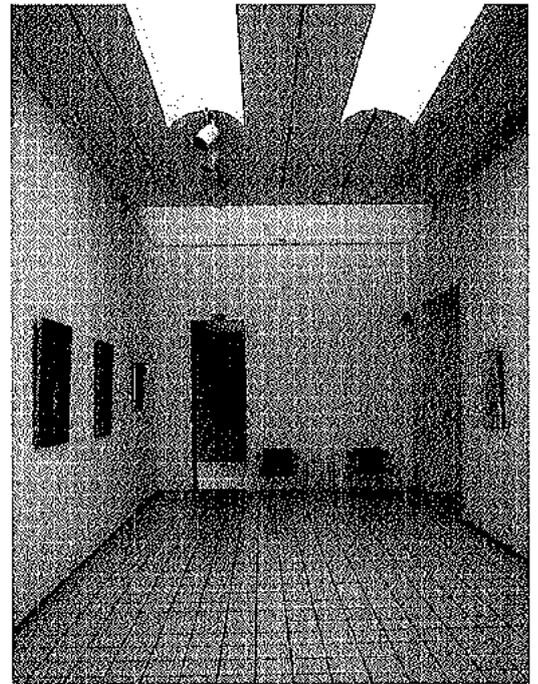
7

내부공간의 연결에 있어서는 매우 회화적이고, 기본구성요소(기둥과 칸막이벽)의 단순함과 그들 조합의 복잡함 사이에서의 단절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여, 미술관이 청명함이나 '공간적 명증'은 얻지 못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넓은 대지에 저층으로 확산되어, 공간의 함축성이나 긴장감은 다소 결여되었지만, 매우 미묘한 공간의 연결과 이동하면서 접하게 되는 예측못했던 풍부한 공간의 지속적인 창출 그리고, 매우 다양한 빛의 유희와 현저한 조망을 통한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등이 정도가 다소 넘쳐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었으나, 절제된 구조와 가식이 없는 실내마감등의 덕분으로 교훈적이며 바람직한 건축공간적 이미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R. 시무네는 본 계획안의 수행에서 의도한 주제를 '운물있는 구도, 한가운데에 일치하는 질감(7십5만개의 벽돌 사용), 통합성과 척도의 탐구'로 표현하였다. 본 건물은 기본 구성요소인 벽체, 칸막이벽, 기둥이 벽돌로 모든 축정의 본래 모듈을 규정하고, 전시실의 천장이 콘크리트 볼트로 덮여져 구축된 벽돌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체로 특히, 벽체의 건립과 빗물처리가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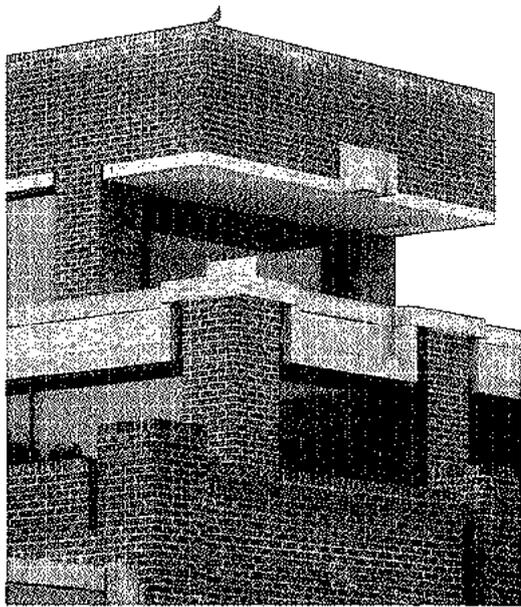
R. 시무네는 물의 흐름, 테라스의 빗물, 넘쳐 흐르는 물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는 항상 그것들을 모아 흐르게 하고, 또한 벽체를 가다듬고, 깊이와 분절을 주고, 표면을 제어하며, 것처럼 범위가 정해진 더러운 때를 조절할 수 있도록 '수로'를 제공하는 것을 시도한다." 상세도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사진 4>에서 벽돌로 된 벽체와 기둥사이의



8

분절을 견고하게 만드는 콘크리트 종석과 두개의 기둥을 분리시키며, 테라스의 빗물을 빼낼 수 있는 벽돌 한장 폭의 수로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넘쳐 흘러내리는 물을 수거할 수 있는 수평 홈통도 볼 수 있다.

<사진 5>는 수직창이 있는 벽체의 상세도로, <사진 4>에서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종석과 홈통이 표현되고, 수직창의 틀은 박혀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진 6>에서는 벽체 중간에 자리잡은 수직틈새가 작은 수평 홈통에서 흘러오는 넘치는 물을 회수한다.



9

〈사진 5〉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창틀은 보이지 않는다.

■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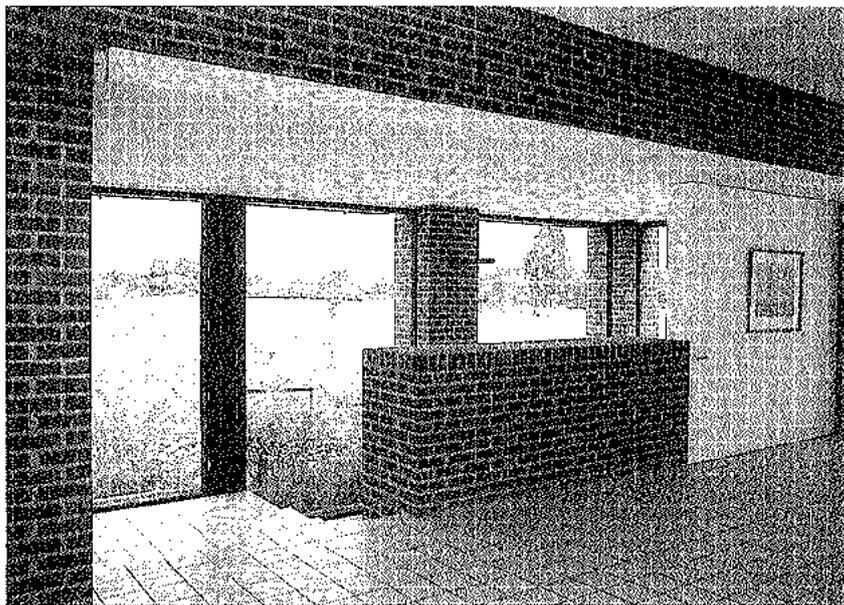
롤랑 시무네의 끊임없는 작품활동과 함께 평가되는 완숙을 더해가는 구조와 재료에 대한 깊은 해석이 그의 기술적 통찰력과 디테일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긴 수명이 보장되고, 건축물을 소모품으로서가 아니라, 영원성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알바 알토’가 언급했듯이 ‘문제는 건물이 세워졌을때 얼마가 들어갔는가가 아니고, 앞으로 50년후까지 얼마나 들어가는 가이다’⁵⁾를 상기할 수 있겠다.

R. 시무네의 일련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난해하거나 과장이 없으며 또한 유행따위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의 건축철학 추구와 단순·명료하며, 절제되고 담백하며 매우 도덕적인 결과물을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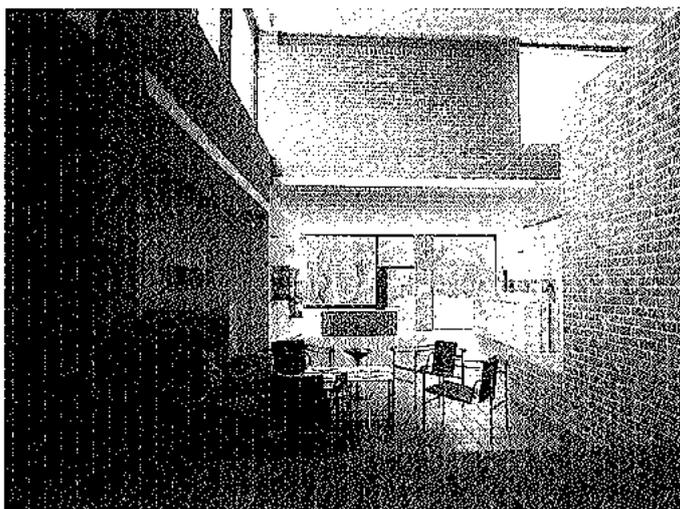
반면에, 엄청난 저술활동을 수반하면서 최근 유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나 해체주의의 피상적 복제들이 우리의 건축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 AMC No1 Mai 1983
- La Modernité Un Projet inachevé, Moniteur, Paris 1982
- Architectures en France, Modernité, Post-Modernité, Centre Georges Pompidou / CCI, Paris, 1981



10



11

- 알바 알토 작품집 제 3 권
- Techniques & Architecture N°368 Oct-Nov. 1986
- AMC No10, No14
- Guide, Architecture en France 1945-1983. AA, 1983
- UIA-International Architect N°10, 1983

註)

1. Jacques Lucan 'Une Morale de la Construction' AMC N°1, mai 1983
2. Ibid
3. Roland Simounet, 6 September, 1982, Lar Modernité Un Project Inachevé. P.126
4. Jacques Lucan, AMC N°1
5. 핀란드 텔레비전(1972년 7월)을 위한 교란·시르즈 박사와의 대담중에서, 알바 알토 작품집 3권

- ④ 개구부없는 벽체의 디테일
- ⑤ 소폭의 수직 창이 있는 벽체의 디테일
- ⑥ 상부창이 있는 벽체의 디테일
- ⑦ 미술관 입구
- ⑧ 전시실 내부 분위기
- ⑨ 망루
- ⑩ 마쉬렐 기증실에 있는 세계의 로지아중 하나. 외부의 훌륭한 조망을 부여하였다.
- ⑪ 서랍

東 歐 紀 行

Travels of East Europe

崔昌奎/건축사사무소 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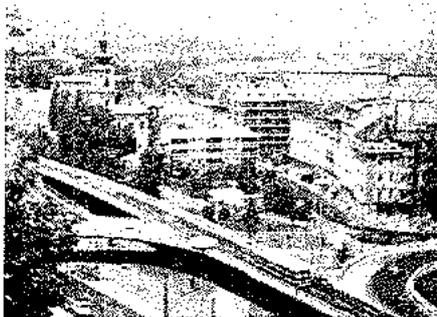
by Choi, Chang-Kyu

◆ 헝가리

8월 14일(火) 쾌청. 아침 11시 15분에 도착해서 Stadion호텔에 투숙했다. Stadion호텔은 스포츠센터 부근에 있어 6층의 現代式 建築이 유고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호화로웠고, 완벽한 西歐式 호텔이었다. 어쩌면 같은 共産國家이고 이웃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될 정도로 유고에 비하면 헝가리는 生氣가 넘치고 國民들의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요 관광객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1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매점에서 지도를 살펴보고 택시를 잡아 변화가로 갔다. 과연 서베를린이나 파리에 못지 않은 분위기이다.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 물어도 저 유명한 民族音樂家 리스트를 모른다는 점이고 '동상은 어디에 있느냐'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리스트는 우리 東洋에서 헝가리 사람들보다 더 알려지고 그의 音樂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즐긴다는 것인데 어쩌된 일인가?

집시음악과 포도주로 알려진 東洋民族의 나라 헝가리. 배가 고파서 國名을 헝가리라고 했는가? 그들은 "지구를 神의 모자라고 한다면 헝가리는 그 모자에 장식한 꽃"이란 뜻이라고 한다. 地政學上 그 위치가 이웃 오스트리아, 西獨 뮌헨 등에 가까워서 가장 먼저 自由의 물결이 들어온 나라 중의 하나이고 그 언제인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이란, 宗主國 蘇聯에 항거할 때 부다페스트에서도 義舉가 일어나서 全世界를 놀라게 하고 그 당시의 新聞엔 어린 學生들까지도 蘇聯 전차에 맞서 싸웠다는 逸話を 남긴 곳이기도 하다.



- 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 ② 영웅의 광장
- ③ 애국시인 Mihaly Vörösmarty

國土의 면적은 9만여km²이지만 人口 1千萬을 약간 넘는 小國이면서도 文化藝術은 상당 수준에 있었고 그들은 조상이 아시아인이란 것을 자랑하고 있고 사람들의 얼굴 모양도, 특히 여자들의 얼굴은 영락없는 아시아인들이다.

다뉴브江이 首都의 中央을 흐르는데 한쪽을 Buda라고 하고 다른 쪽을 Pest라고 한다. 다뉴브江엔 現代式的 많은 橋脚이 걸려 있고 Buda쪽 구릉엔 옛 王宮이 있으며 博物館과 각종 記念碑나 조각들이 많고, 古色이 창연한 城郭이 現存해 있다. Pest쪽은 주로 商街가 번창해서 인파가 들끓는다.

국립박물관, 東洋미술관, Buda王宮, 국립공원, 국립경기장과 수많은 숲이 우거진 언덕과 舊敎의 聖堂들, 도도히 흐르는 다뉴브江은 묵묵히 유럽의 風雲과 歷史를 지켜보며 말없이 흐르고, 江上엔 많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었다. 전철과 시내 트롤리버스는 특색 있고 길손의 흥미를 자아낸다.

맥도날드햄버거가 상륙해서 人山人海를 이루며 일렬로 서서 기다린다. 우리도 점심으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사들고 다뉴브강변 의자에 앉아 건너편 Buda왕궁과 언덕 위의 독립기념상을 보면서 따뜻한 햇볕에 감상적인 旅行人이 되었다. 마침 東洋人 學生 7, 8명이 떼를 지어 지나가는데 한국말을 한다. 나는 놀라서 한국 학생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들도 놀라서 "어마 할아버지 한국인인가요"하면서 다가온다.

우리나라에선 금년에 배낭族으로 世界各國으로 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2만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도 헝가리로 오는 기차속에서 서로 만나 부다페스트에선 8명이 단체로 구경을 하고 오늘밤에는 각기 行先豫定地로 떠나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國의 각 대학교 학생들로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하기에 學校와 科를 물어보았더니 그 속에 弘大 建築科 2學年 學生도 있었다. 내가 學校에 나간단니까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모두가 반바지에 룩색을 지고 있다. 전형적인 配낭族 차림들이다.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이런 일을 해야 했는데 政治하는 사람들이 安保니 뭐니해서 學生들의 旅行을 禁했던 것으로 금년부터 시작된 모양인데 늦은 감은 있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旅行上의 주의사항이나 요령을, 특히 헝가리에서는 집시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미리 조사해 가지고 다니던 歐羅巴各國의 우리 公館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를 하나씩 사서먹이고 헤어졌다.

대견스러웠다. 떼를 지어 조잘대며 손에 地圖들을 들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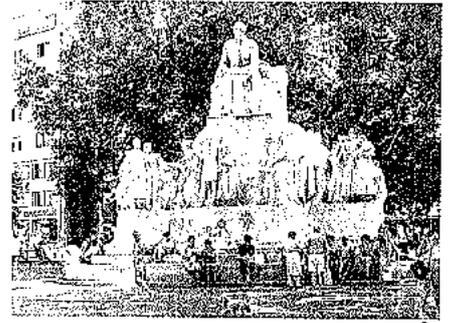
헝가리에서, 그것도 다뉴브강변에서 만나다니 가슴 뿌듯했고 마음이 든든한 것 같은 충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筆者가 이때까지 50여개국을 旅行하면서 한번도 우리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外國의 학생들만 수없이 만났던 經驗에서 이전 世界 到處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壯快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다 國力이란 것인가 보다! 그들은 各國의 人文과 經驗, 歷史, 文化 등 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視野가 넓어지고 자기 位置를 設定할 수 있다는 것과 젊음의 낭만을 알게되는 것이다.

헝가리란 그 國名부터가 낭만적이다. 그 나라의 民族音樂家인 리스트의 헝가리狂詩曲, 幻想曲 등은 우리들의 귀에 낯익은 곡들이고 어딘가 哀愁에 찬 그런 곡들인 것은 다 알고 있는 터이다. 하두는 호텔 대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새빨간 짧은 조끼를 입은 5인조 室內樂團이 예의 헝가리음악을 손님들 사이로 다니면서 演奏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박수와 돈을 던져주었다. 이번 여행중 가장 旅情이 넘치는 저녁이었다. 특히 여러 곡이 연주되다가 筆者도 잘 알고 증얼거리던 Hungarian Love Story No. 5를 연주할 때는 박수가 요란했다.

다음 몇 곡이 연주된 다음 느닷없이 日本曲인 「荒城의 달」과 「사쿠라 사쿠라」라는 곡이 연주되어 나는 기분이 언짢고 不愉快했다. 그때 옆의 아내가 “우리 음악을 아느냐고

물어보라”고 한다. 나는 쉬는 시간에 樂團長을 불러서 韓國曲을 어떤 것이든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즐거웠다. 당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달라. 귀국하면 우리 곡의 樂譜를 보내 줄테니 여기서 연주하면 日本曲보다도 더 훌륭할 것이고 우리 곡은 헝가리곡과 비슷한 점이 많으니 쉽고 어울릴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는 고맙다고 하면서 곧 그 자리에서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었다. 나는 속으로 「荒城의 달」나 「울밑에 선 봉선화」, 「아리랑」 등을 이들이 室內樂으로 編曲해서 연주하면 後日 韓國人이 이 호텔에 들리면 그런 음악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日記冊 속에 간직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 헝가리로 이제부터 旅行하는 韓國人에게나 外國 觀光客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一舉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헝가리! 그들의 조상은 아시아인이다. 세계의 Magyar인 1천4백만중 약 1천만명이 헝가리에 살고 있다고 한다. Magyar인은 원래 우랄산맥 동쪽에서 遊牧을 하던 流浪族이었다. 아르파드추장에 이끌려 시작된 民族의 大移動 때 이곳에 定着했고, 9세기에 헝가리 평원에 定着, 11세기에 王國을 건설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獨逸에 合併되기도 했고 50만 이상의 戰死者를 낸 용맹한 아시아의 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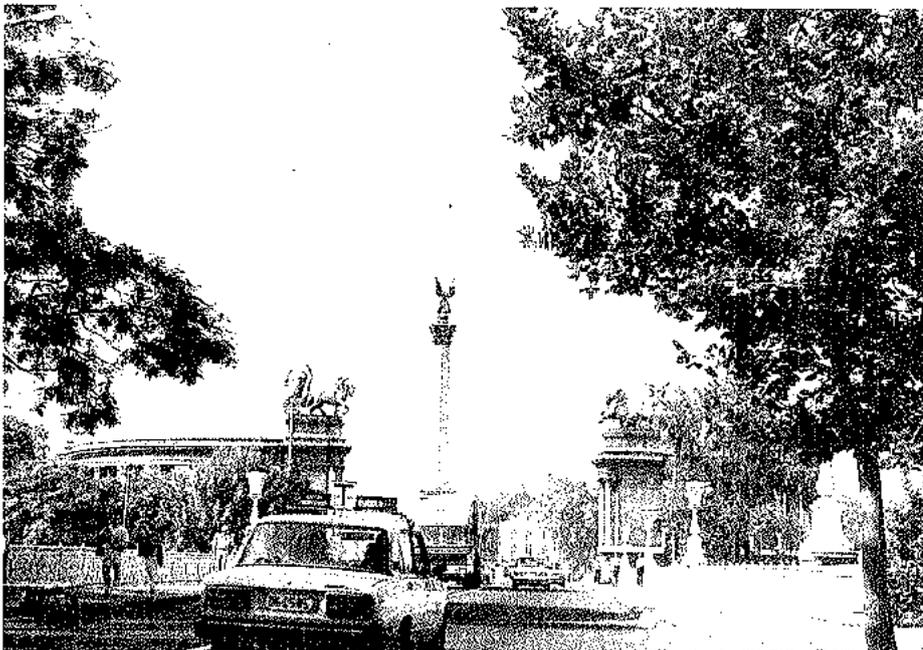
牧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民族이다.

1956년에는 國內 動亂이 있어 2개월간의 內亂을 겪었으며 蘇聯에 항거해서 싸우기도 했다. 90% 이상의 國民이 카톨릭신자이고 中世 이후 거대한 성당의 건축이 대단했고 현재의 부다페스트의 스카이라인도 성당들의 돔과 지붕선으로 이루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건축은 한때 동로마제국 때부터 Neo Gothic Style이 많고 共產國家가 된 이후론 自由陣營과의 斷絶로 建築文化的 표정은 전혀 교환되지 못했고, 그래도 東歐圈에서는 가장 개방된 편에 속해 現代建築 중에는 제법 西歐의 現代建築을 연상케 하는 것이 시내에 가끔 눈에 띄인다.

도시는 활기에 넘쳐 흐르고 시민들의 복장에도 色彩感이 농후하다. 가끔 거리의 모퉁이엔 초상화 그리는 거리의 畫家들이나 젊은이들의 哀愁된 음악과 긴 차마를 휘날리는 여인의 춤추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포도주의 名產地이고 호 맥과 사탕무우나 옥수수도 다뉴브강변의 평원에서만 난다. 도처에 西歐 各國이 다 같지만 一술이 우거지고 광장이나 공원이 많아서 都市空間이 넉넉한 것같이 보인다. 전철과 트롤리전차와 버스, 택시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 나라의 出入國도 역시 각 共產國家와 동일하다. “IBUSZ”가 유일한 관광기관이다. 모든 외국인 출입국은 “IBUSZ”를 거쳐야만 한다. 나는 서울에서 비자를 얻어가지고 왔기에 아무런 불편도 없었다.

멀리 우랄알타이산맥을 넘어 東方의 草原에서 Scythai 문명에 젖어 있던 東洋族 Magyar인들이 이곳 다뉴브강변의 平原에 정착해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나무그늘이나 집 문 앞에서 멀리 東方의 하늘을 쳐다보며 색 실로 繡를 놓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東洋의 情趣 그대로이고 길손을 감상에 젖게 하는데 충분하다.





④

現代建築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으며 유고와 같이 蘇聯의 構成主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알팍한 사이 비포스트모던과도 같은, 構成主義를 이해 못하는 우리 눈에는 어색하고 西歐의 흉내같은 일회용 비닐우산 같은, 요란하고 괴상한 조형의 現代建築도 눈에 많이 띄었다. 역시 동로마제국시대부터 건축한 중세기의 규모가 거대한 성당이나 왕궁, 國會議事堂, 城郭들은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고도 남는다.

헝가리는 체육에 열을 내고 있다. 筆者가 留宿한 호텔이 스포츠센타의 부근이어서 아침 산책에 체육시설을 돌아보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교육에 관한 조각들, 시설 규모의 거대함, 각종 Monument들의 藝術性, 광활한 잔디밭,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에 대한 관심, 특히 小學校의 體育熱은 미래를 향한 國民 體育 教育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다.

◆ 독일

8월 16일 4일간 정든 부다페스트를 떠나서 Lufthansa機로 뮌헨에 도착했다.

다음날 西獨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의 長男아이가 留學중에 있어 아내가 꼭 만나고 가자고 해서 들렀는데, 學位論文의 최고의 段階인 세미나(Tubingen)에 참석중이어서 토요일 아침에야 올 수 있다며 그의 代父인 김씨가 일부러 뮌헨에 와 자기 차로 시내 各處를 구경시켜 준다고 했다.

나는 뮌헨은 수차 왔다갔으니 「압록강은 흐른다」를 쓴 李彌勒씨의 무덤을 찾기로 하고 꽃을 사들고 郊外로 나갔다. 김씨도 그 위치를 몰라서 물어 물어 市立 公園墓地에 가서 용케도 찾아냈다. 빈약한 墓石엔 그의 恩師인 獨日人 敎수가 어실픈 漢字로 李儀景이라고 썼다고 한다. 그 아래에 『Dr. Mirok Li 1899~1950』이라고만 적혀 있는 빈약한 묘지였다. 담쟁이가 碑石을 덮고 있었고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異域萬里 他鄉에서 독어를 공부, 독일어로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을 썼고, 全惠隣 등 개화시기의 新女性들과 함께 문학과 미술을 공부한 모습을 생각하니 아득한 옛 이야기만 같다.

그들이 자주 모여서 鄉愁를 달궜다는 레오 파드街의 Sea Rose란 Cafe에 들러서 代父 김씨와 아내는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슈바빙

일대의 그 옛날 그들이 배회하던 거리를 우리 일행도 비를 맞으며 걸었다.

代父가 다니던 뮌헨대학 식당에서-방학중인데도 外國학생이나 內國학생들 대부분이 남아 공부하고 있었다-代父의 학생표로 점심을 먹었는데, 성균관대를 졸업한 梁君과 서울대를 나온 金君도 우연히 만나서 代父가 소개와 인사를 시켜주었다. 특히 梁君은 李彌勒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이북에 아직 있다는 것, 사위들이 서울에 있다는 것, 全惠隣의 죽음은 자살로 되어 있지만 凍死였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 유학생들과 교민(몇 안되지만)들이 墓地管理費 등을 걱정하고 있으나 형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국식료품점 金씨가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까지 했다.

代父와 梁君은 학교를 안내해 주었다. 學校 內部의 비에 젖은 보도블럭 위에는 알루미늄판으로 된 신문기사나 뼈라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것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事緣이 있었다. Geschwister Scholl 남매 학생이 反나치 뼈라를 뿌리다 교수형 당한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 후에 뮌헨 대학생들은 大學名을 Scholl대학으로 改名하고자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Scholl남매의 사건과 反나치 大學地下團體인 White Rose는 뮌헨대학의 큰 사건이며, 이를 이끌어간 Kurt Haber교수도 교수형을 당해 현재 大學廳下壁에 Haber교수의 튀어나온 눈을 가진 半面과 쇠갈고리로 굶어버린 것 같은 銅製肖像이 박혀있는 것이다.

一東歐旅行중에 西獨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李彌勒씨에 대한 國內 文人들의 무관심과 문화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따지고 싶고, 과대망상증 환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뮌헨에서 7명의 농지들과 나치당을 창설하여 2차대전을 일으켰으나 한 대학의 정신과 용기가 그 絶對勢力과 맞서 항거했다는 점, 東西獨의 통일에 대한 정보나 현실이 우리가 신문이나 T·V에서 본 그런 것이 아니고 現地の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점, 西歐에 번지는 “누리스트”들의 문제며 Nymphenburg宮殿의 哀話등을 꼭 짚고 넘어 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

이번 여행중 가장 감명 깊었던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建築的인 이야기보다도 감동적인 李彌勒선생의 이야기를 韓國식료품점 김씨에게 들었는데 서울 誠信大의 정교수가 2001년

까지의 墓管理費를 墓地管理事務所에 私費로 내고 있다는 점등을 알고 귀국해서 정교수와 전화로 확인을 했고 언젠가 만나서 자료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기타 뮌헨에서의 이야기는 나의 장남이 조사해 알려준대로 간략하게 옮겨볼까 한다. 고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獨逸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는 「BROCKHANS 百科事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Geschwister Scholl件

Hans Scholl과 Sophi Scholl은 뮌헨대학의 학생으로서 오빠는 醫學을, 누이동생은 生物學과 哲學을 전공하던 중 1942년~43년 Weisse Rose라는 반나치結社인 지하학생그룹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그들의 精神的 求心点인 Kurt Haber교수(철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항거운동을 했다. 學校 區內에 반나치 배라를 뿌리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1943년 2월에 교수형을 당했다. Haber교수도 징계가 드러나 同年 7월에 교수형을 당했다. 그들은 주로 히틀러의 國家社會主義(나치)정권의 독재성을 비판하고 獨逸의 윤리적인 새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註記(나의 장남의 의견)-나치정권하에서 全獨逸 국민이 지지했고 狂의인 충성을 다했으니 일부 극소수의 반나치인들을 찾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獨逸이 반성하고 새로운 自由民主主義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이들의 항거는 비록 규모는 적었지만 국민에게 준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역사의 맥을 잇는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만약 지식인들의 나치에 대한 이 정도의 자발적인 항거마저도 없었다면 독일 역사에서 1933~45년에는 空白期로 남아서 단지 어떤 미치광이에 홀린 시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日帝時代에 우리가 항일운동을 하던 志士들이 없었다라면 그 기간의 우리 역사는 空白期가 되어 民族史에 主體가 없었을 뻔한 것과도 흡사하다.

▶ Nymphenbrg(뉘펜부르크)

뮌헨에 있는 Bayern왕의 궁전으로 1664년에 건축된 아름다운 궁전인데 그후 개축되어 현재에 이른다. 정원은 이태리풍으로 했다가 1715년 프라하인 Carbonet(Le Notres의 제자)에 의해 볼란서식으로 바뀌었고 19세기 초에 와서 다시 영국식으로 바뀌었다. 건물



5



6



7

- ④ 부다페스트 부다 언덕의 야경
- ⑤ 李儀景(彌勤)의 묘에서
- ⑥ 올림픽 경기장
- ⑦ Kurt Huber교수의 초상

은 Karl왕 시대의 로코코식으로 개축했다. - 이 아름다운 로코코식의 궁전과 공원은 숲이 우거지고 아름답기 그지 없다. 뮌헨시민들의 위안처가 되고 관광명소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후일 이미룩씨의 묘件은 문화부에 건의해서 영구보지관리비를 우리 공관을 통해 협조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그 옛날 타향에서의 한사람의 문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바이다.

8월 20일 췌정. 장남의 친구인 유학생 송씨

가 아침에 느닷없이 차를 가지고 와서 2시간 정도 가면 알프스連峯이 있으니 가차고 해서 따라 나섰다.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 3,400m 고지까지 Incryin에리베이터, 케이블카 등으로 한걸음도 걷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 장관이었다. 빙하의 흔적이 역력하고 알프스의 連峯의 만년설이 반사한다. 대자연의 웅대함과 장엄함에 인간이 존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병으로, 기압의 차가 있을 것으로 미리 구급약을 준비해 가지고 갔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정상적인데 더욱 기뻐다. 여행 출발시 擔當醫인 한양대 김정현박사의 주의사항을 지켰고 구급약도 타가지고 왔으나 아무런 탈도 없고 식욕도 왕성하니 즐겁기만 했다. 아내도 처음하는 긴 여행이라 신이 났고 즐거워했다. 우린 천생연분인가 보다. 나는 아무래도 여행재질인가 보다. 여행만하면 생기가 솟아나니 말이다.

◆ 歸路

8월 23일 뮌헨에서 스위스 쥐리히로 갔다. 맑은 공기의 나라요 조용한 나라이다. KAL이 서울까지 운항하기에 쥐리히로 갔을 뿐이다. 고보정이란 우리 음식점은 시내에서 10개 유명 음식점중 하나로 꼽힌다. 오랫동안 김치와 빈대떡에 된장찌개까지 먹고나니 살 것만 같다. 고국엔 그 지루했던 장마가 끝났는지? 더위는 좀 가셨는지 궁금하고 외손녀 녀석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아! 나도 70이 넘었으니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진다. 내일이면 긴 여행을 끝내고 서울에 갈 것이다. 목욕을 하고 스위스의 山氣를 드러마셨다.

별고없이 무사한 여행을 끝내고 귀국했더니 親友 이해성군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북경에선 제11회 아시아 경기대회 관리센터에서 부부동반으로 초청장이 북경시 부시장(건설담당)에게서 와 있었으나 학교가 개강했고 사위들 보고 또 여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건강에 무리해서도 안되겠다고 해서 정중한 인사와 불참의 의사를 전하고나니 마음이 썩 가벼워진다. 인명은 재천이라 했다. 이 글을 나의 벗 이해성군의 명복을 바라는 데 바친다.

白露 前日 안산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制定理由

현재 住宅建設에 관한 基準이 住宅建設 促進法施行令·建築法施行令등 여러 法令에 각각 規定되어 있어 이를 單一法令에 統合하여 規定하도록 함으로써 住宅建設 基準 및 諸般便益設施의 設置基準·配置 등을 合理的·體系的으로 定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現行規定의 운영상 未備點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日常 住居生活에 필요한 購買設施·生活設施·醫療設施·住民運動設施 등 諸般 福利設施을 住宅團地의 規模에 따라 적절하게 設置하게 함으로써 住民의 便益을 增進함(令 第6條 第1項, 第46條 내지 第55條).

나.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宅地開發計劃·再開發事業計劃등 關係法令이 定하는 地區單位의 開發計劃에 의하여 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그 開發計劃의 內容에 따

라 住宅과 附帶設施·福利設施의 設置基準을 伸縮性있게 適用하게 함으로써 地域特性和 開發目的에 부합되는 住宅團地를 多樣하게 開發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第3項).

다. 勤勞者住宅·賃貸住宅등에 대하여는 一般住宅團地와는 달리 附帶設施·福利設施의 設置基準을 緩和하여 適用하거나 별도의 基準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居住者의 特性에 맞는 住宅空間을 갖추도록 함(令 第7條 第6項·第23條).

라. 共同住宅의 地下層을 購買設施·生活設施 등 關聯法令이 허용하는 用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用途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地下層에 대하여는 住民運動設施·圖書室·入住者集會所·趣味生活設施등 住民의 共同利用設施로 활용할 수 있도록 構造와 設備을 갖추게 함으로써 地下層의 活用性을 높임(令 第11條).

마. 住宅의 壁·階段·複道·欄干등의 構造基準과 昇降機, 給排水設施, 消防設備등

에 관한 기본적인 基準을 정하여 安全·衛生·便利性 등 住居機能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22條, 第30條 내지 第45條).

바. 車輛의 급격한 增加趨勢에 따른 駐車難에 대비할 수 있도록 住宅團地의 停車場 設置基準을 종전보다 上向調整함(令 第27條).

사. 事業計劃承認權者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一般쓰레기와 再活用可能쓰레기를 따로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投入口를 구분하여 設置함으로써, 住宅團地안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收去하고 加用資源을 再活用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

아. 住宅資材生産業體에 대한 品質管理基準과 檢査節次를 实效性있게 規定하여 住宅資材의 品質向上을 도모하고, 優良住宅資材에 관한 審議委員會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優良資材에 대한 認定制度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58條 내지 第63條). 〈법제처 제공〉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1조의 2·제43조·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주택자재의 품목과 그 등록의 기준·절차 및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

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구매시설"이라 함은 식품·잡화·의류·완구·문구·서적·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이용원·미용원
- 나.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가원
- 다.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방야간·생활용품수리점·사진관
- 라. 학원(예능·가정·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한다).

마. 금융·보험기관·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

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 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 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

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기타 부대시설) 법 제3조 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주차장·대피시설·관리사무소·경비실
 2. 조경시설·담장·대문·옹벽·축대·안내표지판
 3. 공중전화·보안등·소방설비·공동시청안테나
 4. 가스공급시설·공동저수시설·공동저탄장시설·냉난방공급시설
 5. 쓰레기수거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공중변소
 6. 건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 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구매시설·생활시설
 2. 유치원·새마을유아원·탁아시설
 3. 노인정

4. 주민운동시설
5. 근린공공시설

6.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서실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생활·가정의례 또는 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 (단지안의 시설) ①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 또는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부대시설, 다음 각호의 복리시설과 건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준치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입주자집회소
 2. 의료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세대당 0.5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제49조 내지 제52조와 제55조에서 같다)이하인 것
 4. 구매시설로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5. 생활시설로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6. 유치원·새마을유아원·탁아시설·어린이 놀이터
 7. 제5조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다만,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법률 제3896호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장
 9.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특정기구정비지구건축 계획이나 특별주택사업구역안에서의 주택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는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적용의 특례)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9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제26조·제29조 제2항·제35조 내지 제38조와 제4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13조, 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이 따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7조·제32조 제1항·제46조·제47조·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공주택의 성격·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각 필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그 필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청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유치원·새마을유아원·탁아시설 및 노인정은 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등) ①공동주택 1동의 길이(수직면에 투영한 길이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는 12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건축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지하층은 구메시설·생활시설·주차장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대하여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도서관·입주자집회소·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위탁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 등

제13조 (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당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차집등을 운반할 수 있는 인양기 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센티미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이상	18이하	26이상
세대내 계단 또는 건축물의 옥외계단의 경우	90이상(세대내 계단의 경우는 75이상)	20이하	24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참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복도) ①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갓복도 : 120센티미터이상
2. 중복도 : 180센티미터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승강기 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 (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내구성이 있는 금속제(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 또는 도금이나 방청등의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10

센티미터이상. 다만, 세대내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 1 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난간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계단중간의 난간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③ 3층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국가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마감재료등) ① 주택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품질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사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
2.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조립식주택부재로 건축하는 주택
3.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주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주택의 창호 및 뜰과 평지붕에 설치하는 낙수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표준상세도의 기준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수납공간등)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수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주택의 수납공간의 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주택에는 세대마다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변소등) ① 주택에 설치하는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사로등)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노인정·의료시설·일반목욕장·구메시설·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는 유효폭 135센티미터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출입문·계단 및 변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제 4 호의 경우에는 1천세대미만)이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총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출입구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때에는 따로 여닫이문 또는 미서기문을 설치할 것
2. 출입구에는 문턱이나 단차이를 두지 아니할 것
3. 계단의 양측에는 난간 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의 바닥은 평탄하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4.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있는 층에 장애인용 대변기 및 소변기를 각 1개소이상 설치할 것
5.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대변기 및 소변기의 양측에는 수직 및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출입문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용화장실의 표지를 할 것

제23조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4조 (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방화·위생·온돌구조·열손실방지 및 건축재료의 품질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10조 내지 제18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35조 내지 제37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부대시설

제25조 (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6미터미만이 도로는 기

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미만	6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8이상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2이상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15이상
2천세대이상	20이상

(단위 :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12이상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6이상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20이상
2천세대이상	25이상

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도로의 폭
100세대미만	4이상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6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8이상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2이상
1천세대이상	15이상

② 주택단지안의 폭 12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1대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하 같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수도권내지역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수도권내시 지역	시 지역	기타 지역
60이하	1/115	1/135	1/155	1/180
60초과 85이하	1/100	1/115	1/135	1/155
85초과 135이하	1/85	1/100	1/115	1/135
135초과	1/75	1/85	1/100	1/1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제29조 (조경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 9 조의 2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5개 이상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교목을 식재할 것

제30조 (수해방지등)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의 높이만큼 띄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옹벽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로서 그 띄우는 거리가 5미터이상(3층이하의 건축물은 3미터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안내표지판등) ①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 40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주택단지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통신시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대를 말한다)까지 채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1.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넘는 5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 이 경우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의 장애인용공중전화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보안등) ① 주택단지안의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양측)에는 50미터이내마다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 (가스공급시설)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공동저수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의 기술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양수시설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에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세대당 0.3톤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저수량(매세대당 0.5톤까지만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3톤(시·군지역은 2톤, 독신자용 주택은 1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하고, 50세대(독신자용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는 이를 2개이상으로 구획하여 청소등 관리가 쉽도록 하여야 하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는 음용수를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36조 (저탄시설등) ① 연탄을 취사 또는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별로 세대별 구획이 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부분 또는 발코니에 저탄용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탄장 또는 저탄용창고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연탄을 취사 또는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난방설비등) ① 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확인된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포함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쓰레기투입시설) ① 3층이상인 공동

주택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투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쓰레기수거방식·용기시설 방식에 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층의 같은 계단실을 사용하는 4세대당 1개소이상

2.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4세대당 1개소이상 또는 같은 층에 있는 각 세대의 현관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위치에 1개소이상

3. 연탄을 취사 또는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나 5층이상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제 1호 또는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투입시설에는 각 개소별로 쓰레기를 종류에 따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구분된 투입구 및 저장소를 각각 설치할 것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투입시설의 규격 및 마감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중변소)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구매시설·생활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변소(이하 "공중변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각 부분으로부터 통행거리 100미터이내에 동일 규모이상의 공중변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에는大便기 2개이상, 소변기 2개이상과 세면기 2개이상을 각각 설치할 것

2.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공중변소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공중변소 부근에는 공중변소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40조 (전기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3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적산전력계를 각 세대의 현관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를 현관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

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주택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 및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1조 (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① 공동주택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제43조 (급·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택의 부엌·욕실·변소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급수·배기·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배기설비) 주택의 부엌·욕실 및 변소에는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우편물수취함)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등에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우편물수취함과 반송우편물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복리시설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안이나 단

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준공(법 제33조의 2 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준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세대당 3제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탁아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는 제 4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 (의료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

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의료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2.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의원·보건소지소 또는 병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1개소와 약국 1개소이상. 다만,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800미터 이내에 의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에 의원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일반목욕장) ① 세대별로 온수가 공급되는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천세대이상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3제곱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5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일반목욕장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800미터 이내에 동일기준이상의 일반목욕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가설되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된 대지에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범위내에서 구매시설·생활시설·의료시설 또는 주민운동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 (구매시설)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대당 0.3제곱미터(시·군지역은 0.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로 비율로 산정한 면적(제49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동일면적이상의 구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매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매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개설되어야 한다.

④ 구매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동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 (생활시설)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생활시설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생활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생활시설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 제50조 제4항의 규정은 생활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구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유치원등)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아원·새마을유아원 또는 탁아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분양된 대지에 유치원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의 유치원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유치원등이 있거나 당해 단지에 탁아 또는 유아교육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등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1. 유치원등의 유원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주택·관리사무소·도서실·입주자집회소·거주자의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노인정·학원(예능·가정·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한다). 사회복지관 및 주민운동시설외의 시설은 이를 유치원등과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것
3. 유치원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등의 출입

구·계단·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 또는 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 500세대(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장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외에 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소 이상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핸드볼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시름터로 대체할 수 있다) 2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 이상 추가로 설치하거나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5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인접한 2이상의 주택단지에 국가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세대수와 합계가 5천세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천세대를 넘는 5천세대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3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생활체육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54조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대지를 5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 (노인정등) ①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류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변소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도서실(독서실을 포함한다)·입주자집회소·거주자의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56조 (대지의 안전) ①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토사의 유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간선시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7장 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

제58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계산
6. 시설 및 장비
7.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등록품목과 주택자재생산업등록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로서 1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생산업자의 실태를 매연도별로 파악하여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말소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주택자재생산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등록·품목·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와 영업정지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 (주택자재의 품질검사기관등의 지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험기관·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품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소재지
3. 검사품목
4. 검사시설 및 장비
5. 검사업무 개시일

제61조 (주택자재의 품질검사)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행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와 한국공업규격은 제정되었으나 당해 품목이 한국공업규격에 미달되어 동 규격표시를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검사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③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상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④ 시·도지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우량주택자재

제62조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①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립식주택부재

2. 주택용 창호 및 들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주택자재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자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4. 생산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 건설부장관은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자재에 대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우량주택자재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우량주택자재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

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및 동규칙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4·별표7 및 별표8을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별표1)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제23조 관련)

구분	시설기준
1. 경사로	가. 장애인이 출입하는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에는 유효폭 135센티미터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되, 높이 1미터 이하의 경사로는 기울기를 8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다. 경사로의 길이 30미터 이내마다 휴식장을 두어야 한다.
2. 출입문	출입문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문턱이나 단차이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승강기	가. 승강기의 안과 밖에 각각 설치되는 조작감치는 받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점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의 넓이는 1.5미터×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의 폭은 8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밖의 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새는 3센티미터 이하로 되도록 하고, 승강기 내부의 벽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복도	복도의 유효폭은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복도의 양측에는 연속하여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실등의 출입문과 크기	가. 거실·침실·부엌·욕실 및 변소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85센티미터 이상으로서 문턱이나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실·침실·부엌·욕실 및 변소등 벽으로 구획된 곳은 철제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6. 욕실·변소	대변기의 양측과 욕조 및 세면기의 주위에는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2) 주택자재의 등록품목(제58조 제2항 관련)

구분	품목
1. 점토소성제품	보통벽돌 보통블록
2. 시멘트 가공제품	시멘트벽돌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기와
3.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조립식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기둥·보·계단·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구조부용 부재)
4. 창호제품	목제 창호 및 틀 콘크리트 창호 및 틀 알루미늄 창호 및 틀 철제 창호 및 틀 합성수지 창호 및 틀
5. 고압벽돌 제품	고압벽돌 고압블록
6. 도공제품	도공벽돌 도공블럭 도공기와
7. 가압시멘트 판제품	가압시멘트판기와

(별표3) 주택자재생산업 등록기준(제58조 제2항 관련)

업종별	등록기준
1. 점토소성제품 (보통벽돌·보통블록)생산업	가. 배합 및 토련시설 (1) 분쇄기: 1대 이상 (2) 혼련기(토련기): 1대 이상 (3) 성형기: 1대 이상 (4) 절단기: 1대 이상 나. 소성시설 터널가마 또는 윤요: 1개소 이상 다. 운송시설 컨베이어 및 기타 운반시설: 1식 라. 기타시설 (1) 용지(당해 생산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시설·장비등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6천제곱미터 이상 (2) 시험실: 20제곱미터 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2. 서면트 가공제품 (시멘트벽돌·속빈시멘트블록·보통시멘트기와) 생산업	가. 배합 및 혼련시설 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이상 나. 양생시설 증기양생시설 또는 수증양생시설: 1식 다. 기타시설 (1) 용지: 2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보통시멘트기와만을 생산하는 경우와 증기양생시설(90제곱미터 이상인 증기양생시설과 1톤 이상의 보일러 1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다증양생시설(시멘트벽돌은 5만매 이상, 속빈시멘트벽돌은 2만매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시험실: 20제곱미터 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60톤 이상): 1대 이상
3.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생산업	가. 배합 및 성형시설 (1) 벡차프렌트시설: 1식 (2) 파렛트 및 주형: 1식 (3) 절근가압시설: 1식 나. 양생시설 증기양생시설: 1식 다. 운송시설 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시설: 1식 라. 기타시설 (1) 용지: 9천제곱미터 이상 (2) 시험실: 20제곱미터 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4) 스트롱우레일시험기: 1대 이상
4. 창호제품 (창호 및 틀) 생산업	가. 가공 및 조립시설 (1) 절단기: 1대 이상 (2) 건구조립기: 1대 이상 (3) 자동대패기: 1대 이상 (4) 끌기계: 1대 이상 나. 건조시설 (1) 건조실: 60제곱미터 이상 (2) 보일러등 건조를 위한 기기: 1대 이상 다. 기타시설 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콘크리트	가. 배합 및 혼련시설 (1) 믹서: 1대 이상

업종별	등록기준
창호	(2) 형틀: 1대 이상 (3) 전동기: 1대 이상 나. 양생시설 (1) 보일러: 1대 이상 (2) 수증양생실: 60제곱미터 이상 (3) 증기양생실: 30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시설 용지: 1천500제곱미터 이상
압류 미 압 상 호 · 철 제 망 호 · 합 성 수 지 창호	가. 가공 및 조립시설 (1) 절단기: 1대 이상 (2) 연마기: 1대 이상 (3) 용접기·전공기등 가공·조립에 필요한 시설: 1식 나. 기타시설 용지: 300제곱미터 이상
5. 고압벽돌 제품 (고압벽돌·고압블록) 생산업	가. 혼합 및 고압성형시설 (1) 믹서: 2대 이상 (2) 반응기: 1대 이상 (3) 압축기: 1대 이상 나. 양생시설 (1) 보일러: 1대 이상 (2) 양생기: 3대 이상 다. 운송시설 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시설: 1식 라. 기타시설 (1) 용지: 3천제곱미터 이상 (2) 시험실: 20제곱미터 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6. 도공제품(도공벽돌·도공블록·도공기와) 생산업	가. 배합 및 혼련시설 (1) 믹서: 1대 이상 (2) 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이상 나. 기타시설 (1) 용지: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도공기 역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시험실: 20제곱미터 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7. 가압시멘트 판 제품(가압시멘트 판기와) 생산업	가. 배합시설 (1) 콘믹서: 1대 이상 (2) 교반기: 1대 이상 (3) 스크럼믹서: 1대 이상 나. 성형 및 압축기 (1) 초조기: 1대 이상 (2) 성형기: 1대 이상 (3) 압축기: 1대 이상 다. 건조시설 (1) 보일러: 1대 이상 (2) 건조기: 1대 이상 라. 기타시설 (1) 용지: 3천제곱미터 이상 (2) 시멘트저장시설: 1기 이상 (3) 시험실: 20제곱미터 이상 (4) 압축강도시험기(60톤 이상): 1대 이상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의존률 88%!

물자와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합시다.

1990년도 12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 (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89년도	1990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690,698	2,290,306	599,608	35.47%
	부산지부	994,498	1,959,881	965,383	97.07%
	광주지부	295,186	465,804	170,618	57.80%
	대전지부	239,676	501,820	262,144	109.37%
	경기지부	1,284,946	2,139,794	854,848	66.53%
	강원지부	178,608	298,216	119,608	66.97%
	충북지부	359,908	382,400	22,492	6.25%
	전북지부	230,892	778,490	547,598	237.17%
	전남지부	631,731	701,295	69,564	11.01%
	경북지부	355,304	1,206,420	851,116	239.55%
감소지역	경남지부	1,123,962	1,814,428	690,466	61.43%
	대구지부	577,029	425,132	(151,897)	-26.32%
	인천지부	405,975	334,626	(71,349)	-17.57%
	충남지부	537,157	398,045	(139,112)	-25.90%
제주지부	211,960	139,540	(72,420)	-34.17%	
합 계	9,117,530	13,836,197	4,718,667	51.75%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12월분 9백11만7천5백30㎡보다 51.75% (4백71만8천6백67㎡) 증가한 1천3백83만6천1백97㎡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2월 누계 9천7백44만53㎡보다 43.30% (4천2백19만3천7백48㎡) 증가한 1억3천9백63만3천8백1㎡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11월분 8백88만2천5백30㎡보다 55.77% (4백95만3천6백67㎡) 증가한 1천3백83만6천1백9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 (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 별	11월분	12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613,764	588,105	(25,659)	-4.18%
다 세 대 주 택	399,443	453,081	53,638	13.43%
연 립 주 택	125,049	308,212	183,163	146.47%
아 파 트	4,454,576	7,172,784	2,718,208	61.02%
근린생활시설	509,546	1,775,227	1,265,681	248.39%
종 교 시 설	66,795	52,754	(14,041)	-21.02%
의 료 시 설	21,235	29,425	8,190	38.57%
교육연구시설	281,047	202,892	(78,155)	-27.81%
업 무 시 설	468,390	1,280,533	812,143	173.39%
숙 박 시 설	48,155	58,855	10,700	22.22%
공 공 장	1,202,724	1,031,577	(171,147)	-14.23%
기 타	691,806	882,752	190,946	27.60%
계	8,882,530	13,836,197	4,953,667	55.77%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12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1,726	1,830	2,205,183	75	79	85,123	0	0	0	1,801	1,909	2,290,306
부산지부	1,037	1,417	1,880,604	172	232	59,608	40	41	19,669	1,249	1,690	1,959,881
대구지부	443	505	361,087	426	447	51,836	23	24	12,209	892	976	425,132
인천지부	276	356	326,217	8	8	3,444	14	14	4,965	298	378	334,626
광주지부	196	257	450,225	45	45	12,980	12	12	2,599	253	314	465,804
대전지부	241	309	455,149	26	26	10,624	99	106	36,047	366	441	501,820
경기지부	1,464	1,866	1,967,019	111	126	89,820	79	84	82,955	1,654	2,076	2,139,794
강원지부	411	498	271,304	75	87	25,149	13	13	1,763	499	598	298,216
충북지부	394	486	344,040	65	75	22,484	49	49	15,876	508	610	382,400
충남지부	259	294	371,420	98	98	22,467	18	18	4,158	375	410	398,045
전북지부	417	508	672,679	97	110	100,092	30	30	5,719	544	648	778,490
전남지부	449	563	655,810	129	147	36,302	32	37	9,183	610	747	701,295
경북지부	480	752	1,053,520	120	162	137,014	22	22	15,886	622	936	1,206,420
경남지부	1,323	1,657	1,700,796	221	268	94,419	30	31	19,213	1,574	1,956	1,814,428
제주지부	188	208	129,396	50	51	10,144	0	0	0	238	259	139,540
합 계	9,304	11,506	12,844,449	1,718	1,961	761,506	461	481	230,242	11,483	13,948	13,836,197

支部分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2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41,465	42,954	24,464,480	1,274	1,376	725,793	0	0	0	42,739	44,330	25,190,273
부산지부	14,820	18,398	10,749,692	3,187	3,978	589,435	518	548	313,416	18,525	22,924	11,652,543
대구지부	9,169	9,798	5,173,941	5,440	5,610	558,222	372	375	120,777	14,981	15,783	5,852,940
인천지부	8,013	9,641	8,073,545	420	545	182,521	220	260	89,688	8,653	10,446	8,345,754
광주지부	4,292	4,848	3,965,306	1,400	1,493	489,562	144	144	47,957	5,836	6,485	4,502,825
대전지부	4,444	4,971	4,223,262	600	609	199,864	1,190	1,234	355,078	6,234	6,814	4,778,204
경기지부	32,762	37,723	30,241,669	2,473	2,739	1,432,724	887	899	665,937	36,122	41,361	32,340,330
강원지부	5,756	7,007	3,725,664	1,415	1,655	521,845	196	203	43,613	7,367	8,865	4,291,122
충북지부	6,976	8,116	3,549,996	1,270	1,490	682,035	555	566	327,959	8,801	10,172	4,559,990
충남지부	5,148	5,506	3,648,690	1,452	1,474	602,147	340	343	180,147	6,940	7,323	4,430,984
전북지부	4,646	5,426	4,060,839	1,164	1,286	420,814	287	288	89,826	6,097	7,000	4,571,479
전남지부	6,301	7,551	4,600,693	1,775	2,119	641,056	307	322	97,004	8,383	9,992	5,338,753
경북지부	8,449	10,264	6,313,320	2,409	2,890	1,380,696	298	299	192,094	11,156	13,453	7,886,110
경남지부	16,789	19,513	13,037,808	3,609	4,171	1,473,037	389	394	221,698	20,787	24,078	14,732,543
제주지부	2,430	2,814	1,036,715	712	727	123,236	0	0	0	3,142	3,541	1,159,951
합계	171,460	194,530	126,865,620	28,600	32,162	10,022,987	5,703	5,875	2,745,194	205,763	232,567	139,633,801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2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302	3,412	555,895	619	644	30,662	45	45	1,548	3,966	4,101	588,105
다세대주택	856	957	448,169	32	36	4,216	11	17	696	899	1,010	453,081
연립주택	106	176	300,634	3	4	2,025	9	9	5,553	118	189	308,212
아파트	371	1,539	7,081,750	11	13	86,266	4	5	4,768	386	1,557	7,172,784
근린생활시설	2,981	3,071	1,617,973	403	408	64,336	235	238	92,918	3,619	3,717	1,775,227
종교시설	64	77	40,203	30	34	10,855	11	11	1,696	105	122	52,754
의료시설	5	5	13,962	10	11	12,379	2	2	3,084	17	18	29,425
교육연구시설	41	60	102,189	51	67	69,108	25	25	31,595	117	152	202,892
업무시설	166	177	1,247,107	45	47	25,521	8	8	7,905	219	232	1,280,533
숙박시설	27	27	48,376	7	8	8,199	4	4	2,280	38	39	58,855
공장	610	987	768,451	215	332	226,179	53	53	36,947	878	1,372	1,031,577
기타	775	1,018	619,740	292	357	221,760	54	64	41,252	1,121	1,439	882,752
합계	9,304	11,506	12,844,449	1,718	1,961	761,506	461	481	230,242	11,483	13,948	13,836,19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2月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83,327	84,998	14,808,265	13,180	13,580	871,465	818	822	53,884	97,325	99,400	15,733,614
다세대주택	20,955	22,553	7,178,622	990	1,015	83,100	145	173	14,047	22,090	23,741	7,275,769
연립주택	1,270	1,777	2,237,301	44	52	27,072	16	16	7,903	1,330	1,845	2,272,276
아파트	2,958	13,890	55,900,386	136	205	457,220	47	58	204,667	3,141	14,143	56,562,273
근린생활시설	44,258	45,380	21,877,637	5,699	6,206	1,113,445	2,711	2,729	864,002	52,668	54,315	23,855,084
종교시설	1,073	1,232	630,714	592	675	231,974	86	91	66,472	1,751	1,998	929,160
의료시설	78	88	161,200	107	119	152,752	35	35	29,125	220	242	343,077
교육연구시설	521	763	1,603,305	808	964	900,342	265	274	214,440	1,594	2,001	2,718,087
업무시설	1,748	1,938	6,947,827	578	599	411,611	127	132	140,984	2,453	1,060	1,500,422
숙박시설	698	760	1,414,311	209	218	113,121	102	102	187,605	1,009	1,005	1,715,037
공장	5,963	9,895	8,252,773	2,880	4,427	4,012,668	635	683	599,006	9,478	75,005	12,864,447
기타	8,611	11,266	5,853,279	3,377	4,102	1,648,217	716	760	363,059	12,704	16,128	7,864,555
합계	171,460	194,530	126,865,620	28,600	32,162	10,022,987	5,703	5,875	2,745,194	205,763	232,567	139,633,801

'91년도 제1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1년도 첫 理事會가 吳雲東 회장 주재로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91년도 기본운영계획(안) 승인」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날 심의된 주요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회 理事會)

- 참여이사 직무규정(안) 승인
- 참여이사의 임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승인
- 지부명칭변경 사용범위 결정
- 지부명칭변경사용은 건축사법 및 정관계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되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부와 협의하여 건축사법 및 정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 '91년도 기본운영계획(안) 승인

- '91 전국건축사대회 일정이 확정되는데로 연수 및 대회일자를 수정하고 기타 각 위원회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추가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

- 위원회 조직 및 위원 선임
- (별표 참조)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조정(안) 승인
- 추후 재협의키로 함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변경(안) 승인
- 건축사의 직접인건비를 현행 7만9천원에서 8만3천5백원으로 5.7% 인상하는 등의 원안대로 승인
- 회관 임대·관리비 인상조정(안) 승인
- 본협회 회관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키로 함
- 예비규정·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 각종 회의참석거마비와 심사비등을 현실화하여 인상조정키로 함

'91위원회 조직

(위원회명)	(위원장)
▶ 윤리위원회	金伸幸
▶ 홍보·편찬위원회	李義求
▶ 법제위원회	韓奎峯
- 특별전형대책위원회	金培培
▶ 건축1위원회	朴成圭
- 설계감리분과위원회	朴商浩
- 구조시공분과위원회	李用夏
- 설계경기운영분과위원회	權泰政
▶ 건축2위원회	禹南龍
- 에너지설비분과위원회	金鎮成
- 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宋良漸
- 전통건축분과위원회	康祐植
▶ 전문감리위원회	金榮洙
▶ 연수위원회	李京男
▶ 국제위원회	金知德
▶ 세무위원회	趙相鎬
▶ 재건축심의위원회	張城鎭
▶ 업무전산위원회	安永濬
▷ 예산편성위원회	金正洙
▶ 연금운영위원회	會長
- 연금연구위원회	姜基世
▶ 회원업무조정위원회	이정
▷ 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회	金榮洙
- 기획분과위원회	金漢根
- 재정분과위원회	姜基世
- 집행분과위원회	金永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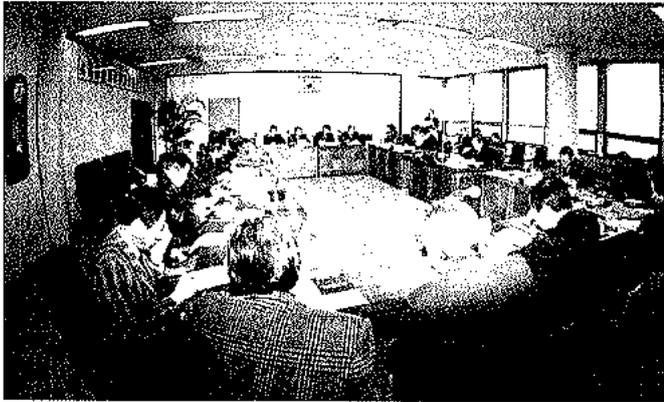
제1회 자문위원회

본 협회 자문위원회의 '91년도 제1회 회의가 지난달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張起仁 前회장(2대회장 역임)의 주재로 개최되어 협회 주요 당면사항을 협의하였다.

임원협의회 개최

본 협회 임원협의회가 지난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의 조정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 1 회 支部會長會議 개최



'91년도 제 1 회 지부회장회의가 지난 15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협회주요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회 지부회장회의〉

- 참여이사직무규정에 관한 협의
- 임원협의회 및 지부회장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되 자구수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협의함

- 지부명칭 사용에 관한 협의
- 일단 건축사법이나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명칭변경사용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되 집행부에서는 빠른시일내에 관련법개정을 추진키로 협의함
- 실적회비산출기준표 인상조정(안)에 관한 협의
- 실적회비산출기준표는 정부건축공사비기준에 따라 조정하되 실적회비 징수율과 연금회비 징수율은 하향조정하고 '주'각항의 문구도 현실에 맞게 수정키로 협의함

서울기독교건축사회 정기총회

서울지부소속 기독교인 건축사들의 모임인 서울기독교건축사회 제 4 회 정기총회가 지난 31 일 협회강당에서 개최되어 신임 회장에 엄기철회원, 부회장에

강태성, 이현삼, 김창근회원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건축사선교사업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建築士」는 회원들의 言路입니다!

본 협회 會誌인 「建築士」는 3천5백여 회원여러분들의 作品과 연구물, 의견등에 대하여 항시 門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기원합니다.

實績會費 算出基準表

1991. 3. 1 시행

(단위 : 원/㎡)

구조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목	조	붉은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일 반	고층철골	특 수
블	조	PIPE구조		석 조		조(10층	
종별	시멘트벽돌조	경량철골조	P.C조		철 골 조	이상)	구 조
제1종	125,600	147,400	-	-	-	-	-
제2종	169,300	231,100	271,200	300,300	322,100	325,800	본공사비는 실 산 공사비에 의함
제3종	202,000	262,100	300,300	331,200	338,500	345,800	-
제4종	227,500	264,800	360,400	393,100	-	-	-
제5종	-	-	-	-	-	-	-

1. 설계감리 보수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다.
2. 실적회비 징수율은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별표1의 설계감리 보수액의 70%를 설계보수로 하여 동 설계보수액에 대한 %로 한다.
3. 제5종에 해당되는 설계감리의 실적회비는 설계감리 계약금액에 실적회비 징수율을 적용 산출한다.
4.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시멘트 벽돌조의 외장을 붉은벽돌 치장쌓기, 타일 붙임, 대리석 붙임. 이외 이와 유사한 마감(2면 이상)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5. 용도변경, 대수선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산 공사비에 의한다.
6. 헛간(벽체가 없는 건축물)은 위 금액의 30%를 공사비로 한다.
7. 제2항의 경량철골조는 콘셀 철골구조 및 PIPE 구조를 말하며 제7항의 특수구조는 웰 구조, 사일로돔 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말한다.
8. 단순한 면적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으로서 면적이 증가되므로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종별을 적용하여 전체 실적회비를 산출하고 변경전 징수금액을 제한다.
9. 단독주택은 지하층, 별동의 차고 및 변소 등의 면적을 제한 면적에 대하여 해당 종별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으로 해당종별을 적용한다.
10. 본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에 한한다.

〈제 2 회 이사회 (91.2.5)결정사항〉

신 입 회 원



吳運動(59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주)공간건축(종합)
서울 종로 원서 219
763-0771



柳蘭馨(53年)
연세대 건축
진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769-9
569-0848



姜信亮(51年)
한양대 건축공
화인아트대진 이진(종합)
서울 강남 역삼 798-1
569-7662~3



金美貞(60年)
전남대 건축공, 同대학원
한마당건축
서울 은평 녹번 160-16
384-9701



白承業(57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업건축
서울 도봉 수유 30-7
996-7728



金光彬(56年)
홍익대 건축공, 同대학원
유창, 장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779-7
562-5773



鄭晚教(54年)
국민대 건축
시흥건축
경기 시흥 신천 305-7
692-3355~6



吉竣瑩(58年)
부산대 건축공
(주)부림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357-6
569-1730



黃宏文(55年)
동아대 건축공
에원건축
부산 금정 부곡 22-1
516-8787~8



吳雪姬(59年)
건국대 건축공
성도건축
경기 고양 원당 583-18
965-4912



趙鍾晚(33年)
한양대 건축
성북건축
서울 성북 삼선 299
927-1966



康文鍾(56年)
연세대 건축, 同대학원
(주)금성건축(종합)
서울 종로 원남 194
762-1344



趙億在(53年)
경주공고 건축
가향건축
경기 의정부 가능 1B 1-2
875-4113~5



李東海(57年)
삼척공전 건축
동해건축
경북 포항 상도 615
82-1144



金平坤(34年)
한양대 건축공, 同대학원
향림건축
서울 은평 녹번 80-10
356-4115



鄭昌讓(57年)
서울시립대 건축공
토디아건축
서울 강남 논현 220-8
512-1494~5



申彥悅(49年)
서울대 건축공, 同대학원
머릿돌건축(종합)
서울 강남 포이 250-2
575-2907~8



尹世漢(60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해안건축
서울 중구 충무로 126-1
269-5249



尹炳玉(55年)
조선대 건축공
도원건축
서울 영등포 신길 296-26
841-3630, 848-5268



金秀鍾(51年)
서울대, 텍사스주립대학원
머릿돌건축(종합)
서울 중구 포이 250-2
575-2907~8



張翼淳(52年)
서울산업대, 연세대학원
제 3, 원일 정문 기성(종합)
서울 송파 송파 58-18
421-0105



慶圭哲(45年)
홍익대 건축
주신건축
서울 은평 녹번 117-73
389-0297~8



金榮根(53年)
인하대 건축공
미래 우리 우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41-17
566-1513